2026 동아시아의 향약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기록유산을 통해 본 향약의 공동체 문화

2026. 6. 12.(금)

전남대학교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

202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angyak
in East Asia



주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 동아시아의 향약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기록유산을 통해 본 향약의 공동체 문화

2026. 6. 12.(금)

전남대학교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

202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angyak
in East Asia



주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개 회 사 :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05

축 사 : 류도향(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장) 07

【제1주제】 조선시대 향약 이해의 몇 가지 쟁점 11
발표 :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제2주제】 中国乡约的地域史意义一明清以来徽州乡约的宗族化与基层治理逻辑 27
발표 : 장샤오포(张小坡, 安徽大学徽学研究中心), 번역 : 이두은(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제3주제】 일본의 '향약(소오키테, 무라오키테)'과 항왜의 향약 67
발표 :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제4주제】 조선후기 광주 양과동계의 동정 수호와 중수 83
발표 : 정수환(국립금오공과대)

【제5주제】 19-20세기 전라도 영암 구림대동계의 변용과 장기지속성 95
발표 : 김경옥(국립목포대)

【제6주제】 조선 후기 면약 · 면계의 유형과 성격 107
- 장흥군 남면 향약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발표 : 이광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종합 토론】 125
좌장 : 김덕진(광주교대 명예교수)
토론 : 박현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영란(조선대) 박진한(인천대)
문광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임학성(인하대) 한상우(아주대)

개회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싱그러운 녹음이 짙어가는 전남대 용봉캠퍼스에서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최하는 동아시아의 향약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를 탐구하기 위해 뜻깊은 걸음을 해주신 국내외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훌륭한 발표장을 주선해 주시고, 따뜻한 축사를 준비하신 전남대 인문융합연구원 류도향 원장님과 학술 행사 준비에 열성을 다해주신 박미선 교수님, 그리고 우리 진흥원의 권수용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향약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돕고, 가르침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 시행했던 지혜의 결정체이자, 약속의 기록문화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 전통을 결합하여 향촌 사회를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동체 붕괴와 파편화된 개인주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바로 이 향약의 공동체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이 소중한 기록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공동체 모델을 설계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향약의 다양한 면모를 심도있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향약 이해의 쟁점을 시작으로, 중국 향약의 지역사적 의미, 그리고 일본의 향약과 항왜(降倭)의 향약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 지역의 귀중한 기록유산인 광주의 '양과동계', 영암의 '구림대동계' 등 지역공동체 문화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학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아시아 학술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약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줌으로써 향약-동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표를 맡아 주신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을 비롯한 중국의 張小坡(安徽大) 일본의 長森美信(天理大) 등 여섯 분의 교수님, 그리고 좌장으로 수고하실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 선생님 등이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류도향(전남대 인문융합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 원장 류도향입니다.

싱그러운 유월의 녹음이 짙어가는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2026 동아시아 향약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본 연구원과 함께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의 규약을 논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걸음을 해주신 여섯 분의 발표자 및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주관 기관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은 HK3.0을 통해 다학제적·통합적 리질리언스 사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동체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향약은 현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인류의 공존 모델을 설계하는 실마리를 품고 있는 기록입니다. 심재우 교수님께서 서두에 짚어주실 것처럼,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 간의 신뢰 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자치와 상부상조의 결정체인 향약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융합을 통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 윤리를 정립하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향약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중국 명청 시대 휘주 향약의 모델, 일본의 향약과 항왜의 향약에 대한 검토는 국경을 넘어선 공동체 문화의 특성을 살피는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호남의 기록유산인 광주 양과동계, 영암 구림대동계, 장흥 남면 면약 등의 사례는 향약의 실질적인 공유 자산을 토대로 마을 공동체의 호혜와 협동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공유해 온 상생의 문화를 현대적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파편화된 우리 사회를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동아시아의 학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귀한 연구 성과를 나눠주실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2일

2026
동아시아의
향약국제학술대회

발 표 문





조선시대 향약 이해의 몇 가지 쟁점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머리말
2. 향약의 개념과 계와의 차이
3. 향약의 갈래와 유형
4. 향약의 성격과 시행 목적
5. 향약 자치권의 실체
6. 향약의 분포
7. 맺음말

1. 머리말

현재 우리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주의의 확산과 사회윤리의 약화, 개인간의 신뢰 상실, 계층간 분열, 첨예한 이념 갈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크게 보아 전통적으로 중요시해 온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자치와 상호부조, 호혜와 협동의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조직의 하나인 향약(鄕約)의 실천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향약은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여러 인접 학문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컨대 전통사회 마을공동체에 주목해온 사회학과 민속학에서는 일찍부터 향약을 매개로 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적 결속 양상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뤄왔다. 행정학 분야에서 현대 주민자치의 원형으로 향약의 자치문제에 주목하거나, 사회복지학에서 향약의 상부상조 정신을 통해 전근대 복지정책의 일단을 포착하려는 시도 또한 그 한 예이다.[1]

향약(鄕約)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전래되어 조선의 지역 사회에서 행해졌던 자치 규약이자 성리학적 실천 규범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당대 지식인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향약의 4대 실천 강목으로 꼽히고 있는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윤리는 향촌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키워 재난이 닥쳤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구성원간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향촌에서 행해졌던 향약은 시행 주체, 성격, 시기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향약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사회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습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역 사회조직으로서 향약과 계가 이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연구사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향약의 유래와 향약보급운동 등 시기별 향약의 특징이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여러 지역에서 시행

1) 여러 학문 분야별로 향약을 연구하는 주요 목적에 대해서는 박경하, 「조선시대 향약의 성격과 주민자치로의 현대적 변용」, 『로컬커뮤니티 규약의 전통과 현대적 변용: 호남의 향약과 동계』, 한국학호남진흥원 주최 2024년 6월 14일 학술회의 자료집, 2쪽 참조.

된 향약의 세부 조문과 특징이 검토되었으며, 향약의 갈래와 유형, 그리고 조선에서의 향약 변용 양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2] 100여 년에 걸친 연구가 수행되면서 다방면에서 향약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 또한 얼마 전에 향약, 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향촌사회조직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적이 있다. 해당 글에서 필자는 연구 경향의 변화에 유의하여 관련 성과를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식민정책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일제시대), 실증 연구 부족 속 향촌사회 연구의 모색(해방 이후~1970년대), 사족지배체제론 정립과 향약·동계 연구 활성화(1980~1990년대), 사례연구 지역의 확대와 새로운 모색(2000년대 이후)이라는 틀로 정리하였다.[3]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계 조직에 대한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향약에 대한 언급은 소략한 한계가 있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 이래 향촌사회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사족들의 향촌지배 조직으로서 향약의 기능에 주목하여 각 지역별 향약의 성격과 변화 과정에 집중한 사례 연구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향약을 둘러싸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향약 연구에서 노출된 연구 쟁점과 연구자들의 시각의 차이를 점검함으로써 거시적 시각에서 향약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를 음미해보기 위한 시론적 접근이다. 향약 연구에 일천한 필자가 이와 같은 다소 무모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 및 제기된 쟁점을 되돌아보는 것이 사례 연구의 축적보다도 향약 연구의 진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약의 개념, 그리고 향약과 계의 차이를 검토한다. 그동안의 향약 연구사에서는 향약 용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향약의 다양한 뜻을 상기하면서 계 조직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향약의 유형과 범주 설정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조선의 향촌 사회에서 시행된 각종 조직 가운데 어디까지를 향약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향약의 갈래와 유형 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향약 시행의 주체가 향약을 보급한 목적, 혹은 향약의 본질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 차이를 확인한다. 향약을 사족(士族)의 하민(下民) 지배의 도구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자치와 상호부조라는 향약의 긍정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민해보기로 한다.

넷째, 당시 향약에 보유한 실질적인 자치권의 수준과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향약에서는 벌칙을 저지른 구성원에게 태형(笞刑)을 가하도록 하는 등 자체 처벌권이나 분쟁 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약 자치의 수준과 의미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조선시대 향약이 갖는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당대 지역사회에서 향약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 하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향약 시행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지표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용한지 검토함으로써 향약의 분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눠 연구사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향약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검토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앞으로의 향약 연구의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조선 향약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보다 심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최근 이루어진 향약 관련 연구사에 대한 개관은 다음 이광우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광우, 「조선후기 향약 운영과 성격-정부·지방관·재지사족 등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8, 1-6쪽.

3) 심재우, 「조선시대 향촌 사회조직 연구의 현황과 과제-향약·계에 관한 성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0, 2019.

2. 향약의 개념과 계와의 차이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동안 조선시대 향약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막상 연구의 전제가 되는 조선시대 연구 대상 향약의 범주에 대해 분명히 논의되지는 못한 것 같다. 본 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향약(鄕約)의 다양한 개념을 짚어보고, 향약과 계(契) 조직과의 차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향약이든 계든 매우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하지만 이들 용어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조선시대 향약과 계 조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향약의 개념부터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향약은 11세기 초 중국 북송 말기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살았던 도학자 여씨(呂氏) 사형제가 실시한 '여씨향약(呂氏鄕約)'에서 시작한다. 여씨 형제들은 향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약을 만들었는데, 이는 여씨 문중에서 지역민의 교화를 위해 만든 자치 규약에 해당한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네 강목의 규약을 만들어 실천하고, 선적(善籍)과 악적(惡籍)을 두어 해당하는 인물들을 기입하고 향중 회의 때 상벌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여씨향약의 가치를 인정한 주자(朱子)는 그 내용을 일부 손질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으로 완성하였고, 조선에서는 여말선초 성리학의 보급과 함께 이 주자의 향약이 전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보통 향약이라 언급할 때는 앞서 언급한 북송대에 기원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선 당대인 16, 17세기까지만 해도 향약이라고 하면 이 주자향약이나 혹은 이를 조선적 형태로 변용시킨 퇴계, 율곡 계통의 향약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4]

여씨향약, 혹은 조선에서 일부 변형된 형태를 본래적 의미의 향약, 내지 협의의 향약이라고 한다면, 이와 달리 조선시대에 향약이 여씨나 주자가 만든 특수한 형태가 아닌 '일향(一鄕)의 약속', '일향(一鄕)의 규약', '향인간(鄕人間)의 약속' 등과 같이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향약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조직은 매우 다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광의의 향약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향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여씨와 주자의 향약과 달리 향촌의 제반 규약을 뜻하며 포괄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 두 가지 개념 외에도 향약이 삼대(三代)의 법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김필동에 따르면 조선의 유학자들이 향약의 기원을 여씨향약에서 찾지 않고 중국 고대의 제도인 『주례(周禮)』에서 그 시초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이황은 향약의 정신을 『주례』에 나오는 향대부(鄕大夫)의 직무에서 찾고 있으며, 이이는 향약을 중국 삼대의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5] 향약을 『주례』와 연계한 이와 같은 이해는 앞에서 언급한 협의의 향약, 광의의 향약과 다른 또 다른 향약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향약의 개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한 가운데 향약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향촌 사회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계(契)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약과의 차이를 짚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흔히 계라고 하면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조선 당대의 계에 대한 인식을 담은 정약용의 『아언각

4) 김인걸·한상권, 『조선시대 사회사연구사료총서(一)』, 보경문화사, 1986, 3쪽.

5) 김필동, 「향약의 보급과 그 사회적 의미」, 『차별과 연대-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지성사, 1999, 307-308쪽.

비(雅言覺非)』를 보면 계는 향촌에서 돈을 추렴하여 이자를 불리는 것을 말하거나,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람들간의 약속이나 모임을 지칭하기도 하였다.[6]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晝永編)』에서도 계를 '동사결취(同事結聚)' 즉 사람들간의 회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7] 하지만 조선시대에 계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계통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향약과 마찬가지로 계 조직이 포괄하는 범위 또한 넓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계조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필동은 계를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협의의 계를 특수한 조직 형태, 즉 어떤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 약속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든 비교적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모임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면서도 당시 문헌에서 향약, 향도, 두레를 향약계(鄕約契), 향도계(香徒契), 두레계 또는 농계(農契)의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계의 일종인 것처럼 다루는 등 광의의 의미에서 계는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형태의 조직, 집단들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명칭으로도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8] 전통시대에 계라는 명칭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 향약은 여씨향약과 그 변형 형태로 향촌사회의 주자학적 제반 운영원리를 담은 규약인데 비해 계는 사람들간의 특수한 목적의 조직 형태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향약과 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조선시대에 종래의 계 조직이 주자학적 이념이나 명분과 접목되어 향약과 혼칭되거나 향약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한 사례가 다음에 소개할 철종대 전라도 무주부 상곡면의 8개 동리에서 시행된 효계(孝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효계는 선비 이시호(李時滈)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효(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권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1855년(철종 6)에 조직하였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이 효계 관련 문서로 『상곡팔리효계향약절목(裳谷八里孝稧鄕約節目)』(古大5129-36), 『상곡면향약계좌목(裳谷面鄕約稧座目)』(古5129-37) 등 두 종이 소장되어 있다.[9] 이들 문서에 실린 계 규약을 담은 절목(節目)에 따르면 운영 기금인 계전(契錢)을 마련하여 8개 면에서 돌아가면서 이자를 증식하는 규정, 효자와 효부 집안에는 상을 내리는 동시에 벌조(罰條)를 두어 불효 등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계원들간에 상장(喪葬)이 있을 때 부조에 대한 지침 등 전형적인 계의 형식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는 문서 명칭에서 보듯이 '효계향약(孝稧鄕約)', '향약계(鄕約稧)'와 같이 향약으로도 불리고, 계로도 불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효계에서 보듯이 당시 향약과 계가 혼칭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요컨대 향약 자체도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으며, 향약과 계가 여러 형태로 연계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간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향약과 계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정립함은 물론 연구 대상이 되는 향약의 범위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雅言覺非』 권3, 禊. "禊者潔也... 今俗醵錢殖利 名之曰稧 稧本無字 唯蘭亭帖坊本 禊訛作稧 因以襲之也... 東人凡與衆會飮 皆謂之禊 同庚曰甲禊 同年曰榜禊 同官曰僚禊 玉堂修禊屛 槐院裝禊帖 此風相傳 鄕村醵錢者 亦皆名禊耳 此等之禊 當名曰契 契者 約也合也"

7) 『晝永編』 권3, "我國舊語 以衆人之同事結聚者 稱契 盖契合之義也"

8) 신용하·박명규·김필동 엮음, 『한국 사회사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5, 206쪽.

9) 효계에 대한 내용은 심재우, 「규장각 소장 契文書의 유형과 특징」, 『장서각』 55, 2026, 437-438쪽 참조.

3. 향약의 갈래와 유형

앞에서 향약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와 연결되는 문제로 조선시대 시행된 향약의 유형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향약 자체는 중국에서 유래하였지만, 조선에 전래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용이 이루어지고 조선 고유의 특질을 지니게 되면서 종류와 갈래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본 장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향약이 조선에 전래, 보급되는 과정부터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말선초 주자 성리학의 보급과 함께 향약을 시행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는 사림파의 주도로 대략 16세기에 본격화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향약 보급 문제를 둘러싸고 연대기에 나오는 초기 기록으로는 1517년(중종 12) 6월 경상도 함양 유생 김인범(金仁範)의 향약 시행 요청 상소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상소를 올려 풍속의 변개를 위해 여씨향약을 준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한 김안국(金安國)이 민간의 교화를 위해 간행, 보급한 책 가운데는 여씨향약의 언해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향약을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향촌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종대 정부 차원의 향약 보급 운동이 전개되었다.[10]

이처럼 기묘사림의 주도로 향약 보급 시도가 있었던 중종대를 향약의 단순 도입 단계로 본다면 뒤이은 명종, 선조대는 성리학 이해를 바탕으로 주자향약을 조선사회 내부 사정에 맞게 손질, 변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형적 모습은 퇴계(退溪)와 율곡(栗谷) 향약의 내용과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약에 관한 초기 연구자에 해당하는 유홍렬은 주자향약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향약의 내용과 조직 등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로 차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조선적 향약의 성립으로 파악한 바 있다.[11] 소위 '조선향약(朝鮮鄕約)'으로 체계화된 형태로 향약이 이후 조선왕조 각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시행된 조선의 향약 조직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최근 향약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광우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정부·지방관·재지사족 등 향약의 운영 주체에 따라 향약을 구분한 바 있으며,[12] 또 다른 논문에서 향약의 시행 범위를 기준으로 고을 단위의 주현향약(州縣鄕約), 면리 단위의 면약(面約)·리약(里約), 동리의 동계(洞契)·동약(洞約)으로 나눠서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였다.[13] 향약을 운영 주체, 혹은 시행 단위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흥미롭지만, 다만 어떤 조직을 향약으로 보는가, 향약을 어떻게 정의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적극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한편 이보다 훨씬 앞서 조선에서 시행한 향약의 갈래와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 연구자가 김용덕이다. 그는 같은 향약이라 불리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향규(鄕規), 동계(洞契), 주현향약(州縣鄕約), 촌계(村契) 넷으로 나눠 파악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하에서는 김용덕이 제시한 이들 네 가지 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

10) 중국 여씨향약의 수용 과정에 대한 개괄적 정리는 정진영, 「한국의 향약-외래문화의 수용과 변용의 한 모습」, 『안동학연구』 15, 2016, 112-114쪽 참조.

11) 유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1933

12) 이광우, 앞 논문(2018). 참고로 향약의 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향약을 士族鄕約, 州縣鄕約, 洞里鄕約 세 가지로 구분하자는 의견은 1990년에 이성무가 제안한 바 있다. 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경하, 「조선후기 향약연구-향약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2, 6-6쪽 참조.

13) 이광우, 「조선시대 鄕約의 유형과 특징」, 『남명학연구』 83, 2025.

먼저 향규이다. 향규는 향약이라 통칭되지만 사실은 중국 여씨향약과 성격이 전혀 다른 유향소(留鄕所) 사족들의 규약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용덕에 앞서 향규 연구를 개척한 일본인 학자 다카와 고조(田川孝三)에 의해서다. 그에 따르면 퇴계와 율곡의 향약으로 알려진 예안향립약조(禮安鄕立約條)와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은 본질적으로 향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14] 이 다카와의 주장을 수용한 김용덕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민 대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향약과 달리 향규는 상천민과 거리가 먼 유향소 관계 규정, 향안(鄕案)의 입록(入錄) 자격에 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향권(鄕權)에 관계된 규약이라 보았다.[15]

다음으로 동계는 대개 왜란 이후에 등장하는데, 사족들간의 규약인 향규(鄕規)와 하층민 사이에 조직된 결계(結契) 두 가지 규약이 합쳐져서 지역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한다. 동계의 조직 범위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리(洞里) 단위이며, 동약(洞約)이라는 명칭도 동계와 같은 뜻으로 보았다.

주현향약은 군현(郡縣), 즉 고을 단위로 수령이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지역사회 상하 전 주민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 향약이다. 면리제의 발전, 수령권의 강화를 배경으로 시행된 것으로, 특히 18세기에 전성기를 이룬 관 주도의 향약으로 이해한다.

끝으로 촌계는 여씨와 주자의 향약 수용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존재했으며, 사족들의 동계와 달리 유구한 전통을 갖는 농민의 자치조직으로 보았다. 촌계는 상민(常民) 마을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16]

이상 살펴본 김용덕의 분류는 향약이라 통칭되는 다양한 조직의 특성을 몇 갈래로 구분하고 조직의 내용, 성격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향약을 이들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그가 향약을 여씨향약과 그 변형 형태라는 협의의 의미로 보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약이라 부를 때 협의의 개념을 뜻한다고 볼 때 김용덕이 분류한 네 가지 중에 여씨향약에서 유래하여 주자학적 향촌 운영원리를 담은 규약으로 보기 어려운 촌계는 사족과는 무관한 하층민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향약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또한 소위 향규를 반드시 일반적인 향약의 범주와 구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향규와 향약을 나눠서 파악한 다카와, 김용덕과 달리 정진영은 이 둘의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을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다카와와 김용덕이 전형적인 향규로 규정한 퇴계의 「예안향립약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향약의 내용으로 지적되는 처벌해야 할 악목(惡目)의 열거, 교화(敎化)의 진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예안향립약조」가 향약과 향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다.[17]

이밖에 김용덕의 분류와 관련한 고려 사항을 또 하나 덧붙인다면 동계를 향약의 한 형태로 단순하게 이해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계는 기본적으로 계 조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만들

14)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田川孝三, 「李朝の鄕規について(一)(二)(三)」『朝鮮學報』 76·78·81, 1975·1976

15) 향약의 유형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김용덕, 「總序: 鄕約新論」,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에 의거하였다.

16) 참고로 香徒, 村契類 조직이 이미 16세기 말 17세기 초 널리 성행하였음은 자주 언급되는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我國之俗 內自都下 外暨鄕曲 皆有洞隣之契 香徒之會 私立約條 欲相檢攝"; 『芝峯類說』 권2, 諸國部 風俗. "我國之俗 凡中外鄕邑坊里 皆作契以相糾檢 謂之香徒"

17)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126쪽.

어져 시행된 다수의 동계에는 향약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어서 향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동계가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계를 향약의 한 범주로 곧바로 이해하기보다는 향후 면밀하고도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구된다.

이상 김용덕이 제안한 향약 유형 소개와 함께 분류의 문제점 혹은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18]

사실 필자는 김용덕이 제안한 향약의 유형과 갈래 분류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므로 좀더 정밀한 유형 분류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향약의 성격과 시행 목적

지금까지 향약의 개념 문제, 그리고 향약의 유형과 관련한 견해를 살펴보고 논의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향약의 성격과 주도 계층인 양반 사족들의 향약 시행 목적을 둘러싼 연구자간 시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찌 보면 특별한 논란이 없을 법한 주제인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조선시대 향약을 상층 신분의 하층민에 대한 신분적 통제, 신분 질서 유지를 위한 계급 지배의 도구로 단순화하여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교 지식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운동으로서 향약의 긍적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이 최근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향약을 보는 폭넓은 관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접 학문의 문제 제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사실 중국에서 주자가 증손한 여씨향약은 4대 덕목(德目)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자학의 이상적 향촌사회 구축을 위한 예치(禮治)의 실현과 민에 대한 교화(敎化)를 표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의 유학자들 또한 이를 목표로 향약을 시행하려 했음은 당연하다. 다만 유학자인 사족들의 향약 시행 목표를 당대 시행 주체들이 표방한 슬로건이 아닌 현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향약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동안의 향약 연구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80, 1990년대의 연구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당시는 역사학계에서 향촌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향약(鄕約), 동계(洞契) 연구가 붐을 이루던 시기였다. 이 시기 향촌 사회질서, 지역 사례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향촌사회사'라는 독자적인 연구 주제가 설정될 정도로 관련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향촌사회사 연구의 핵심 성과는 이른바 사족지배체제론(士族支配體制論)의 정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향약 연구도 사족의 향촌지배라는 시야에서 이루어진 셈이다.[19]

여기서 사족지배체제란 조선의 16, 17세기 사회를 대상으로 한 개념인데, 중앙집권제 하의 조선에서 수령의 관치 행정만으로 통치의 효율성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배타적 지배권을 구축한 사족세력의 자치권을 허용하여 관의 관치(官治)와 사족 자치(自治)의 조정이 이루어지던 모습을 상정한 용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인걸은 사족들이 관권(官權)과의 일정한 타협 위에서 군현 및 촌락사

18) 한편 김용덕의 향약 분류는 중앙대학교 박경하 교수와 그 제자들을 통해 계승되어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축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하,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성과와 과제-중앙대학교 역사학과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53, 2021 참조.

19) 이 시기 향약, 계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는 심재우, 앞 논문, 2019, 376-382쪽 참조.

회에서 그들의 향촌지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이서층(吏胥層)과 일반민을 통제하고 있었던 향촌 지배구조를 사족지배체제, 내지 사족주도 향촌지배체제로 파악한다.[20] 여기서 사족들의 향촌지배기구의 하나로 본고의 관심인 향약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김인걸과 함께 향촌사회사 연구에서 다수의 성과를 제출한 정진영은 향촌 조직을 크게는 군현, 작게는 촌락의 두 개 레벨로 나눠 파악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자는 향약을 비롯한 유향소(留鄕所)·향안(鄕案)·향규(鄕規), 후자로는 동약(洞約)·동계(洞契)를 꼽고 있다. 16, 17세기 사족지배체제가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의 사족들이 앞서 언급한 다양한 향촌지배 조직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21]

김인걸, 정진영의 연구에서 보듯이 이들은 사족지배체제의 틀 속에서 향약을 바라보면서 향약은 사족들이 하층민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동시에 대민통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비슷한 시기 역사사회학의 관점에서 향약과 계에 관해 분석한 김필동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향약은 그 형태나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류(士流), 사족(士族)들간의 약속이었으며, 사족 이외의 구성원들은 수동적, 종속적 참여자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한다. 이는 주자가 향약을 증손할 때에도 전제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약에는 항상 사족 중심의 이해가 관철되고 있으며, 그만큼 계급성, 폐쇄성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향약의 본질은 사족 집단의 자치적인 신분적 지배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향약은 대내적으로는 사족 집단의 결속을 다지면서 자신들의 공동 관심사를 처벌하는 자치적인 기구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다른 신분 집단을 직, 간접적으로 통제, 견제하는 신분적인 지배 기구였다. 김필동은 향약을 단순히 공동체 성원간의 상부상조의 기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막연한 통념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한다.[22]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관점의 향약 이해에 대해 사회학자 한도현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향약은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수백년간 실천된 지역사회조직 운동으로서 공동체적 유대와 협력을 추구한 농촌엘리트의 노력을 앞선 연구에서와 같이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과거에는 향약을 유교이념 실현을 위한 수신, 상호부조 공동체로 보는 견해가 상식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 사족들의 신분지배 도구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23]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유교의 예치공동체 운동으로서 향약에 주목하여 그 실천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예컨대 향약 4조목에서 보듯이 자발적 협력과 상호존중의 정신, 호혜(互惠) 규범이 담겨 있다는 점, 하층신분에 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하층민을 조직안에 끌어들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 임원진을 향중 공론으로 선발하는 개방성, 사회지도층인 사족들의 자기 규율 노력과 사회적 의무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향약에 대한 적극적 평가의 지표로 본 것이다.[24] 즉 한도현은 향약의 실천을 유학자들의 사회 참여 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전통사회의 가치로부터 현재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의 마을만들기나 지역 가꾸기와 같은 주민참여 운동을 염두에 둔 향약 가치의 재조명인 셈이다.

---

20)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15-16쪽. 이 책은 그의 1991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으로 1980, 90년대 저자의 시각을 보여준다.

21)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7, 27-29쪽.

22) 김필동, 앞 논문(1999), 308쪽 및 356쪽.

23) 한도현, 「전통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농촌사회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농촌사회학』 13-2, 2003.

24) 한도현, 「예치공동체의 폐쇄성과 개방성」, 『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2007, 71-79쪽.

한편 철학자 최진덕은 더 원색적으로 역사학계의 향약 연구자들을 비판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국사학계의 최대 학문적 성과는 향촌사회사 연구이지만, 좌파적 유물사관에 의해 지배되어 주자학을 무조건 지배 이데올로기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사학계의 향약을 보는 시각은 향약(鄕約)이나 향례(鄕禮)를 지배를 위한 불순한 전략으로 보는 음모론적 해석이라 단정하고, 이는 철학적, 문헌실증적으로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25]

이상으로 종래의 향약 연구의 시각과 이에 비판적인 한도현, 최진덕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향약의 성격과 주도층의 향약 시행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향약의 본질을 신분지배의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호부조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운동으로서 그 의미를 적극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정답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학계의 향약 연구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지금까지의 향약 연구사를 조선시대 사론(史論)과 연결시켜 다소 단순화하여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

향약을 통해 지역사회 사족들이 백성들을 교화시킴으로써 유교적 향촌질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대민통제를 시도한 것도 사실이며, 적극적인 자기규율 및 소민보호를 통한 공공성의 실천을 지향한 것도 인정된다.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향촌의 양반사회 변화와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시야에서 향약을 바라본 것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1980, 90년대에 풍미한 사족지배체제론에 기초한 역사학계의 향약 이해는 지배와 저항이 관점이 다소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 또한 시도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약의 본질과 성격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6]

5. 향약 자치권의 실체

향약은 시행 주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향촌사회의 문제를 향약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길흉 등에 상부상조하는 것을 특장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학이나 법학 분야에서는 현대 주민자치의 원형으로서 향약을 주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춘구는 향약이 상층 양반 중심으로 제한되는 한계는 있지만 일종의 사회법적 계약이며 구성원들의 평등한 참여 및 의사 결정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실상규 규정에서 보이는 향약 조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향약을 단순 민간규약을 넘어 실효적 자치법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한다.[27]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시행된 향약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自治權)을 보유하였는가? 오늘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 및 마을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직접 참여, 결정하는 지방자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 향약 조직이 담고 있는 자치의 실체를 다루기에 앞서 조선에서 시행된 향약이 중국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부터 간략히 검토한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 전래된 향약은 조선 사회와 접목하여

25) 최진덕, 「주자학적 예치의 이념과 그 현실」, 『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2007, 266-285쪽.

26) 향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대인들이 향약 인식에 대해서도 좀더 천착이 필요하다. 예컨대 17세기 서울 마포 일대 유생들이 강학을 위한 학문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여씨향약의 내용을 적극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향약은 향촌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서울 유생들의 자기규율, 상호연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정, 「'鄕'을 벗어난 鄕約-17세기 서울의 相觀會 결성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74, 2024 참조.

27) 이춘구, 「자치법규로서의 향약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47,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6년 2월.

조선적 특성을 지니는 형태로 변용이 동반되었다. 두 나라의 향약을 비교한 이근명은 주자향약의 경우 교화의 대상이 사실상 향촌내 유력자인 반면 조선에서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전향민(全鄕民)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중국의 경우 송대 보갑제(保甲制)의 운용이나 명대 이갑제(里甲制)에서 보듯 국가권력이 촌락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구조를 보이나 조선의 촌락사회는 향촌공동체 내지 향촌자치적 질서가 뿌리 깊은 전통을 이뤄 향약이 향촌 자치기구화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28]

정진영 또한 조선향약은 환난상휼의 덕목을 정비하여 부조에 관한 내용이 주자향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그는 상부상조를 조선 향약이 가지는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며 향촌자치의 핵심으로 꼽았다.[29] 이제 여러 논자들이 조선 향약의 특징으로 꼽은 향약의 강한 자치권의 실체를 율곡 이이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한다.

서원향약은 1571년(선조 4)에 청주목사로 부임한 이이가 만든 가장 전형적인 향약 중 하나이다. 이 향약은 수령이 주도하고 면리(面里) 조직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는데, 주자향약과는 체제나 내용이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30] 향약의 주요 조직을 살펴보면 각면에 최고 권한을 가진 계장(契長)과 유사(有司)를 두고, 이들 외에 3인 이상이 모이는 사류회의(士類會議)을 두어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향약에 규정된 계장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선악적(善惡籍)의 운영, 절도를 행하거나 소를 도살한 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각종 분쟁에 대한 처리 및 태(笞) 40 이하에 대한 처벌, 1년에 1회 약법(約法) 검토 등 다양하였다.

이 중 분쟁 처리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에서 쟁송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장과 유사가 일단 처리하고, 이들이 독단할 수 없는 경우는 사류회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향중에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것만 관에 소장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31] 중대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향약 조직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이는 계장 등 향약 직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서원향약의 주도 사족은 향약 규정에 대한 제정권을 비롯하여 민간 쟁송(爭訟)에 대한 처결권, 나아가 일정 한도의 형벌권을 모두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수령이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벌의 상한이 법적으로 최대 태(笞) 50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향약 조직에 위임한 사족들의 권한이 수령권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향약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향촌 사족들의 자체 처결 및 치죄(治罪) 권한은 주자향약의 과실상규(過失相規) 덕목을 구체화, 실질화한 것으로 자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하에서는 향약이 보유한 형벌권의 문제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향약 규정 속 향벌(鄕罰)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한 박현순의 논의를 소개한다.

향약에는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태형(笞刑) 외에도 여러 향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32] 먼저 제일 무거운 처벌로는 출향(黜鄕)과 불통수화(不通水火)가 있었다. 출향은 향약 약조를 지키지 않은 대상자를 고을 밖으로 축출하는 것을 말하고, 불통수화는 대상자와의 관계를 끊고 단절하는 의미가 있다. 둘다 향약 내에서는 최상위의 처벌에 해당하는데,

28) 이근명, 「주희의 「증손여씨향약」과 조선사회-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5, 2002.

29) 정진영, 앞 논문, 2016, 119쪽. 이근명도 정진영과 마찬가지로 동계(洞契)나 사창(社倉)과 결합하여 환난상휼에 관한 내용이 발달한 것을 조선향약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근명, 위의 논문(2002), 291쪽.

30) 이하 〈서원향약〉에 대한 서술은 주로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1984를 참고하였다.

31) 『栗谷全書』 권16, 雜著 西原鄕約 條目 참조.

32) 향약의 향벌 규정에 대해서는 박현순, 「조선시대 鄕罰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 105, 2004, 12-23쪽을 참고하였다.

실제로 서원향약에서는 향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관에 고한 후 출향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족층에게 적용된 향벌로는 삭적(削籍), 손도(損徒), 제마수(濟馬首), 면책(面責), 주벌(酒罰)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출향·불통수화와 같은 극벌(極罰)보다는 수위가 낮은 처벌이다. 대개 향안(鄕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삭적과 일정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손도가 향약의 중심적인 처벌로 가장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마지막으로 상민과 향리층에게 시행한 것이 서원향약에서 보는 태벌(笞罰)이다. 태벌은 향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해주에서 시행된 이이의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에서는 사안에 따라 태40에서 태10까지 처벌에 차등이 두어졌으며 1747년(영조 23) 보은군수 김홍득(金弘得)의 보은향약(報恩鄕約)에서도 태40까지 계장이 자단(自斷)하는 것을 옹호하였다. 박현순의 관찰에 따르면 어느 향약에서도 태벌 규정의 상한이 태50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수령의 처벌권보다 높게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으로 향약 주도층이 행사한 권한을 파악하기 위해 향약 조문에 명문화된 향벌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실제 향벌이 어떻게 집행되고 행사되었는가가 아닌 조문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신체에 가한 체벌인 태형부터 대상자를 고을에서 추방하는 출향에 이르기까지 향약을 주도한 사족층이 이들 향벌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약을 설계한 사실이다.

물론 서원향약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수령의 주도 혹은 후원하에 향약이 운영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시한 향벌을 관권을 배제한 향촌 사족들의 온전한 자체 형벌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향약 기록은 문구로만 전해지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므로, 향약의 실제 운영 사례를 폭넓게 검토해야 자치의 실체와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33]

정리해보기로 한다. 향약이 보유한 자치권, 실제 행사한 자치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조직들이 정부로부터 행정과 재정면에서 완전히 자율을 보장받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의 향약 기구가 보유한 자치권 규정은 가볍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향약의 향벌이 뒤로 갈수록 약화한다는 연구[34]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향약 형벌권의 시기별 차이가 좀더 밝혀져야 한다. 나아가 향약에서 실제 행사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례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 향약이 표방한 자치의 실상에 좀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6. 향약의 분포

지금까지 향약의 성격과 특질을 둘러싼 연구자들의 시각 차이와 쟁점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눠 다뤄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향촌사회에 미친 향약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향약이 실제로 지역

33) 예컨대 서원향약은 수령이 주도한 향약이라는 점, 이이의 청주목사 재임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약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34) 17세기 후반 이후 향약의 주도권이 수령에게 귀속되어 사족의 자치력이 약화되면서 鄕罰도 점차 실효를 상실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상권, 앞 논문(1984) 및 박현순, 앞 논문(2004) 참조.

에 얼마나 보급, 시행되었는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시기별, 지역별 차이를 포함한 향약 조직의 전국적 분포 양상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면 향약이 끼친 영향과 의의, 지역사회에서 향약의 보편화 여부와 공동체적 결속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향약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정리된 통계가 남아있지 않아 애초부터 당시 향약 조직의 분포를 계량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현존하는 향약 문서 및 일제시기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가능한 선에서 이 문제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

먼저 향약 문서의 현존 상황부터 알아본다. 중앙대에서 향약을 주제로 연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후진을 양성해온 박경하는 박사학위논문을 쓸 당시에 450여종의 향약을 조사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 발굴된 것까지 포함하면 기록으로 현존하는 자료가 대략 약 60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박물관, 도서관, 향교, 서원, 고서점 등을 더 뒤지면 자료가 더 많은 문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다.[35] 향약 자료의 분류 기준이나 통계 방식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박경하가 집계한 6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 다른 문서의 수집 현황을 고려할 때 단일 주제로는 적지 않은 향약 자료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향약 조직이 얼마나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을까? 사실 향약의 조직, 운영 등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향약이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다소 한계가 있지만 조선총독부의 계와 향약 조사보고서 두 종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언급할 두 종의 보고서는 각각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시대 향약 시행의 일단을 유추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에 관한 실태 조사 기록을 담은 1926년 보고서로서, 이는 조선총독부의 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주도하여 편찬되었다.[36] 동 보고서에는 계의 유형과 분포, 지역별 계의 숫자와 가입자 수 통계가 실려 있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계의 숫자는 19,067개, 가입자 수는 814,138명으로 집계되었다. 보고서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계는 동계(洞契)·대동계(大同契) 등 공공 목적을 위한 계, 족계(族契)·혼상계(婚喪契) 등 부조 목적의 계, 농상계(農商契) 등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월수계(月收契) 등 금융 목적의 계, 시계(詩契) 등 오락 목적의 계, 기타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영훈은 위의 보고서에서 공공 목적 및 부조 목적의 계를 그 기원이 19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전통적인 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조선 당대의 상황을 추론했다. 즉 이 두 유형의 계에 가입한 사람이 13,319개에 433,484명이고 당시 한국인 세대 총수가 대략 348만인 것을 바탕으로 총 세대별 해당 계의 가입 비율이 12%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므로 그는 17~19세기 전통사회 계의 보급이 보편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그는 1926년 보고서에 나오는 충북 청주군의 동계(洞契) 규모에도 주목하였다. 즉 보고서에 파악된 동계 숫자가 33개인데, 당시 청주군의 동리(洞里)가 343개인 것과 비교할 때 그 수가 너무 적다고 보았다. 결국 조선시대 전국적인 동계의 결성 또한 모든 동리에서 일반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37] 요컨대 계의 보급이 우리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향약의 한 갈래로 거론되는 동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인 셈인데, 비록 1920년대 통계에 의거한 가설이지만

35) 박경하, 앞 논문(2021), 30쪽.

36) 善生永助, 『朝鮮の契』,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17, 1926.

37) 이상의 분석은 이영훈,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89-390쪽 참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제가 향약을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32년에 전국적인 향약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남긴 자료 『향약사업보조서류(鄕約事業補助書類)』(조선총독부, 1933)이다.[38] 이 보고서에는 당시 조사된 향약 관련 단체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도별로 향약의 유형을 갑(甲), 을(乙), 병(丙) 세 가지로 나눠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갑은 옛 향약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거나 명칭에 상관없이 향약 정신에 입각한 시설, 을은 향약을 개선하거나 향약의 정신을 가미한 시설, 병은 구래의 향약이 최근까지 행해지다가 없어진 경우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사된 향약 단체 수가 2,570개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향약 조사 기준과 보고 사항 항목을 제각각 해석하는 바람에 도별로 향약 집계에 큰 차이가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충청남도는 2,137개로 집계한 반면 충청북도는 이보다 훨씬 적은 15개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이 그 한 예이다.

이처럼 해당 실태 조사는 집계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사에서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경기도(168개), 충청남도(2,137개), 황해도(161개)를 뺀 나머지 충청북도(15개), 전라북도(2개), 전라남도(8개), 경상북도(4개), 경상남도(7개), 평안남도(1개), 평안북도(17개), 강원도(24개), 함경남도(13개), 함경북도(14개)의 경우는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전제하여 비교하면 당시 각 도별 향약 단체가 수 개에서 최대 24개로 파악할 수 있다.[39]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전통시대에서 멀지 않은 1930년대의 향약 규모가 이 정도라면 조선 당대에도 향약 조직이 군현별로 보편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아닐까?

이상 일제시기의 계와 향약 실태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향약, 동계의 결성, 운영 문제를 추론해 보았다. 검토 결과 조선시대 향약과 동계 조직이 우리의 생각만큼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물론 해당 조사는 조선 당대가 아닌 1920, 193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전통적인 계와 향약이 해체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해당 통계의 정확도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계와 향약의 시행 및 지역민에게 미친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앞의 결론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향약 시행의 양상과 분포에 대해 보다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때 향약 결성과 시행의 기반이 되는 향촌 사회의 존재양태 그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이다. 그동안의 향약 연구에서는 동계나 향약 시행의 기반이 되는 동리, 혹은 마을의 실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향약 시행의 조건, 나아가 향약의 성패는 향약 조직의 토대가 되는 면리나 마을·촌락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조선시대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리제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시점은 조선후기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분동(分洞)을 거치는 등 끊임없이 유동하는 존재였다. 이는 마을의 존속이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40] 더욱이 사족 주도의 향약이나 동계의 경우 양반들의 지배력이 강한 반촌(班村) 지역에서 결성되었으므로 중심 세력이 결여로 결속력이 취약한 민촌(民村)에서는 그 영향력이 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도 시야에 두고 향약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

38) 해당 조사 내용에 대한 서술은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민속학』 49, 2015, 108-112쪽에 의거하였다.

39) 한미라, 위의 논문, 2015, 109쪽의 〈표 1〉 각도 향약 조사현황 참조.

40) 심재우, 「조선시대 마을의 위상과 마을 연구의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12, 2025, 355-362쪽.

덧붙여서 향촌사회 내부의 사족과 상천민 상호간의 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여러 향약, 동계에 나오는 반상간(班常間) 부조 관련 규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임란 전후까지 사족은 사족끼리, 상천은 상천끼리 부조하며 신분에 따라 부조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17세기에 와서 상하간의 균등한 부조가 표방되었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임란 전후까지 사족과 상천민 상하간의 생활세계는 분리되어 있었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틀 속에서 보다 밀착되는 것은 조선후기의 일이라는 주장이다.[41] 비록 규약 조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지만 향약, 동계 조직에서 상하민간의 결합 양상이 시기별로 다른 상황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조선시대에 향약 조직이 얼마나 많이 조직되었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관련 기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향약 조직의 결성 문제, 나아가 향약 시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향촌사회와 촌락 자체에도 주목해야 하며, 지역 내부 상하간의 생활 세계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42]

7.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실천 규범이자 구성원들의 자치 실현을 표방한 향약 이해와 관련한 연구자들간의 시각 차이, 연구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주제는 향약의 개념 문제와 조선후기 유행한 계 조직과의 비교, 조선화된 향약의 갈래와 그 유형 분류, 향약의 성격과 주도층의 시행 목적을 둘러싼 시각 차이, 향약 조문을 통해 제시된 자치의 내용과 실체 이해의 문제, 향약 조직의 분포와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향약 관련 연구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공동체의 회복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고양하려는 현재적 관심에 의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향약을 조명하거나 재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에 향약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도 확인된다. 예컨대 향약이라는 이름으로 전북 장수의 〈계남향약〉이나 남원 기지방 〈입암향약〉 등은 수백 년에 걸쳐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다.[43] 특히 제주에서는 마을별로 마련된 규칙을 향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43개 읍면 172개 마을[44]에서 향약이 마을별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법이자 중요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향약의 기능과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일정한 정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향약의 실체는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므로 긍정적 측면만 강조한다거나 향약 가치에 대한 낭만적 이해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향약이 유학자들의 자기 규제를 통한 실천 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한말에 상하

41) 이에 대해서는 박현순, 「17~18세기 향약의 반상간 부조에 대한 고찰-사족층과 하인층의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2017 참조.

42) 중종대 향약보급운동의 실패를 기묘사림의 급진적 개혁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향약 시행의 성패를 면리·촌락의 존재양상, 향촌사회 내부 상하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43) 관련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다음 글 참조. 박경하, 「향약은 살아 있다, 장수군 〈계남향약〉」, 『월간 주민자치』123, 2022; 박경하, 「"향약은 살아 있다" 남원 기지방 입암향약」, 『월간 주민자치』 125, 2022.

44) 김명수·김일순·고혜영·황경수, 「마을 규칙 '향약'의 교육적 요소 도출과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2, 2022.

기강과 봉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관찰사가 주도한 관변 향약이나 일제하의 향약 장려 정책처럼 주민통제를 위한 불순한 의도로 권장, 운영되었던 사례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끝으로 앞으로의 향약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향약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운영되었고, 여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역 사례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때 사례 연구와 동시에 각 향약의 비교 검토, 본고에서 다룬 향약 관련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향약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 작업이다. 이는 연구자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의 계문서(契文書) 분석에 따르면 규장각에는 경기, 충청 지역의 향약, 계 자료가 주로 소장되어 있고, 장서각에서는 영남 지역 명문 가문 자료가 많다.[45]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전라도 지역 향약, 동계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는 것은 현존 자료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료 수집 및 정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조선왕조실록』

『栗谷全書』

『晝永編』

『雅言覺非』

2. 저서

김인걸·한상권, 『조선시대 사회사연구사료총서(一)』, 보경문화사, 1986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신용하·박명규·김필동 엮음, 『한국 사회사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5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7

善生永助, 『朝鮮の契』,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17, 1926

3. 논문

김명수·김일순·고혜영·황경수, 「마을 규칙 '향약'의 교육적 요소 도출과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2, 2022

김용덕, 「總序: 鄕約新論」,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김필동, 「향약의 보급과 그 사회적 의미」, 『차별과 연대-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지성사, 1999

박경하, 「조선후기 향약연구-향약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2

45) 심재우, 앞 논문(2026); 심재우, 「장서각 수집 契文書 현황과 契 조직의 성격」, 『장서각』 51, 2024.

박경하,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성과와 과제-중앙대학교 역사학과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53, 2021
박경하, 「향약은 살아 있다, 장수군 〈계남향약〉」, 『월간 주민자치』 123, 2022
박경하, 「"향약은 살아 있다" 남원 기지방 입암향약」, 『월간 주민자치』 125, 2022
박경하, 「조선시대 향약의 성격과 주민자치로의 현대적 변용」, 『로컬커뮤니티 규약의 전통과 현대적 변용: 호남의 향약과 동계』, 한국학호남진흥원 주최 2024년 6월 14일 학술회의 자료집
박현순, 「조선시대 鄕罰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 105, 2004
박현순, 「17~18세기 향약의 반상간 부조에 대한 고찰-사족층과 하인층의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2017
심재우, 「조선시대 향촌 사회조직 연구의 현황과 과제-향약·계에 관한 성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0, 2019
심재우, 「장서각 수집 契文書 현황과 契 조직의 성격」, 『장서각』 51, 2024
심재우, 「조선시대 마을의 위상과 마을 연구의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12, 2025
심재우, 「규장각 소장 契文書의 유형과 특징」,『장서각』 55, 2026
유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1933
이광우, 「조선후기 향약 운영과 성격-정부·지방관·재지사족 등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 학위논문, 2018
이광우, 「조선시대 鄕約의 유형과 특징」, 『남명학연구』 83, 2025
이근명, 「주희의 「증손여씨향약」과 조선사회-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5, 2002
이민정, 「'鄕'을 벗어난 鄕約-17세기 서울의 相觀會 결성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74, 2024
이영훈,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이춘구, 「자치법규로서의 향약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47,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6년 2월
정진영, 「한국의 향약-외래문화의 수용과 변용의 한 모습」, 『안동학연구』 15, 2016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최진덕, 「주자학적 예치의 이념과 그 현실」, 『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2007
한도현, 「전통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농촌사회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농촌사회학』 13-2, 2003
한도현, 「예치공동체의 폐쇄성과 개방성」, 『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2007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민속학』 49, 2015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1984
田川孝三, 「李朝の鄕規について(一)(二)(三)」『朝鮮學報』 76·78·81, 1975·1976

中国乡约的地域史意义——
明清以来徽州乡约的宗族化与基层治理逻辑

张小坡（安徽大学徽学研究中心）

摘要：明清时期，乡约作为中央进行基层管理的重要手段，在各地推行的过程中，为了适应不同地区的情况、加强乡约在当地对约众的约束力，而出现了不同的在地化特征。具体到徽州，由于宗族在当地拥有较强的影响力，乡约在推行过程中自然而然地与之相结合，因而，这种在地化在徽州表现为宗族化。这种乡约宗族化表现在乡约的编纂、文本、约仪上，也同样体现于这一时期徽州乡村的秩序塑造中。明清时期的徽州乡约，体现出一种“官批民办”的模式，在这种模式下，乡约并非乡村基层自治的产物，而是中央对基层进行治理的一种手段，最终服务于中央，体现了官与族之间的权力关系，宗族最终仍受到官方的管理。

关键词：乡约，徽州，宗族化，基层治理

乡约是在中国古代基层社会中广泛存在的一种组织形式，民众受到乡约具体条例的教育和束缚，达到了化民成俗的目的。北宋时期，京兆蓝田吕大临兄弟四人首创乡约，作《吕氏乡约》以规范乡人。南宋，朱熹对《吕氏乡约》进行了增删修改，编为《增损吕氏乡约》，流传于后世。明初，为了加强对基层社会的管理，朱元璋仿照汉例，先设立耆宿制，后又代之以老人制，并亲颁《教民榜文》约束乡里，解决纠纷，常建华将其视为明代乡约的开端[①]。正德时期，出于镇抚南赣地区流民的需要，王守仁在巡抚任上，以告谕的形式颁立了《南赣乡约》，开启了明中叶以后对乡约实行官督官倡的热潮。嘉隆万时期，官方进一步推行乡约，除了传统注重道德教化的乡约外，此时也出现了军事治安型乡约等多种类型和目的的乡约，乡约开始走向制度化。清代，由于制度化的完成，乡约承担了保境安民、完粮纳税的责任，正式成为政府基层治理体系的一部分。

有关乡约的研究始于二十世纪三十年代，学界已取得丰硕成果，代表作有杨开道的《中国乡约制度》、梁漱溟的《乡村建设理论》、王兰荫的《明代之乡约与民众教

张小坡，安徽大学徽学研究中心研究员、博士生导师、副主任

① 常建华：《乡约的推行与明朝对基层社会的治理》，王天有、朱诚如主编：《明清论丛（第四辑）》，北京：紫禁城出版社，2003 年 4 月，第 30 页。

育》等，这些作品以研究乡约与地方自治之间的关系为主，多关注乡约的理论研究，在乡约对社会产生的影响上关注较少。

地处皖南低山丘陵间的徽州有着丰富的文书资源遗留，有关该地区的乡约问题很早就受到了学者的关注。陈柯云在上世纪就已经注意到了这一问题，写有《略论明清徽州的乡约》[①]，对此进行了系统性的考察。进入 21 世纪，徽州的乡约研究更侧重于对新材料、新方法的运用，乡约在社会史领域的意义受到重视。常建华提出“宗族乡约化”的概念，揭示了乡约对于宗族组织所产生的影响[②]。刘永华从“约族”入手，以婺源地区的宗族纠纷为切入点，考察了这一地区乡约与宗族结合后形成的调解体制[③]。卞利则通过对崇祯歙县乡约、顺治赤桥乡约的研究，说明了明末清初乡约在徽州的日常实践与经营运作[④]。黄忠鑫从空间的组合机制出发，探讨了婺源地区由图甲、保甲、乡约构成的多种空间组合形式[⑤]。制度史层面的研究也在继续推进，卞利对徽州乡约的形成、类型和运行进行了梳理[⑥]。廖华生则将视线聚焦于婺源地区，辨析了乡约等基层组织之间关系的变化过程，深化了对明清时期乡族组织基本结构和运行的认识[⑦]。在基层治理研究方面，王浩着眼于县域治理角度，考察乡约在作为一种治理手段时，在徽州反复推行的过程中遇到的困难和应对方式，站在国家治理的角度对乡约进行研究[⑧]。

揆诸明清徽州乡约研究成果，不难看到，学界已经注意到徽州的乡约有其自身特殊性，但是这种特殊性具体是指什么，在乡约文本中又有哪些体现？在这种情况下，徽州的乡约又体现了基层治理中怎样的官民互动模式？本文以徽州所见婺源沱川余氏、祁门文堂陈氏乡约，以及徽州乡约相关合同、簿册等文书为中心，探讨徽州乡约

① 陈柯云：《略论明清时期徽州的乡约》，《中国史研究》1990 年第 4 期，第 44-55 页。

② 常建华：《明代徽州的宗族乡约化》，《中国史研究》2003 年第 3 期，第 137-154 页。

③ 刘永华：《约族：清代徽州婺源的一种乡村纠纷调处体制》，《清华社会科学》2020 年第 2 期，第 41-68 页。

④ 卞利：《经营乡约：明末清初的乡约实践——以徽州为例》，《甘肃社会科学》2023 年第 6 期，第 48-60 页。

⑤ 黄忠鑫：《明清婺源乡村行政组织的空间组合机制》，《中国历史地理论丛》2018 年第 3 期，第 139-147 页。

⑥ 卞利：《明清时期徽州的乡约简论》，《安徽大学学报》2002 年第 6 期，第 34-40 页。

⑦ 廖华生：《明清时期婺源的乡约与基层组织》，《安徽史学》2017 年第 6 期，第 145-152 页。

⑧ 王浩：《明代徽州的乡约推行与县域治理》，《江西社会科学》2021 年第 8 期，第 134-142 页。

在明清时期的“官批民办”模式下所体现出的特色，考察这种模式下基层乡村组织自治中官与族之间主导权的问题。通过讨论颇具代表性的徽州乡约宗族化运行特征，明晰中国乡约研究的地域史意义。

一、徽州乡约的在地化实践与特色

乡约所要解决的首要问题就是在具体推行过程中缺乏约束力。《教民榜文》明文规定，“今出令昭示天下，民间户婚田土、斗殴相争，一切小事，须要经由本里老人、里甲断决。”[①]虽然赋予里老以奖惩权，但在面对实际问题时，这种被官方赋予的权力很难得到切实有效的执行，尤其是到了明中叶以后，由于里老人制度的逐渐瓦解，乡村原有的纠纷调解制度也发生了重大变化[②]，乡村秩序受到一定的挑战。为了维护基层社会的秩序、纠正和引导社会风俗，乡约在明中叶后的推行过程中，势必与地方情况相结合，做出在地化的改变。在正德时期所颁行的《南赣乡约》中就已经出现了这一趋势。为了服务于南赣地区管治的需要，王守仁编定《南赣乡约》，要求“父老子弟”与官府共同作用于容易发生叛乱的“新民”，通过道德教化和周围人的影响来安抚这些容易沦为流民的群体，期望利用南赣地区宗族对民众的影响力，以彰善惩恶为重点，进行普遍的道德教化，并以约仪相强化、以奖惩相约束，试图在当地形成良好的风俗，潜移默化地消除民变之弊，从而解决当地的叛乱问题。[③]在这以后，随着嘉靖年间朝廷对乡约的又一次推广，乡约进一步与各地民情相结合，进行了在地化的发展，具体到徽州，则表现为宗族化。

徽州乡约的宗族化与当地宗族的特殊性息息相关。一般而言，宗族都作为名词进行解释，指的是由父系血缘关系所连结成的一个聚居集团，敬奉父系祖先，但除此之外，宗族亦可以作为动词进行解释，此时的宗族指的是宗族内部由世系远近所形成的各等级之间所存在的支配与服从关系，这也是宗族能够形成一个实体的保证。[④]宗族具

① 《教民榜文》，载杨一凡点校：《皇明制书》（第二册），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年版，第 728 页。

② 郑小春：《里老人与明代乡里纷争的解决:以徽州为中心》，《中国农史》2009 年第 4 期，第 102-113 页。

③ 朱鸿林：《<南赣乡约>重新认识和深入研究的问题》，《人文杂志》2024 年第 8 期，第 21-32 页。

④ 钱杭：《中国宗族史研究入门》，上海：复旦大学出版社，2009 年，第 91 页。

有聚族而居的特征，内部根据血缘关系的远近形成等级制度，宗族内部成员对此普遍认可，自觉遵循并维护。宗族在徽州一直扮演着相当重要的角色，“徽俗士夫巨室多处于乡，每一村落，聚族而居，不杂他姓。”[①]宗族的血缘性和地缘性的特点在这一地区表现得尤为突出。同时，徽州宗族在地方上也拥有较强的约束力，尤其是在明中叶以后，徽州宗族对地方的影响力逐渐加强，这种控制渗入族人生活的方方面面，陈柯云认为，家法在徽州的乡村地区甚至大于国法[②]，可见宗族在当地的控制力。因此，在徽州，为了加强乡约的约束力，使乡约服务于官府对基层社会的统治，乡约与宗族相结合是必然的趋势，宗族化也成为了乡约在徽州的在地化特征。

总而言之，所谓的乡约宗族化，就是乡约在发展过程中，利用宗族聚居的特点，吸收了宗族通过血缘建构的等级制度，对宗族所在的基层聚居区进行管理，以达到道德教化、维护治安、征粮纳税的目的。

二、乡约宗族化的具体表现形式

嘉靖后，官方重视乡约在各地的推行，徽州士绅亦积极响应。与其他地区相比，徽州士绅除了官方身份外，也同时具有家族身份，他们关注本族和本乡的利益，并对所在的宗族和地区有着极强的责任感，将维护其利益视为自身应当肩负的责任[③]，也就是说，除了身负功名、成为官方力量下延的触手外，他们作为宗族中的一份子，深知宗族对所在聚居地的控制力和影响力，并且认同宗族在这一地区基于血缘亲疏形成的管理方式。这种二重身份，使得他们在参与乡约编定时，会自然地将宗族中的血缘结构嵌入其中。

徽州的乡约编纂，大多是以士绅阶级为主导的。譬如在婺源地区的沱川余氏族谱中，乡约的编纂就是如此。十六都一图余氏《乡约》的呈文内对呈送之人有着详细的

① 程庭：《若庵集》卷一，康熙刻本，哈佛燕京图书馆藏。https://www.shidianguji.com/book/HY2568/chapter/1kpcnioyftjqe?version=12 访问时间 2026 年 5 月 21 日。

② 陈柯云：《明清徽州宗族对乡村统治的加强》，《中国史研究》1995 年第 3 期，第 47-55 页。

③ 唐力行：《论徽州士绅的文化权力与乡村自治》，《安徽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2014 年第 2 期，第 157-165 页。

描述：“十六都一图约正副余时英、余德纯、余希宪、余世显、朱惟中、余纯似呈为奉行乡约事。”[①]，所见众人之中，余氏家族显然占据压倒性的优势，可见这份乡约是由余氏宗族主导编定的。而通过前文族谱中的叙述，这几名呈人的身份都已经较为明朗：余姓族人的身份都是士人，事迹均载于余氏族谱内。除呈送人身份外，余氏乡约的正文中也以小字录其为“冢宰少原公稿”，指出其作者为余懋衡，他在明万历年间曾出仕朝廷，历任官职。关于余懋衡和余氏乡约之间的关系，刘永华对此做过考证，认为余懋衡不一定是此乡约的作者，这份呈文也不一定与此乡约有关[②]，但无论余氏《乡约》究竟为谁所编纂，从关于他们身份的考察中可以看到，这些编纂者都身负功名，属于士绅阶级的一员。余氏《乡约》并非孤证，《文堂陈氏乡约叙》中，也写明了士绅阶级在陈氏的乡约中起到的主导作用。在这篇文章中，记录了陈氏乡约编纂的完整过程：“兹奉父老动念，欲议复古乡约法一新之，属昭祥与弟侄辈商其条款，酌其事宜，定之以仪节，参之以演义，乐之以乐章，以复诸父老，父老咸是其议，因以请于邑父母廖侯，侯复作成之。”[③]文堂陈氏乡约的具体内容，是由“昭祥与弟侄辈”商议编纂的，而在《祁门文堂陈氏宗谱》中可以找到这位作者陈昭祥与他弟侄辈的信息：陈昭祥在祁门陈氏中颇有名望，与他同辈的陈履祥考取贡生，在吉水县担任教谕；他的兄弟辈中元祥是廪生、淑祥为增生，他的侄子辈中汝霖、汝献、汝常是庠生，因此，陈昭祥虽无功名在身，只是当地的文化名人，但他和所在的弟侄辈却依然可以归属为一个士绅群体。[④]也就是说，《文堂陈氏乡约》的编纂，依旧由士绅阶级为主导。徽州的士绅作为沟通官府与地方的文化精英和宗族精英，兼具官、族双重身份，认可宗族的管理逻辑，在编纂乡约的时候，自然会将这种逻辑加入其中。在陈氏的乡约中，这种宗族关系在乡约文本的确定过程中已经有所体现，文中写明“以复诸父老，父老咸是其议”的流程，说明文堂陈氏的乡约内容虽然由士绅群体提出，但最终是由“父老”所确定。父老一般是指宗族中的年长者，他们能够对乡约文本做出最

① 光绪《婺源沱川余氏宗谱》卷四〇《礼俗・乡约》。

② 刘永华：《约族：清代徽州婺源的一种乡村纠纷调处体制》，《清华社会科学》2020 年第 2 期，第 41-68 页。

③ 《文堂陈氏乡约叙》，隆庆《文堂陈氏乡约》。

④ 道光《祁门文堂陈氏宗谱》卷之三《仕藻支派》。

后的确定，已经能够说明宗族等级制度对乡约产生的影响。从编纂开始，明清时期的徽州乡约就已经呈现出宗族化的特点。

由于乡约的具体内容已经掌握在宗族手中，这就使得宗族会将有利于维护自身秩序的内容纳入进文本，进一步巩固了宗族化乡约中所强调的血缘关系和衍生出的等级制度。《文堂陈氏乡约》的具体条款中表现得较为明显。本文开宗明义，“惟吾文堂陈氏，承始祖百三公以来，遵守朝廷法度，祖宗家训，节立义约，颇近淳庞……请申禁约，严定规条，俾于姓有所凭依，庶官刑不犯、家法不坠，或为一乡之善俗，未可知也。”[①] 将朝廷法度与祖宗家训并立，又将家法与官刑放在同一位置，实际上是将宗族权威与官府权威置于同等的地位。家法存在的意义就是为了维护宗族的秩序，宗族在乡约内强调家法，就已经成为了乡约宗族化的一个表现，这也为后文条款中对宗族等级关系的进一步维护进行了铺垫。在后文中，《乡约》强调“一各处祖坟。为首人须约聚斯文，如礼祭扫，遇有崩坏堆塞，即时修理，毋得因循。一为子孙有忤犯其父母、祖父母者，有缺其奉养者，有怨詈者，本家约正副会同诸约正言谕之，不悛，即书于纪恶簿，生则不许入会，死则不许入祠。一子弟凡遇长上，必整肃衣冠，接遇以礼，毋得首简土揖而已，间有傲慢不逊，凌犯长上者，本家约正副理谕之，不悛，告诸约正副正之，不悛，书于纪过簿，终身不许入会。”[②]在以上乡约中，文堂陈氏乡约分别对祖坟、亲子关系和宗族尊卑关系进行了规定，要求约众对祖坟进行维护，对父母顺从遵奉，对长上则需待之以礼。祖坟在宗族中常被视为祖宗与子孙所连接的精神桥梁，维护祖坟，也就意味着对血缘关系的维护。以下两条乡约的目的与之相同，只不过出现了不同的表现形式：对亲子关系的要求，实际上反映了文堂陈氏乡约对约众“孝”的强调，子孙孝顺和奉养父母、祖父母，实际上就是对宗族众血缘等级关系的维护，较远世的成员必须尊重和服从较近世系的成员，这在“凡遇长上”条中表现得更为明显，乡约成员如果不尊重或服从这种血缘等级，那么就会遭到“书于纪过簿”乃至“不许入会”的惩罚。乡约原本只是乡里的共同约定，但从上面所提到的

①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

②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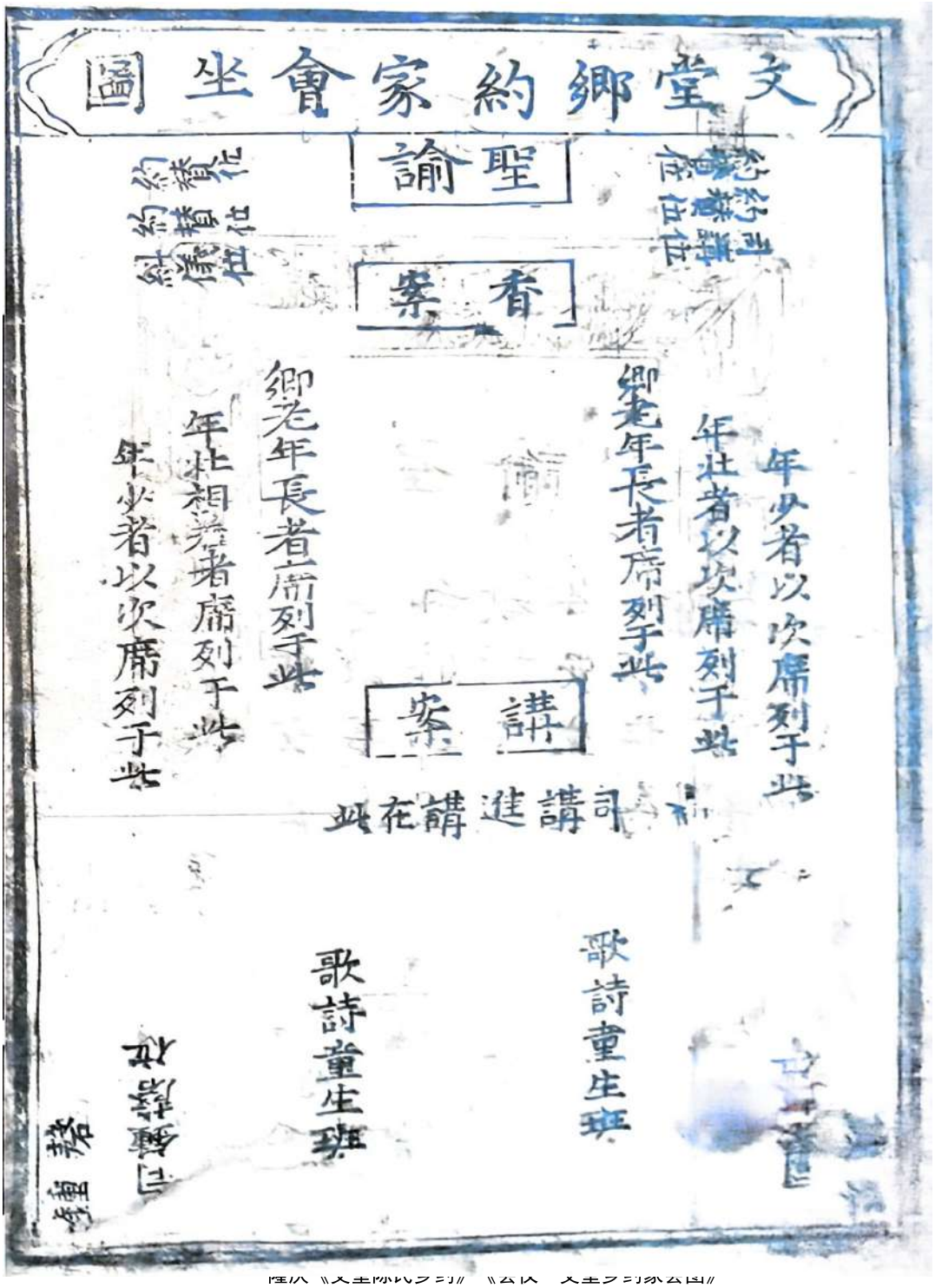
具体条款来看，徽州的乡约已经将宗族的结构纳入其中，宗族秩序在此时已经成为乡约整体的一部分，这正是乡约宗族化的一种外在表现。

除了具体的乡约条例，乡约宗族化在当地的约仪中同样有所体现。约仪在明初时并无特别记录，正德年间，王守仁在《南赣乡约》中制定出一套完善的流程，但这套流程的编制是根据当地的实际需要，以彰善纠恶为重点，其他方面从简，只要求“当会日，同约毕至，约赞鸣鼓三，众皆诣香案前序立，北面跪，听约正读告谕毕”[①]，到了徽州，宗族的影响使得其中的血缘等级关系渗入乡约约仪，使得约仪呈现出“长幼有序”的特征。在《婺源沱川余氏宗谱》所收录的《乡约·约仪》中，对约仪有着这样的描述：“一拜毕族父老列立于东，乡绅列立于西，诸约众列立于东西班后，约讲对立约赞支下，约赞唱宣圣谕，约讲朗歌孝顺父母六句，各整肃拱听毕。”[②]在所见约仪的排布中，可以看到，在宗族等级中占据较高地位的“父老”立于东侧，在位置的尊卑上高于处于西侧的乡绅和处于二者后的众约众，位于所有人的最尊位，这种位置的区别，正说明约仪在实际上也认同宗族的血缘等级关系。同样的例子也存在于《文

① 王守仁著，吴光等编校：《王阳明全集》第 17 卷《别录九·公移二》，浙江古籍出版社，2010 年，第 635-640 页。

② 光绪《婺源沱川余氏宗谱》卷四〇《礼俗·乡约·约仪》。

堂陈氏乡约》的《会仪》，在本篇中，陈氏对约仪的站位做出了详细记录，如下图所示：



图片来源《文堂陈氏乡约》《会仪》文堂乡约家会图》

由图[①]可知，在参与乡约者的排布上，陈氏以“乡老年长者”列于最前，年壮者列于后，年少者列于最后，两列队伍在香案两侧相互对称。宣讲结束后，在退场仪式中也按照年龄长幼安排：“礼毕。长者出，以次相继，鱼贯而出。”[②]陈氏会仪中，这种宗族内的长幼顺序显得更为明显。仪式本身具有象征性，它会传达所代表的文化内涵。约仪中对于年长者的尊崇，就是它吸收了宗族等级关系的外在表现。不过，这种以长者为尊的等级关系也并非完全绝对，当官府出席这一活动时，约仪又可能会出现新的变化，这种变化将在后文进行讨论。

徽州的乡约宗族化不仅体现在圣谕宣讲的约仪中，更表现在对约内成员的管理上，奖惩手段正是其中的重要体现，这一部分也归属于约仪之列。在徽州，对约众较为常规的奖惩手段是“书簿”。“书簿”是对一种行为的概括性称呼，在徽州，约正副会将值得表彰的约众和需要被惩罚的约众名字，分别记在两本功能不同的簿子上，以达到彰善纠恶的目的。这种方式，在徽州的乡约约仪中多有体现：“……约讲分读律，读毕，约讲复班。赞唱撤讲案，轮直甲长撤案，约史出班，言曰：’本县父母奉上司明文，举行约政，发有彰善簿、纪过簿，约内近日有善应书，从公指举；有不善应书，亦从公指报。约史复班。’约正副在班言曰：‘约内有真善事，可公举来。’众曰：‘果好。’约史属甲长，取案对众，直书于彰善簿，并书所举姓名备核。如未有善可举，或举者未确，暂住书。约正副言曰：‘约内有真不善事，可公报来。’众有报者，出班北向立，言曰某近日行某事不善，应书示戒。约正副咨于众曰：‘如何？’众曰：‘不枉。’约史对众直书于纪过簿，并书所报姓名备核。如未有不善可报，或报者未确，暂住书。其初犯小过，戒责更新，不改书簿。二簿约正副谨藏，不得他寄，以防遗失。”[③]可见，乡约中对于善恶行为的奖惩遵循固定的仪式，为善者、为恶者都要经过族众举出，确定其姓名，再登记入簿，而根据所犯过错轻重，也要递进处理。“书簿”的簿册本身也具有权威性，需要约正副“谨藏”，不可被随意安

①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会仪》。

②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会仪》。

③ 光绪《婺源沱川余氏宗谱》卷四〇《礼俗·乡约·约仪》。

置。祭祀、族谱、祠堂、牌坊等现实载体成为徽州宗族维系族人的集体记忆的方式，宗族社会的统治与社会秩序由此得到巩固。[①]通过“书簿”，宗族内部形成了集体记忆，约仪的象征性又对这一集体记忆进行了强化。约正副通过完整的“书簿”仪式，将奖惩的记忆强化、根植于约众的内心，这与宗族在这一地区通过祭祀等手段管理族众的逻辑一致。在《文堂陈氏乡约》中，这种惩罚的性质更加明确，如上文所见“不悛，即书于纪恶簿，生则不许入会，死则不许入祠”[②]，会、祠在宗族中都与祭祀有关，这即是以剥夺受罚者入祠、入会的权力，在宗族的集体记忆中将这些人抹去，是非常严重的惩罚，也从侧面证明了乡约中冒犯宗族等级关系会带来的重要后果。

可以看到，徽州乡约的宗族化贯穿于乡约的编纂、正文、约仪、奖惩环节。在编纂上，作为编纂者的徽州士绅凭借其双重身份，在伊始就将宗族管理的逻辑纳入乡约；在乡约文本中，乡约通过具体条文强调了宗族的血缘等级；在圣谕宣讲的约仪上，“长幼有序”成为特点，并通过仪式，进一步强化了宗族中的血缘秩序；在奖惩手段中，乡约借助了宗族的治理规范，以“书簿”塑造约众的集体记忆，对约众进行管理。以上种种都能够说明，乡约在徽州地区已经吸收了宗族的特点，做出了灵活的调适。

三、徽州乡约宗族化在维系乡村秩序上的表现

清代的乡约制度承袭明代，并在此基础上继续发展，故明清时期的乡约制度可以视作一个逐渐发展至最终完善的整体过程。在这一过程中，乡约与明中期以来走向废弛的保甲制相结合，乡约逐渐承担了保境安民的责任，自治的色彩逐渐淡化，转而走向制度化[③]，这一时期，完粮纳税的任务也随之转移到制度化的乡约中，到了清初，《圣谕十六条》被纳入圣谕宣讲的范畴内，文本中明确了保甲完粮正式成为乡约必须肩负的责任。也就是说，通过里甲编制和完粮纳税，乡约制度在一定程度上控制了基

① 张金俊：《宗族组织在乡村社会控制中的运作逻辑——以清代徽州宗族社会为中心的考察》，《江西社会科学》2011 年第 2 期，第 151-154 页。

②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

③ 解扬：《明代乡约制度化进程》，《历史研究》2024 年第 7 期，第 55-75 页。

层乡村的社会秩序。在徽州，宗族化后的乡约，就深度参与了基层乡村的社会秩序建构。

在一姓聚居的村落中，乡村秩序中所体现的乡约宗族化尤为突出，约正副利用血缘亲疏形成的等级制度来管理所在村落，乡村秩序从而与宗族的血缘等级制度相近。宗族的血缘等级制度往往与成员的年龄长幼有关，年长者一般对应着更近的血缘关系和更高的等级。在祁门的《文堂陈氏乡约》中，可以通过组织乡村秩序的乡约条例，观察到这种特点：

“各户定户长以为会宗，以主各户事。兹或会宗多有年高难任事者，择年稍长，有行检者为约正，又次年壮贤能者为约副，相与权宜议事。在约正副，既为众所推举，则虽无一命之尊，而有帅人之责。”①

文堂陈氏对于本村落的管理显然沿用了宗族之间的血缘关系：以户长为会宗，对各户事务进行管理。“兹或会宗多有年高难任事者”则表明，年龄长幼是会宗选择中的重要条件，会宗也是约正的首选。而在会宗如因年龄问题难以任事，在取代者的选择上，年龄也是重要条件，年稍长者为约正，年纪较小的只能成为约副。约正副承担着对约众管理的重任，即“帅人之责”。可见，在以文堂陈氏为代表的同姓聚居村落中，乡约的宗族化使得乡村的社会秩序与宗族的等级秩序趋向一致，由宗族中的年长者对本村进行管理。

徽州的图甲并非只有一姓聚居，事实上存在多姓氏聚居的情况，根据宗族的势力，图甲内有大姓小姓之别，而大小姓之间难免产生冲突。明清时期徽州的一些地区，已经出现了“约族”体制，在这种体制下，宗族与乡约相结合，形成了新的乡村纠纷调解模式②，当大小姓之间发生冲突时，乡约就成为化解冲突、重塑秩序的手段，各姓宗族成为乡约管辖的单位。这正是乡约宗族化在多姓聚居情况下的乡村秩序中的表现。

①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

② 刘永华：《约族：清代徽州婺源的一种乡村纠纷调处体制》，《清华社会科学》2020 年第 2 期，第 41-68 页。

《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及其相关材料所记载的就是这样一个例子。本文是胡氏宗族的胡佾让在本族晓起约内受到排挤后，担心“至今岁远年深，墨迹遗忘，口传失真，皆莫知升图立约之大义”[①]所作，其中对出约、入约的原因和经过有着完整的记述。胡氏被排除出晓起约，实际也基于下村汪姓附入本图约内后，对约内旧有的乡村秩序进行的一次再塑造。汪姓原本“惟二甲内，向来举其约正，因江公展嘲其原非本图约共主，永不得为约正。因此一言，两家搆讼，争竞约正。仍是因循，亦未曾审结。其后约众立墨，照依四甲轮充。”[②]在这一时期，由于汪姓处于附入者的地位，与当地的江姓在约正资格上产生了纠纷，两家相讼，二甲约正最后由“照依四甲轮充”。后来，旧有的乡村秩序在江公展死后发生改变，“及至公展物故，后辈不识升图立约之本义，肆欲妄行。而有一甲孙锡元、三甲江自汉等，倒戈助焰，左袒二甲汪徵等。一二三甲，联名出呈，呈摈四甲，另报一约，不与共编保甲。”[③]一二三甲在此时相联合，四甲受到排挤，以至于最后不得不通过乡约的形式脱旧约而入新约，维护自身利益。在这一时期，胡氏原本赖以生存的旧秩序被一二三甲的联合所破坏，原有的利益受到损害，“今有乡约一事，原共立晓起乡约编甲，本家与孙、叶、洪、胡共编第四甲，今因一二三甲恃衣衿之势，将本家胡姓原编二户烟灶，与一二三甲瓜分，意图欺剥苛敛。”[④]以至于胡姓“合族人等”无法继续“坐视欺凌，特此议墨。”

在这一行为中，胡氏宗族就是被视为一整个集体的，宗族在此时被视为乡约参与的基本单位。“倘日后启讼之时，无论呈告本家何人名字，一并出发，各项公私费用，俱系照本族锅头均敷，不致累计出身之人。自今议墨之后，务要同心竭力，以光前志，不得推诿怀私。如有执拗不遵等情，查出公罚，仍以不孝罪论。”[⑤]“不孝”是宗族内部的重罪，此时被胡氏宗族用来约束族人的行动，要求族人戮力同心，可见在

① 胡佾让:《四图约记》，《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安徽师范大学图书馆古籍文献部藏。

② 胡佾让:《四图约记》，《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

③ 胡佾让:《四图约记》，《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

④ 胡佾让:《本家议墨抄白》，《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

⑤ 胡佾让:《本家议墨抄白》，《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

多姓纠纷的背景之下，宗族作为乡约基本单位的事实得到了强化，乡约宗族化的特征又一次体现出来。

乡约塑造乡村的基本秩序，除了调停矛盾，还包括在同一约内联合发布禁约以避免事后纠纷的形式，同样能体现，此时，宗族已经成为了乡约所管辖的基本单位。如《立禁侵业主俞彦公支下独业苗山约》一约，即对此有所体现。全文内容如下：

立复申禁约，乡约詹一祥、俞永庆，保正詹懋斐、俞兆周，族众俞仲璿、詹懋鲁等。今有业主俞彦公支下独业苗山一号，坐落土名上园坟，里向来掌养杉松苗木，因年远日久，禁约未彰，诚恐无知人等，入山侵界，今复鸣两约保族，再行申禁。除前不究，嗣后凡大小户男妇人等，毋得借端入山，窃取侵犯。如有等情，一听山主捉获鸣约，呈官究处，决不轻恕。特立禁约通知。

乾隆三年九月念五日立禁约。

乡约 詹一祥、俞永庆。

保正 詹懋斐、俞兆周。

族众 俞仲璿、振民、振韬，詹懋鲁、世永、震、懋珍、震霄。[①]

从中可以看到，在这一村落中，詹、俞两家同居一地，而且从乡约及保正的人数来看，两个宗族的势力相差不大，这或许也是两姓能够通过乡约联合发布禁令，维护现有乡村秩序的原因之一。这份文书通过发布联合禁约，维护了俞氏俞彦公支下对独业苗山的利益，表明，“除前不究，嗣后凡大小户男妇人等，毋得借端入山，窃取侵犯。如有等情，一听山主捉获鸣约，呈官究处，决不轻恕。”重新申明禁令，避免了可能存在的侵界问题，以维护俞氏宗族应得的利益。最后的族众落款中，俞、詹二姓排列分明，两族代表在最后分别署名，也能够体现乡约中的宗族化特征。

① 《立禁侵业主俞彦公支下独业苗山约》，安徽大学徽学研究中心徽州文书特藏室藏。

除纠纷调解和重申禁约这两种情况外，多姓聚居地的乡村秩序中，也存在着各姓合作的局面，辛田都朱、李、吴三姓在图内有关点卯事宜进行合作的这份合同就是一个很好的例子：

立合同约辛田都朱、李、吴三姓等，为居里本都公务事。本图虽三牌里，人烟散处，公事浩繁。今合都廿牌等，齐集酌议。讲明圣谕，委议串图，合为一都料理。禀具文、武二县主蒙准串图，在官乡约朱、仝李保长李吴朋、保长吴叶凌，日后文武点卯，每凡公事，恐内外两相耽误，今邀有眼仝议，约嗣后官中点卯，本月内村朱姓答应，次月外村李吴答应，轮流充当，毋得推诿。如有失卯，仍系彼承值，不得累及下甲。再官府临都，不常事务，所有使费，内村合内外村合外，眼仝公付料理。信到即至，毋得耽延，免后失事，再值事之人，自当体悉串图之念，不得借事为由，似以派多，公使公用。如有梗顽不遵者，廿牌年公同呈官理论，毋得专靠值事之人。恐后无凭，眼仝里长立约存照。

……

康熙廿四年七月初六日辛田都廿牌年合仝约[①]

在合同中可见，在订立的过程中，官乡约朱、保长李、保长吴叶凌三人参与，分别代表一姓，在清代乡约制度化后被纳入基层管理制度的背景下，他们三个人都担任有一定的职务，并非宗族中的普通一户，而作为乡约、保长，对本宗族成员进行管理，实际上代表的是宗族而非个人，这就意味着这份乡约合同在签订时是以宗族为基本单位的，也是乡村秩序中对乡约宗族化的一次证明。

四、徽州宗族化的乡约与基层治理体系

以上所述，是否能够说明宗族化的乡约在徽州实际上实现了基层社会的自治？答案是否定的。乡约制度在明清时期政府的基层治理中处于什么样的位置，始终受到学界关注，围绕“乡村是否在这一时期实行自治”，最具代表性的就是费孝通的“双轨政治说”，认为是地方乡绅主导了百姓的日常生活和组织。然而，就所见徽州文书文

① 《康熙廿四年辛田都朱李吴三姓轮值公事合同约》，李睒琅《乔溪李氏宗谱》，个人收藏。

献来看，乡约制度一直都是官方运用于基层治理的一种手段，官府的意志一直是乡约制度的决定性力量，处于宗族之上。

虽然乡约在编纂之始就已经受到宗族的影响，但这并不意味着乡约在徽州彻底成为民编民办的产物，官府在制定乡约的过程中丧失了对乡约的控制权，实际上，在这一过程中，徽州乡约能否真正得以实施，还是要经过官府的认可。在余氏《乡约》呈文的最后，就写明余氏《乡约》最终需要“谨将所立条款，缮写成册，呈乞印信，给示颁行。为此，具呈须至呈者。县主吴父母批：准行。”[①]而《文堂陈氏乡约叙》中，也说明在父老均认可相约内容后“因以请于邑父母廖侯，侯复作成之。”[②]总的来说，在徽州，乡约的编定是“官批民办、自下而上”的，换言之，在徽州，官府在乡约的制定中掌握着最终的权力，即准予实行的权力，没有官府的认可，乡约实际上寸步难行。

徽州知府何东序以力行乡约为功，在《徽州府志》中占有一席之地，他在乡约推行中的重要功绩之一，就是编定了《新安乡约》。《新安乡约》对乡约具体的规定内容如下：“一约会依原编保甲城市，取坊里相近者为一约，乡村或一鄙、或一族为一约，其村小人少，附大村；族小人少，附大族；合为一约。各类编一册，听约正约束。一每约择年高有德、为众所推服者一人，为约正；二人为约副，通知礼文者数人，为约赞；道行礼仪为司讲，陈说圣谕；又得读书童子十余人，歌咏诗歌。其余士民，俱赴约听讲。有先达缙绅家居，请使主约。其约以圣谕训良榜六条为纲，各析以目，孝顺父母之目有六；尊敬长上之目有六，教训子孙之目有五，各安生理之目有六。其六曰定有限，□□□□□鸡豕有数，衣丧宫室有制”[③]。这些编制的基本内容，在万历二年推行的婺源余氏的乡约和隆庆六年推行的《文堂陈氏乡约》中都有相对应的内容，二者均有约正副、约赞、约讲的记载，也列出专目《圣谕衍义》《劝戒三十

① 光绪《婺源沱川余氏宗谱》卷四〇《礼俗·乡约》。

②《文堂陈氏乡约叙》， 隆庆《文堂陈氏乡约》。

③康熙《徽州府志》卷之二《风俗》，《中国地方志丛书·华中地区·第二三七号》，台湾：成文出版社，1975年影印本， 第448页。

一则》《圣谕演（附）》等，或许是因为一族单独为一约的关系，陈氏相较于余氏更加贴合《新安乡约》的记载，另有歌诗童生班等，在一些方面也更为详细，二者内容虽未完全与之一致，但都与何东序所制定的标准趋同。可见，在当时，徽州府六县乡约组织的编制，基本都在何东序的《新安乡约》框架之下，[①]官府对乡约的控制力可见一斑，乡约制度本身缺乏自治的独立性。

在约仪中也对官方的特殊地位有所体现。宗族化的乡约强调长幼之间的尊卑关系，以长者为尊，但官府在这一环节中的地位需要进行强调，至少在余氏《乡约》中，当县主官员莅临乡约宣讲时，讲约有另一套流程：“一邑父母临约，诸生出门外数步相迎，乡绅候于门首，陪入门……邑父母东，乡绅西，诸人以次列东西班……及各执事俱如常，事完，办一小饭，乡绅陪饭。饭毕，揖别，乡绅送出门，请登轿如常仪，诸生鞠躬送，约正副等稍远送，俱如常仪。” 从这种特殊情况的位置排布而言，代表官府的邑父母在此时居于东位最尊处，且有乡绅陪入门及陪饭、诸生相迎送、约正副稍远送，享受特殊待遇的同时，也意味着官府在约仪中高于宗族的尊崇地位。

官方力量也是在宗族家法无法对违约者进行惩处时的最后一项可行的手段。从余氏《乡约》“约史出班，言曰：‘本县父母奉上司明文，举行约政，发有彰善簿、纪过簿，约内近日有善应书，从公指举；有不善应书，亦从公指报。约史复班。’”[②]可见，“书簿”的权力源头还是在官府。而且“书簿”及其衍生手段之所以可行，实际是建立在宗族对族众的控制力上，但当这种控制力失效的时候，就必须有一种力量作为最终手段，这种力量自然是官府的力量，这一点在徽州乡约中说得也很清楚：“一约所立纪善、纪恶簿二扇，会日公同商确。有善者即时登纪，有过者初会姑容，以后仍不悛者，书之。若有恃顽抗法，当会逞凶，不遵约束者，即是侮慢圣谕，沮善济恶，莫此为甚，登时书簿以纪其恶，如更不服，遵廖侯批谕，家长送究。”[③]在陈氏乡约中可以看到，对于为恶者的惩罚是逐渐递进的，最终，当“书簿”也无法对其进行

① 卞利：《经营乡约：明末清初的乡约实践——以徽州为例》，《甘肃社会科学》2023 年第 6 期，第 48-60 页。

② 光绪《婺源沱川余氏宗谱》卷四〇《礼俗・乡约》《约仪》。

③ 隆庆《（祁门）文堂陈氏乡约》。

约束的时候，只有官府的力量能够对其进行惩戒，这也表明了官方力量处于宗族之上的事实。

在调解纠纷时，乡约中所代表的官方力量也是涉及宗族的保障，这一点在涉及多宗族的乡约中表现得更加明显。这一点在《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和《立禁侵业主俞彦公支下独业苗山约》中均有表现。在《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中，胡氏家族能够脱离旧约，重新被编入新约的保甲，背后正是官府对其提供的支持：“近见尔婺民纤微细事，辄诉县控，本县每批约保理明，约保竟不为理明，揆厥既由，皆系每村自联一乡，自号一保，名虽公报，实则私举，每每徇情匿弊，欺异啖远，其害不可枚数。今本县另编保甲，必要昭例而行，十家为一甲，十甲为一保，十保为一乡，约长公举保甲，甲长编着；当之零星居住者，必要附在两邻；每甲每保，均挨编定，不许缺少一户；查出未便，生等既言不行，不得自相取便，乱我成规。尔等知之，通邑之人咸共知之。”[①]这是该地县主针对一二三甲联名呈词的批复抄录，在这份抄录中，说明了当时各村保甲实际由私人左右的混乱情况，县主针对过去这一地区约保混乱的情况，对保甲进行重新编制，而胡氏正是借由这一机会，从晓起约中脱离，进入清源约。可见，正是在官方力量的保障之下，保甲得以进行重新编排，保障了胡氏宗族的利益。在《立禁侵业主俞彦公支下独业苗山约》中也有类似的表述：“如有等情，一听山主捉获鸣约，呈官究处，决不轻恕。”通过官方的力量，明确了俞彦公支下独业苗山的产权，为俞氏宗族的利益提供了保障。

最后，从徽州文书中也可以看到，完粮等乡约要负担的基层任务，在此时某种意义上也成为官府对约正的考核标准，未通过者便不能再担任这一职务。万历中后期以后，在乡约制度发达的东南地区，乡约受到政府的定期查考，有了被纳入基层治理体系的特点，具有地方制度的特征。[②]《明崇祯十四年四月祁门县侯潭乡约排年汪德彰等立清约轮管公务合同文书》即说明了这种状况：

① 胡佼让:《发批呈抄录》，《入清源约出晓起约叙记》。

② 解扬：《明代乡约制度化进程》，《历史研究》2024 年第 7 期，第 55-75 页。

侯潭乡约呈排为清约轮管公务事。本约内因约正汪钟清经管原领账目未明，致众抛，于崇祯四年，讦告至今，未得清妥。今奉县主边爷，因岁凶，查约账饥，致又复讼公庭。十二排年禀明清算，除上年并今岁讼中支费外，实在见银一十两整……其约正应官名目，干系甚重，力难独任。众议串作汪良兴承，议以三疃拈阄为定，凡遇应役，并迎送官府，讲约，举报善恶等事，即系本实经管四人承任……[①]

侯潭乡约的文书中显示，乡约的账目最终由县主进行查阅，由于乡约制度化，在这一时期，约正已经可以算作基层治理体系中的一环，不能完成其职责的人员，便不能继续担任约正，约众要重新找到人选替代。

综上，在徽州，乡约从来都只是官府为了达到基层治理的目的而实施的手段。宗族化是乡约在徽州的实施过程中，与本地富有影响力的宗族势力相结合后所表现出来的一种特征，这与解扬所提出的“多样一体”模式相契合。虽然在地方上，由于各地的情况不一，中央的政策会呈现出不同的在地化特点，做出因地制宜的变化，但这种变化实际上还是为中央政策所服务的，并不意味着它做出了根本的改变[②]，宗族化的乡约在这里就是多样的一种体现，而多样最终服务于一体，听从中央的统一号令。

五、结语

作为明清时期重要的基层治理手段，乡约在推行过程中，也根据自身需要，因势利导，呈现出在地化特征。在传统徽州社会，由于宗族在这一地区的强势地位，乡约与宗族相互影响，相互结合，具体表现为乡约的宗族化。乡约的宗族化并非浮于表面，从乡约的编纂，到乡约的文本，再到约仪的执行，徽州乡约处处都体现着宗族化的特征。乡约在明清时期与保甲制相结合，逐步走向制度化，影响了乡村秩序的建构，在这一过程中，宗族逐渐成为乡约管辖的单位，取代了原先的户，这也是乡约宗族化的一种体现。

① 中国社会科学院经济研究所编：《中国社会科学院经济研究所藏徽州文书类编·散件文书》，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年版，第 269 页。

② 解扬：《皇权到底下不下县？》，《历史评论》2022 年第 5 期，第 79-83 页。

然而，乡约的宗族化并不意味着乡约成为了宗族士绅管理百姓的工具，更不意味着基层自治，事实上，乡约依旧掌握在官府手中。徽州乡约在编定中一直保持着“官批民办”的模式，《新安乡约》的颁布也意味着乡约编定需要在官方所设立的框架之内，约仪中官方所享有的特殊仪式也说明了其高于宗族的地位，官方力量也成为惩戒的最后保障，完粮纳税等考核手段也将约正纳入了官方的基层治理体系中。以上种种皆表明，在徽州乡约的运行过程中，官府的力量贯穿于始末，并一直置于宗族力量之上。

由此可见，宗族化的乡约，实际上是中央集权体制在徽州的一种特殊体现形式，是官方管理基层社会的一种手段。宗族与乡约的互动过程中，借由乡约走向了组织化，而乡约则在这一过程中，借助宗族在其聚居地的影响力，达到了约束民众、移风易俗的目的，中央借由乡约完成了对基层的控制，从而表明中国乡约史研究不能泛泛而谈，而是要结合各地民间文献，探讨乡约在各地推行的特有方式及其表现特征，如此才能深入了解乡约运作的真实逻辑。

중국 향약(鄕約)의 지역사적 의의

- 명청 시기 휘주(徽州) 향약의 종족화(宗族化)와 기층 거버넌스 논리 -

장샤오포(張小坡)*

번역 : 이두은(李斗垠)**

초록: 명청 시기 향약은 중앙정부가 기층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향약은 각 지역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지 사정에 적응하고 현지인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현지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휘주 지역의 경우, 현지에서의 종족 영향력이 비교적 강했던 관계로 향약도 자연스레 종족과 결합하였다. 따라서 휘주 향약의 현지화는 종족화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향약의 종족화는 향약의 편찬, 향약 텍스트, 향약 의례 등에 잘 드러나며, 마찬가지로 이 시기 휘주 향촌 사회의 질서 형성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명청 시기 휘주의 향약은 일종의 '관비민판(官批民辦: 관방에서 비준하고 민간에서 운영)'식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 향약은 향촌 기층의 자치적 산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기층을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수단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를 위해 서비스하였다. 이는 관(官)과 족(族) 사이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종족이 여전히 관방(官方)의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향약, 휘주, 종족화, 기층 거버넌스

향약은 중국 고대 기층 사회에 널리 존재했던 일종의 조직 형식으로, 구체적인 향약 조례를 통해 민중을 교육시키거나 구속함으로써 교화와 풍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향약은 북송 시기 경조(京兆) 남전(藍田)의 여대림(呂大臨) 형제 4인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이들은『여씨향약(呂氏鄕約)』을 지어 향촌 사람들을 규율하였다. 이후 남송 시기에는 주희(朱熹)가『여씨향약』을 더하거나 빼는 등 수정을 가하여『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을 지었는데, 이 또한 후세에 전해졌다. 명대 초기에는 기층 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원장(朱元璋)이 한대의 전례를 모방하여 먼저 기숙제(耆宿制)를 설립했다가 이후 노인제(老人制)로 대체하였으며, 또 직접『교민방문(教民榜文)』을 반포하여 향촌을 구속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1] 정덕(正德) 연간에는 남감(南贛) 지역의 유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왕수인(王守仁)이 순무(巡撫) 재임 시절 고유(告諭)의 형식으로『남감향약(南贛鄕約)』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대 중엽 이후 관(官)에서 직접 감독하고 창도하는 향약 열풍을 열었다. 가정(嘉靖)·융경(隆慶)·만력(萬曆) 시기에 이르자 관방(官方)에서는 향약을 한층 더 보급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도덕 교화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향약 외에도, 군사치안형 향약 등 다양한 유형과 목적을 지닌 향약이 출현하여 향약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청대에는 이러한 제도화가 완성됨에 따라 향약이 국경을 위수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며 세금의 출납 책임을 맡게 되었고, 정식으로 정부 기층 거버넌스 체계의 일부분이 되었다.

---

* 안후이대학(安徽大學) 휘학연구중심(徽學研究中心) 연구원, 박사과정 지도교수, 부주임

** 전남대학교 중국인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창젠화(常建華)는 이를 명대 향약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常建華,『鄕約的推行與明朝對基層社會的治理』,『中國史研究』, 2003년 제3기, 137~154쪽 참고.

향약에 관한 연구는 지난 세기 30년대에 시작되어 학계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양카이다오(楊開道)의 『중국향약제도(中國鄉約制度)』, 량수밍(梁漱溟)의 『향촌건설이론(鄉村建設理論)』, 왕란인(王蘭蔭)의 『명대의 향약과 민중교육(明代之鄉約與民眾教育)』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들은 주로 향약과 지방 자치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며 향약의 이론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향약이 중국 사회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덜 주목하였다.

안휘성 남부의 저산 구릉 지대에 위치한 휘주는 풍부한 문서 기록이 남아 있어, 해당 지역의 향약 문제도 일찌감치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천커윈(陳柯雲)은 이미 지난 세기에 이 문제에 주목하여 「명청 시기 휘주의 향약에 대한 약론」[2] 에서 이를 계통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휘주의 향약 연구는 새로운 사료와 새로운 방법론의 활용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사 영역에서 향약이 지니는 의의가 중시되었다. 창젠화(常建華)는 '종족향약화(宗族鄉約化)'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향약이 종족 조직에 미친 영향을 밝혔고[3], 리우융화(劉永華)는 '약족(約族)'에서 출발하여 무원(婺源) 지역의 종족 분쟁을 근거로, 이 지역의 향약과 종족이 결합한 후 형성된 조율 체제를 고찰하였다.[4] 또 비엔리(卞利)는 숭정 연간 흡현(歙縣) 향약과 순치 연간 적교(赤橋) 향약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명말·청초 향약이 휘주에서 보여준 일상적인 실천과 경영 운용을 규명하였고[5], 황중신(黃忠鑫)은 공간의 조합 메커니즘에서 출발하여 무원 지역에서 도갑(圖甲), 보갑(保甲), 향약으로 구성된 다양한 공간 조합 형식을 연구하였다.[6] 이와 동시에 제도사 측면의 연구도 계속되었는데, 비엔리는 「명청 시기 휘주의 향약에 대한 소론」을 통해 휘주 향약의 형성, 유형, 운용 등을 정리하였고[7], 랴오화성(廖華生)은 시선을 무원 지역에 집중하여 향약 등 기층 조직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명청 시기 향족(鄉族) 조직의 기본 구조와 운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8] 나아가 기층 거버넌스 연구 방면에서는 왕하오(王浩)가 현(縣) 거버넌스에 착목하여, 향약이 하나의 거버넌스 수단으로서 휘주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과정 중 직면한 어려움과 대응 방식을 고찰, 국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향약을 연구하였다.[9]

명청 시기 휘주 향약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학계가 이미 휘주 향약만이 지닌 특수성에 주목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향약 텍스트 안에서는 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휘주의 향약은 어떠한 관(官)과 민(民)의 상호작용 모델을 보여주는지, 나아가 이 지역의 기층 거버넌스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여 있었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휘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무원(婺源) 타천(沱川) 여씨(余氏)와 기문(祁門) 문당(文堂) 진씨(陳氏)의 향약 및 휘주의 향약 계약문서[合同], 부책(簿冊) 등의 문서를 중심으로, 명청 시기 '관비민판(官批民辦)' 모델 아래 휘주 향약이 보여준 특색을 탐구하고, 이러한 모델 아래 기층 향촌 조직의 자치 과정 중 전개된 관(官)과 족(族) 사이의 주도권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처럼 대표성을 띠는 휘주 향약의 '종족화' 운용 특징을 논하면서, 중국 향약 연구가 지니는 지역사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

2) 陳柯雲, 『略論明淸時期徽州的鄉約』, 『中國史硏究』, 1990년 제4기, 44~55쪽.
3) 常建華, 『明代徽州的宗族鄉約化』, 『中國史硏究』, 2003년 제3기, 137~154쪽.
4) 劉永華, 『約族 : 淸代徽州婺源的一種鄉村糾紛調處體制』, 『淸華社會科學』, 2020년 제2기, 41~68쪽.
5) 卞利, 『經營鄉約 : 明末淸初的鄉約實踐——以徽州爲例』, 『甘肅社會科學』, 2023년 제6기, 48~60쪽.
6) 黃忠鑫, 『明淸婺源鄉村行政組織的空間組合機制』, 『中國歷史地理論叢』, 2018년 제3기, 139~147쪽.
7) 卞利, 『明淸時期徽州的鄉約簡論』, 『安徽大學學報』, 2002년 제6기, 34~40쪽.
8) 廖華生, 『明淸時期婺源的鄉約與基層組織』, 『安徽史學』, 2017년 제6기, 145~152쪽.
9) 王浩, 『明代徽州的鄉約推行與縣域治理』, 『江西社會科學』, 2021년 제8기, 134~142쪽.

1. 휘주 향약의 현지화 실천과 특색

향약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이었다. 예컨대『교민방문(教民榜文)』에는 “이제 법령을 내어 천하에 보이노니, 민간의 호적, 혼인, 전토(田土), 폭행이나 다툼 등 일체의 사소한 일들은 반드시 해당 마을[里]의 노인과 이갑(里甲)을 거쳐 판결해야 한다(今出令昭示天下, 民間戶婚田土、鬥毆相爭, 一切小事, 須要經由本里老人、里甲斷決)”[10]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마을 노인[里老]에게 상벌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향약의 권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명대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 마을 노인 제도가 점차 와해됨에 따라 기존의 향촌 분쟁 조정 제도 역시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11], 향촌 질서도 일정 부분 도전을 받게 되었다. 기층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풍속을 바로잡거나 인도하기 위해, 명대 중엽 이후 향약의 시행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한 현지화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덕(正德) 연간에 반포된『남감향약(南贛鄉約)』에 이미 나타나 있다. 남감 지역 통치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왕수인(王守仁)은『남감향약』을 편정(編定)하고, ‘부로자제(父老子弟)’가 관청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신민(新民)’을 교화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는 도덕 교화와 주변인들의 영향력을 통해 유민(流民)으로 전락하기 쉬운 집단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며, 남감 지역 종족이 민중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활용하여 권선징악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도덕 교화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약의(約儀, 향약 의례)를 통해 상호 권면을 강화하고, 상벌을 통해 서로를 구속하게 함으로써 현지에 미풍양속을 형성하고, 민변(民變)의 폐단을 잠재적으로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지의 반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2] 이후 가정(嘉靖) 연간 조정이 향약을 다시 한번 시행하면서, 향약은 각 지역의 민정(民情)과 결합하여 더욱 현지화된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휘주 지역의 경우 종족화(宗族化)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휘주 향약의 종족화는 현지 종족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일반적으로 종족(宗族)이라는 명사는 부계 혈연관계를 통해 연결된 하나의 거주 집단을 가리키며, 공통의 부계 조상을 받들며 살아간다. 하지만 종족은 동사적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족 내부에서 세계(世系)의 친소(親疏)에 따라 형성된 각 등급 간의 지배와 복종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야말로 종족이 하나의 실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보장이라 할 수 있다.[13] 종족은 그 자체로 집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혈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형성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또 자연스레 선조와 혈연적으로 가까운 계통이 보다 먼 계통을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종족 내부 역시 이러한 관리 질서를 인정하였으며, 구성원들 역시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유지하였다. 휘주에서 종족은 줄곧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른바 “휘주의 풍속은 사대부 거실(巨室) 대부분이 향촌에 머물며, 촌락마다 종족 단위로 모여 살고 다른 성씨와 섞여 살지 않는다(徽俗士夫巨室多處於鄉, 每一村落, 聚族而居, 不雜他姓)”[14]라고 한 것처럼, 종족의 혈연성과 지연성이라는 특징이 휘주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10) 『教民榜文』, 載楊一凡點校:『皇明制書』(第二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3年版, 728쪽.

11) 鄭小春,『里老人與明代鄉里紛爭的解決: 以徽州爲中心』,『中國農史』, 2009년 제4기, 102~113쪽.

12) 朱鴻林,『「南贛鄉約」重新認識和深入研究的問題』,『人文雜誌』, 2024년 제8기, 21~32쪽.

13) 錢杭,『中國宗族史研究入門』,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9年.

14) 程庭,『若庵集』卷1. 康熙刻本. 哈佛燕京圖書館藏. 16쪽a, https://www.shidianguji.com/book/HY2568/chapter/1kpcnioyftjqe?version=12 사이트 접속 시간 2026년 5월 21일.

동시에 휘주의 종족은 지방 사회에 비교적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대 중엽 이후부터 휘주 종족의 지방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종족 구성원의 생활 여러 방면에 스며들었다. 천커윈(陳柯雲)은 휘주 향촌 지역에서는 가법(家法)이 심지어 국법(國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15], 이를 통해 현지에서 종족이 행사한 통제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휘주에서는 향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향약을 관청의 기층 사회 통치에 서비스하도록 만들기 위해 종족과의 결합이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족화는 곧 휘주 향약의 현지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이른바 향약 종족화란 향약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족 집거의 특성을 활용하고, 종족이 혈연을 통해 구축한 위계질서를 흡수하여, 종족이 거주하는 기층 집거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향약은 도덕 교화, 치안 유지, 조세 징수와 납부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2. 향약 종족화의 구체적 표현 형식

가정(嘉靖) 연간 이후 관이 각 지역에서 향약의 시행을 중시하게 되면서, 휘주 지역의 사신(士紳)들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휘주의 사신(士紳)들은 관방(官方) 신분을 지니는 동시에 가족의 신분 역시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종족과 향촌의 이익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신들이 소속된 종족과 지역 사회에 대해 매우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이익을 수호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16] 다시 말해, 이들은 공명(功名)을 업은 채 관방의 권력이 향촌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촉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종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종족이 거주 지역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종족 내부에서 세계(世系)의 친소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리 방식 역시 인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중 신분은 이들이 향약의 편정(編定)에 참여할 때, 자연스레 종족 내부의 혈연 구조를 그 안에 삽입하도록 만들었다.

향약 텍스트의 편찬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잘 드러난다. 휘주의 향약 편찬은 대체로 사신(士紳) 계층이 주도하였다. 예를 들어, 무원(婺源) 지역의 타천(沱川) 여씨(余氏) 족보에 수록된 향약 편찬이 그러하다. 십육도일도(十六都一圖) 여씨 향약의 정문(呈文)에는 정인(呈人)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인다. "십육도일도 약정(約正)과 약부(約副) 여시영(余時英)·여덕순(余德純)·여희헌(余希憲)·여세현(余世顯)·주유중(朱惟中)·여순사(余純似) 등이 향약 봉행의 일을 위해 올립니다(十六都一圖約正副余時英、余德純、余希憲、余世顯、朱惟中、余純似呈爲奉行鄉約事)".[17] 여기서 확인되는 여러 정인(呈人) 가운데 여씨 가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향약의 편정(編定)이 여씨 종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래서는 주로 여씨 성을 지닌 정인(呈人)들의 사회적 지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족보의 서술을 통해 이들 정인의 신분 역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시영(余時英)은 아들 여일룡(余一龍) 덕분에 생전과 사후에 가봉(加封)과 추봉(追封)을 받았다. 나머지 언급된 다른 여씨들도 모두 사인(士人) 신분으로, 그 행적이 여씨 족보 안의 「사진(仕進)」 항목에 실려 있다. 정인의 신분 외에도 여씨 향약 본문에는 작은 글씨로 "총재소원공고(冢宰少原公稿)"라는 기록이 있어, 그 저자가 여무형(余懋衡)

15) 陳柯雲, 『明清徽州宗族對鄉村統治的加強』, 『中國史研究』, 1995년 제3기, 47~55쪽.
16) 唐力行, 『論徽州士紳的文化權力與鄉村自治』,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4년 제2기, 157~165쪽.
17) 光緒『婺源沱川余氏宗譜』卷四〇『禮俗·鄉約』.

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만력(萬曆) 연간에 조정에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여무형과 여씨『향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류융화(劉永華)가 고증한 바 있다. 그는 여무형이 반드시 현재 확인되는 향약의 원저자는 아닐 수 있으며, 단지 수정자였을 가능성, 혹은 오늘날 전하는 이 향약 자체가 여무형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여시영 등이 제출한 향약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다.[18] 그러나 여씨『향약』이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이들의 신분을 고찰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들 편찬자가 모두 공명(功名)을 지닌 사신 계층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여씨『향약』의 편찬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문당진씨향약서(文堂陳氏鄉約敍)』에서도『문당진씨향약』편찬 과정에서 사신 계층의 역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진씨 향약이 편찬된 전체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에 부로(父老)들이 뜻을 세워 옛 향약의 법을 회복하고 쇄신하고자 하여, 소상(昭祥)과 그 동생 및 조카들에게 조목과 조항을 상의하게 하였다. 일을 참작하여 의절(儀節)로 정하고, 연의(演義)로 참고하고, 악장(樂章)으로 이를 즐겁게 하여 다시 부로들에게 돌려보이니, 부로들이 모두 그 의논을 옳다고 여겼다. 이에 읍부모(邑父母) 요후(廖侯)에게 청하였고, 요후가 다시 이를 성사시켜 주었다(茲奉父老動念, 欲議復古鄉約法一新之, 屬昭祥與弟侄輩商其條款. 酌其事宜, 定之以儀節, 參之以演義, 樂之以樂章, 以復諸父老, 父老咸是其議, 因以請於邑父母廖侯, 侯復作成之)”. 문당 진씨 향약의 구체적 내용은 “소상(昭祥)과 그 동생 및 조카들”에 의해 논의·작성되었는데,『기문문당진씨종보(祁門文堂陳氏宗譜)』를 통해 저자인 진소상(陳昭祥)과 그의 동생·조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소상은 기문 진씨 내부에서 상당한 명망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같은 항렬의 진리상(陳履祥)은 공생(貢生)에 급제하여 길수현(吉水縣)의 교유(教諭)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족보 안에서도 드물게 초상이 남아 있는 ‘모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그의 형제 세대 가운데 원상(元祥)은 늠생(廩生), 숙상(淑祥)은 증생(增生)이었으며, 조카 세대 가운데 여림(汝霖)·여헌(汝獻)·여상(汝常)은 모두 상생(庠生)이었다. 따라서 비록 진소상 자신은 공명(功名)이 없는 지방의 문화 명사일 뿐이었지만, 그와 그의 동생·조카들은 여전히 하나의 사신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19] 다시 말해,『문당진씨향약』의 편찬은 여전히 사신 계층이 주도한 것이다. 휘주의 사신은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관청과 지방을 연결하는 문화 엘리트이자 종족 엘리트였으며, 종족 내부의 관리 논리를 실제로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였으며, 향약 역시 종족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진씨 향약에서도 이러한 종족 관계는 향약 텍스트의 확정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다. 위에서 인용한 “다시 부로들에게 돌려보이니, 부로들이 모두 그 의논을 옳다고 여겼다(以復諸父老 , 父老咸是其議)”라는 절차는, 비록 문당 진씨 향약의 내용이 사신 집단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로’들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부로는 일반적으로 종족 내부의 연장자를 가리킨다. 이들이 향약 텍스트에 대해 최종적인 확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종족의 위계 제도가 이미 향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명청 시기 휘주의 향약은 편찬 단계에서부터 이미 종족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향약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상 종족에 의해 장악되면서, 종족은 종족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내용들을 향약 텍스트 안에 추가하였다. 이는 종족화된 향약이 강조하는 혈연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계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특징은『문당진씨향약(文堂陳氏鄉約)』의 구체적 조례에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향약은 첫머리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8) 劉永華,『約族 : 清代徽州婺源的一種鄉村糾紛調處體制』,『清華社會科學』, 2020년 제2기, 41~68쪽.)

19)『祁門文堂陳氏宗譜』.

> 오직 우리 문당 진씨는 시조 백삼공(百三公) 이래 조정의 법도와 조종(祖宗)의 가훈을 준수하여 절도에 맞게 의약(義約)을 세우고, 자못 순박함에 가까웠다. …… 금약(禁約)을 거듭 밝히고 규조(規條)를 엄히 정하여, 동성(同姓) 사람들이 이에 의지할 바를 갖게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관형(官刑)을 범하지 않고 가법(家法)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면, 혹 한 고을의 좋은 풍속이 될지도 모르겠다(惟吾文堂陳氏, 承始祖百三公以來, 遵守朝廷法度, 祖宗家訓, 節立義約, 頗近淳龐……請申禁約, 嚴定規條, 俾于姓有所憑依, 庶官刑不犯、家法不墜, 或爲一鄕之善俗, 未可知也).[20]

여기서는 조정의 법도와 조종의 가훈을 나란히 배치하였고, 또 가법(家法)과 관형(官刑)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종족의 권위와 관청의 권위를 서로 병렬시키고 동등한 지위에 두는 것이었다. 가법의 존재 이유는 종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종족이 향약 안에서 가법을 강조하고 종족 권위의 지위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향약 종족화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후속 조례에서 종족 내부의 위계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문당진씨향약』의 후속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하나, 각처의 조상 분묘. 대표자가 반드시 종족 사람들을 약속하여 모으고 예에 따라 제사와 성묘를 시행하게 하며, 무너짐이나 막힌 곳이 있을 시 즉시 수리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一各處祖墳. 爲首人須約聚斯文, 如禮祭掃, 遇有崩壞堆塞, 即時修理, 毋得回循).
>
> 하나, 자손 가운데 부모나 조부모를 거스르거나 봉양에 소홀한 자, 혹은 원망하거나 욕설하는 자가 있으면, 본가의 약정(約正)과 약부(約副)가 여러 약정과 함께 타이르고 깨우치되, 고치지 않으면 기악부(紀惡簿)에 기록한다. 살아 있을 때는 입회하지 못하게 하고, 죽은 뒤에는 사당에 들지 못하게 한다(一爲子孫有忤犯其父母、祖父母者, 有缺其奉養者, 有怨詈者, 本家約正副會同諸約正言諭之, 不悛, 即書於紀惡簿, 生則不許入會, 死則不許入祠).
>
> 하나, 자제들은 연장자를 만날 경우 반드시 의관을 단정히 하고 예로써 대우해야 하며, 단지 고개만 숙이는 식의 간략한 인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만약 오만불손하여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범하는 자가 있으면, 본가의 약정과 약부가 먼저 타이르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 약정과 약부에게 알려 바로잡게 하며,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기과부(紀過簿)에 기록하고 종신토록 입회하지 못하게 한다(一子弟凡遇長上, 必整肅衣冠, 接遇以禮, 毋得首簡土揖而已. 間有傲慢不遜, 凌犯長上者, 本家約正副理諭之, 不悛, 告諸約正副正之, 不悛, 書於紀過簿, 終身不許入會).[21]

위의 향약 조례들에서 문당 진씨 향약은 각각 조상의 분묘, 친자 관계, 종족의 존비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향약 구성원들에게 조상 분묘를 지키고, 부모에게는 순종과 봉양하도록 하며, 연장자에게는 반드시 예를 갖추어 대하도록 하였다. 조상 분묘는 종족 내부에서 늘 조상과 자손을 연결하는 정신적 매개로 여겨졌다. 따라서 조상 분묘를 지킨다는 것은 곧 혈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어지는 두

20) 隆慶, 『(祁門)文堂陳氏鄕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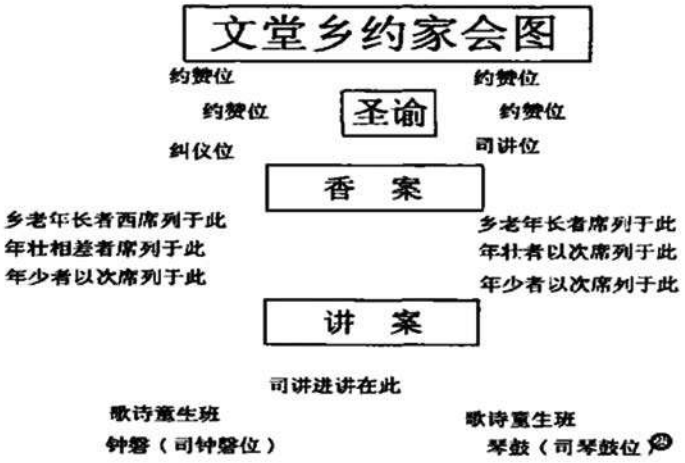
21) 隆慶, 『(祁門)文堂陳氏鄕約』.

조례 역시 목적은 같은데, 단지 표현 형식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친자 관계에 대한 요구는 실질적으로 문당 진씨 향약이 향약 구성원들에게 '효(孝)'를 요구하였음을 반영한다. 자손들이 부모와 조부모께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은 실제로 종족 내부의 혈연적 위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세계(世系)가 상대적으로 먼 구성원은 더 가까운 세계의 구성원에게 반드시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 이러한 특징은 "연장자를 만날 경우[凡遇長上]" 조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향약 구성원이 이러한 혈연적 위계를 존중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경우, "기과부에 기록"되거나 심지어 "입회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 본래 향약은 향리(鄕里)의 공동 약정에 불과했지만, 위에서 인용한 구체적 조례들을 볼 때, 휘주의 향약은 이미 종족 구조를 그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때, 종족 질서는 이미 향약 전체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이야말로 향약 종족화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향약 조례 외에도, 향약의 종족화는 현지의 약의(約儀)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명대 초기에는 약의와 관련한 기록이 특별히 보이지 않다가, 정덕(正德) 연간에 이르면 왕수인(王守仁)이 『남감향약(南贛鄕約)』에서 비교적 완비된 절차를 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남감 지역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권선징악을 중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간략하였다. 가령 "모임 날이 되면 향약의 구성원이 다 모이고, 약찬(約贊)이 세 차례 북을 울리면 모두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차례대로 선다.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약정(約正)이 고유문(告諭文)을 다 읽을 때까지 듣는다(當會日, 同約畢至, 約贊鳴鼓三, 衆皆詣香案前序立, 北面跪, 聽約正讀告諭畢)"[22]고만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휘주에 이르러서는 종족의 영향으로 인해 혈연적 위계 관계가 향약의 약의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약의에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무원타천여씨종보(婺源沱川余氏宗譜)』에 수록된 「향약·약의(鄕約·約儀)」에는 약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한 번 절을 마친 뒤 종족의 부로(父老)는 동쪽에 나란히 서고, 향신(鄕紳)은 서쪽에 나란히 선다. 여러 약중(約衆)은 동서 양편 줄의 뒤에 서며, 약강(約講)은 약찬(約贊)과 마주 선다. 약찬이 성유(聖諭)를 선창하면 약강이 효순부모(孝順父母)에 관한 여섯 구절을 낭랑하게 읊고, 모두 단정하고 엄숙히 마칠 때까지 듣는다(一拜畢族父老列立於東 , 鄕紳列立於西 , 諸約衆列立於東西班後 , 約講對立約贊支下 , 約贊唱宣聖諭 , 約講朗歌孝順父母六句 , 各整肅拱聽畢)".[23] 이 약의의 배치를 보면, 종족 위계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부로'들이 동쪽에 서고, 또 위치의 존비에서도 서쪽에 선 향신이나 그 뒤에 배치된 여러 약중보다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로들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치상의 구별은 약의가 실제로 종족의 혈연적 위계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문당진씨향약(文堂陳氏鄕約)』의 「회의(會儀)」편에도 있다. 이 글에서 진씨 종족은 약의에서의 자리 배치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22) 王守仁著, 吳光等編校, 『王陽明全集』第17卷『別錄九·公移二』, 浙江古籍出版社, 2010年, 635~640쪽.

23) 光緒『婺源沱川餘氏宗譜』卷四〇『禮俗·鄕約·約儀』.



〈그림〉 隆慶, 『文堂陳氏鄕約』『會議·文堂鄕約家會圖』

위 그림[24]에서 알 수 있듯이, 진씨 종족은 향약에 참여한 자들을 배치할 때 '향로(鄕老) 가운데 연장자'를 가장 앞줄에 세우고, 연장자는 그 뒤에, 연소자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두 줄로 늘어선 약중(約衆)의 대오는 향안(香案) 양측에서 서로 대칭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선강(宣講)이 끝난 뒤 퇴장 의식에서도 "예를 마치면 연장자가 먼저 나가고, 차례대로 서로 이어져 물고기를 엮은 것처럼 줄지어 퇴장한다(禮畢, 長者出, 以次相繼, 魚貫而出)"[25]고 배치하고 있다. 곧 약소(約所)를 빠져나가는 순서 역시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진씨 회의에서는 이처럼 종족 내의 장유 질서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례 자체는 본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대표하는 문화적 함의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향약 의례에서 연장자를 존숭하는 것은, 향약이 종족의 위계 관계를 흡수하였음을 보여주는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자 중심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관청이 의례에 참여할 경우, 약의는 다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휘주의 향약 종족화는 성유(聖諭)를 선강하는 약의(約儀)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향약 내부 구성원에 대한 관리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구성원에 대한 상벌 수단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 부분 역시 약의의 범주에 속한다. 휘주에서 약중(約衆)을 상주고 벌할 때 비교적 일반적으로 활용하던 방식은 '서부(書簿)'였다. '서부'란 특정 행위에 대한 일종의 포괄적 명칭으로, 휘주에서는 약정(約正)과 약부(約副)가 표창할 만한 약중과 처벌이 필요한 약중의 이름을 각각 기능이 다른 두 종류의 명부에 기록함으로써 권선징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휘주 향약의 약의 속에서 자주 보인다.

> ……약강(約講)이 율문(律文)을 나누어 읽고, 낭독이 끝나면 약강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약찬(約贊)이 강안(講案)을 거두게 하면, 윤번을 맡은 갑장(甲長)이 강안을 치운다. 이어 약사(約史)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본현의 부모관(父母官)께서 상사의 명문(明文)을

24) 隆慶『(祁門)文堂陳氏鄕約』.
25) 隆慶『(祁門)文堂陳氏鄕約·會儀』.

받들어 향약 정사를 시행하면서, 창선부(彰善簿)와 기과부(紀過簿)를 내려보내셨다. 향약 내부에 근래 선행으로 기록할 일이 있으면 공정하게 추천하고, 불선한 일이 있어 기록해야 할 경우 역시 공정하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한다. 약사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 약정(約正)과 약부(約副)가 자리에서 말하기를, "향약 안에 진실로 선한 일이 있다면 공적으로 추천하라"고 한다. 약중이 "과연 좋다"고 하면, 약사가 갑장에게 명하여 책상을 가져오게 한 뒤 여러 사람 앞에서 곧바로 창선부에 기록하고, 추천자의 성명도 함께 적어 대조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추천할 만한 선행이 없거나 추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잠시 기록을 보류한다. 이어 약정과 약부가 말하기를, "향약 안에 진실로 불선한 일이 있다면 공적으로 보고하라"고 한다. 약중 가운데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 북쪽을 향해 서서 "아무개가 최근 어떠한 불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기록하여 경계로 보여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약정과 약부는 여러 사람에게 "어떠한가?"라고 묻고, 약중이 "억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약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곧바로 기과부에 기록하고 보고자의 이름 역시 함께 적어 대조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보고할 만한 악행이 없거나 보고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잠시 기록을 보류한다. 초범이고 작은 잘못의 경우 경계하고 꾸짖어 새롭게 고치게 하며, 고치지 않을 경우 명부에 기록한다. 두 종류의 명부는 약정과 약부가 신중히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다른 곳에 맡겨 유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約講分讀律, 讀畢, 約講復班. 贊唱撤講案, 輪直甲長撤案. 約史出班, 言曰 : "本縣父母奉上司明文, 舉行約政, 發有彰善簿、紀過簿, 約內近日有善應書 , 從公指舉; 有不善應書, 亦從公指報." 約史復班. 約正副在班言曰: "約內有真善事, 可公舉來." 眾曰: "果好." 約史屬甲長, 取案對眾, 直書於彰善簿, 並書所舉姓名備核. 如未有善可舉, 或舉者未確, 暫住書. 約正副言曰 : "約內有真不善事, 可公報來." 眾有報者, 出班北向立, 言曰"某近日行某事不善, 應書示戒." 約正副咨於眾曰: "如何？" 眾曰 : "不枉." 約史對眾直書於紀過簿, 並書所報姓名備核. 如未有不善可報, 或報者未確, 暫住書. 其初犯小過, 戒責更新, 不改書簿. 二簿約正副謹藏, 不得他寄, 以防遺失).[26]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향약 내부에서 선악 행위에 대한 상벌은 고정된 의례 절차를 따랐다. 선행자와 악행자 모두 종족 구성원들에 의해 추천되거나 지목되었고, 그 이름이 확정된 뒤 명부에 등록되었다. 또한 과오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역시 점층적인 과정을 거쳤다. 나아가 '서부'에 사용되는 명부 자체도 권위를 지닌 물건으로 여겨졌기에, 약정(約正)과 약부(約副)가 이를 "신중히 보관"해야 했으며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됐다. "휘주의 종족은 제사·족보·사당·패방(牌坊) 등을 통해 족인(族人)의 집단 기억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족 사회의 통치와 사회 질서를 강화하였다"[27]는 지적처럼, '서부'도 실제로는 종족 내부에서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이는 향약 약의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약정과 약부는 '서부'라는 완결된 의식을 통해 상벌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고, 이를 약중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휘주 종족이 제사 등의 수단을 통해 종족 구성원을 관리하던 논리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문당진씨향약』에서는 이러한 처벌의 성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치지 않으면 기악부(紀惡簿)에 기록하고, 살아 있을 때는 입회하지 못하게 하며, 죽은 뒤

26) 光緒『婺源沱川餘氏宗譜』卷四〇『禮俗·鄉約·約儀』.

27) 張金俊,『宗族組織在鄉村社會控制中的運作邏輯——以清代徽州宗族社會爲中心的考察』,『江西社會科學』, 2011년 제2기, 151~154쪽.

에는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不悛 , 即書於紀惡簿 , 生則不許入會 , 死則不許入祠)"[28]고 규정하고 있다. 회(會)와 사당[祠]은 모두 종족 내부의 제사와 관련된 공간이었다. 이는 처벌 대상자에게 사당 출입과 회 참여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종족의 집단 기억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매우 중대한 처벌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향약 내부에서 종족의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휘주의 특수한 상벌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명대 중·후기에 이르러 이 지역의 향약은 약중에 대한 상벌 형식에서 사실상 종족 내의 상벌 방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양자의 핵심 논리는 일치하는데, 즉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원을 구속하거나 장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휘주의 향약 제도가 구성원을 통제하던 종족의 방식을 흡수한 결과이며, 동시에 향약이 현지화된 후에 나타난 일종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휘주 향약의 종족화와 향촌 질서

청대의 향약 제도는 명대의 제도를 계승하는 한편, 명대 향약을 더욱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명청 시기의 향약 제도를 점차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완비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향약은 명대 중기 이후 느슨해져 가던 보갑제(保甲制)와 결합하였고, 점차 지역을 위수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책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치적 성격은 약화되었고, 대신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29] 이 시기에는 조세 완납의 임무 역시 이러한 제도화된 향약 조직으로 이전되었다. 청초에 이르러 『성유십육조(聖諭十六條)』가 성유 선강의 범주 안으로 편입되면서, (향약) 텍스트 내부에도 보갑 운영과 조세 완납이 정식적인 향약의 책임으로 명시되었다. 다시 말해, 향약 제도가 이갑(里甲) 편제와 조세 납부 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기층 향촌 사회의 질서를 통제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휘주에서는 종족화된 향약이 이러한 기층 향촌 질서의 구축 과정에 깊이 참여하였다.

특히 같은 성씨가 집거하는 촌락에서는 향촌 질서 속에 반영된 향약의 종족화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약정(約正)과 약부(約副)는 혈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형성된 위계질서를 활용해 촌락을 관리하였고, 그 결과 향촌 질서 역시 종족 내부의 혈연 위계질서와 유사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종족의 혈연 위계질서는 왕왕 구성원 연령의 장유(長幼)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장자는 더 가까운 혈연관계와 더 높은 위계를 상징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기문(祁門)의 『문당진씨향약(文堂陳氏鄉約)』에 나타난 향촌 질서 조직 관련 조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각 호(戶)는 호장(戶長)을 정하여 회종(會宗)으로 삼고, 각 호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그런데 회종 가운데는 나이가 많아 일을 맡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나이가 비교적 많고 행실과 품행이 단정한 자를 약정(約正)으로 삼고, 그다음으로 장년의 현능(賢能)한 자를 약부(約副)로 삼아 함께 상황에 따라 일을 의논하게 한다. 약정과 약부는 이미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이상, 비록 관직의 존귀함은 없으나 사람들을 통솔해야 할 책임이 있다(各戶定

28) 隆慶『(祁門)文堂陳氏鄉約』.

29) 解揚,『明代鄉約制度化進程』,『歷史研究』, 2024년 제7기, 55~75쪽.

> 戶長以爲會宗, 以主各戶事. 玆或會宗多有年高難任事者, 擇年稍長, 有行檢者爲約正, 又次年壯賢能者爲約副, 相與權宜議事. 在約正副, 既爲衆所推擧, 則雖無一命之尊, 而有帥人之責).[30]

문당 진씨는 본 촌락의 관리 방식에서 분명 종족의 혈연관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즉 호장을 회종으로 삼아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회종 가운데 나이가 많아 일을 맡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회종 선출 과정에서 연령과 장유가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회종은 곧 약정 선출의 우선 대상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회종이 고령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는 약정과 약부의 선출에서도 역시 연령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자가 약정이 되고, 나이가 더 적은 자는 약부까지 될 수 있었다. 약정과 약부는 약중(約衆)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 즉 이른바 "솔인(帥人)의 책임[責]"을 부담하였다. 이를 통해 문당 진씨와 같은 동성 집거 촌락에서는 향약의 종족화로 인해 향촌 사회 질서가 종족 내부의 위계질서와 점차 일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족에서 관리 계층에 속하는 연장자들이 촌락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휘주의 도갑(圖甲)은 반드시 하나의 성씨만이 집거하는 형태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여러 성씨가 하나의 도갑 안에 집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족 세력의 차이에 따라 대성(大姓)과 소성(小姓)이 구분되었다. 휘주에서는 종족이 지방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청 시기 휘주의 일부 지역에서 이미 '약족(約族)'이라는 체제가 출현하였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종족과 향약이 결합하여 새로운 향촌 분쟁 조정 방식이 형성되었다.[31] 따라서 대성·소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향약은 갈등을 조정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의 향약은 이미 종족이 구성원을 관리하던 방식을 흡수하였기 때문에, 여러 성씨가 혼거하는 촌락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성씨 종족을 단위로 향약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다시 각 종족이 자기 종족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성(多姓) 혼거 촌락에서 나타난 향약 종족화의 향촌 질서 표현이다.

『입청원출효기약서기(入淸源出曉起約敍記)』 및 관련 자료는 바로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글은 호씨(胡氏) 종족의 호현양(胡佽讓)이 본래 속해 있던 효기약(曉起約) 내부에서 배척을 당한 이후,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 먹으로 적은 기록이 잊히고 구전 또한 사실과 달라져, 모두 승도(升圖)와 입약(立約)의 대의를 알지 못한다(至今歲遠年深, 墨跡遺忘, 口傳失真, 皆莫知升圖立約之大義)"[32]고 우려하며 작성한 것이다. 이 글에는 출약(出約)과 입약(入約)의 원인 및 경과가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 호씨가 효기약에서 배제된 일 역시, 실제로는 하촌(下村)의 왕씨(汪氏)가 본 도갑 약조 안으로 편입된 이후 기존 향촌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왕씨는 원래 "오직 이갑(二甲) 내에서만 예전부터 약정을 선출해 왔는데, 강공전(江公展)이 왕씨가 본래 이 도갑 약조의 공동 주체가 아니므로 영원히 약정이 될 수 없다고 조롱하였다. 이 한마디 때문에 두 집안이 소송을 벌이며 약정 자격을 다투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끌어왔다. 이후 약중이 묵약(墨約)을 세워 사갑(四甲)이 차례로 돌아가며 맡도록 정하였다(惟二甲內, 向來擧其約正, 因江公展嘲其原非本圖約共主, 永不得爲約正. 因此一言, 兩家搆訟, 爭競約正. 仍是因循, 亦未曾審結. 其後約眾立墨, 照依四甲輪充)"[33]고 한다. 이 시기 왕씨는 외부에서

30) 隆慶『(祁門)文堂陳氏鄉約』.

31) 劉永華,『約族：清代徽州婺源的一種鄉村糾紛調處體制』,『清華社會科學』, 2020년 제2기, 41~68쪽.

32) 胡佽讓,『四圖約記』,『入清源出曉起約敍記』.

33) 胡佽讓,『四圖約記』,『入清源出曉起約敍記』.

편입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의 강씨(江氏)와 약정 자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서로 소송을 벌였고, 결국 이갑의 약정이 "사갑이 차례로 돌아가며 맡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강공전이 사망하면서 기존 향촌 질서에 변화가 발생했다. 즉 "공전이 죽고 난 뒤 후배들은 승도입약(升圖立約)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였다. 이에 일갑(一甲)의 손석원(孫錫元), 삼갑(三甲)의 강자한(江自漢) 등이 역으로 세력을 보태어 이갑의 왕징(汪徵) 무리를 편들었다. 결국 일·이·삼갑이 연합으로 정문(呈文)을 내고 사갑을 배척하여 따로 하나의 약을 보고하여 더 이상 함께 보갑(保甲)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였다(及至公展物故, 後輩不識升圖立約之本義, 肆欲妄行. 而有一甲孫錫元、三甲江自漢等, 倒戈助焰, 左袒二甲汪徵等. 一二三甲, 聯名出呈, 呈擯四甲, 另報一約, 不與共編保甲)"[34]고 하였다. 이처럼 일·이·삼갑은 서로 연합하여 사갑을 배척하였고, 결국 사갑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존 향약을 떠나 새로운 향약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호씨가 의존하고 있던 기존 향촌 질서는 일·이·삼갑의 연합으로 인해 붕괴되었고, 종래의 이익 역시 침해당했으니, "지금 향약의 일에 있어 원래 효기향약(曉起鄉約)을 함께 세우고 갑을 편성할 때, 우리 집안은 손(孫)·섭(葉)·홍(洪)·호(胡)와 함께 사갑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일·이·삼갑이 의관(衣衿)의 세력을 믿고 우리 호씨의 본래 두 호(戶)의 연조(煙灶)를 나누어 가져가 일·이·삼갑이 분점하고, 우리를 속이고 가혹하게 수탈하려 하고 있다(今有鄉約一事, 原共立曉起鄉約編甲, 本家與孫、葉、洪、胡共編第四甲, 今因一二三甲恃衣衿之勢, 將本家胡姓原編二戶煙灶, 與一二三甲瓜分, 意圖欺剝苛斂)"[35]고 호소하였다. 결국 호씨의 "모든 족인 무리[合族人等]"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능멸을 당할[坐視欺凌] 수 없어 특별히 의논하여 문서를 짓게 되었다[特此議墨]".

이 사건에서 호씨(胡氏) 종족은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었고, 또 이 시기 종족은 향약 참여의 기본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즉 "훗날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가(本家)의 누구 이름으로 고발되든 일괄적으로 대응한다. 각종 공사(公私)의 비용 역시 모두 본족(本族)의 과두(鍋頭)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담하여 특정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지금 의논하여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선대의 뜻을 빛내야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는 일이 적발될 경우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여전히 불효죄로 따진다(倘日後啟訟之時, 無論呈告本家何人名字, 一併出發, 各項公私費用, 俱系照本族鍋頭均敷, 不致累計出身之人. 自今議墨之後, 務要同心竭力, 以光前志, 不得推諉懷私. 如有執拗不遵等情, 查出公罰, 仍以不孝罪論)"[36]고 하였다. '불효'는 본래 종족 내부의 중대 죄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호씨 종족이 이를 활용하여 종족 구성원의 행동을 구속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합쳐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성(多姓) 분쟁이라는 배경 아래에서 종족이 이미 향약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향약 종족화의 특징이 구체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약이 향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할 때, 앞서 언급한 갈등 조정 외에도, 동일한 향약 내부에서 공동으로 금약(禁約)을 반포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형태 역시 존재했다.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기 종족이 이미 향약이 관할하는 기본 단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휘주 문서 가운데에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바로 「입금침업주유언공지하독업묘산금약(立禁侵業主俞彦公支下獨業苗山禁約)」이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34) 胡佐讓, 『四圖約記』, 『入淸源出曉起約敘記』.
35) 胡佐讓, 『本家議墨抄白』, 『入淸源出曉起約敘記』.
36) 胡佐讓, 『本家議墨抄白』, 『入淸源出曉起約敘記』.

다시 금약(禁約)을 세운다. 향약(鄕約) 첨일상(詹一祥)·유영경(俞永慶), 보정(保正) 첨무비(詹懋斐)·유조주(俞兆周), 족중(族衆) 유중선(俞衆璿)·첨무로(詹懋魯) 등. 지금 업주(業主) 유언공(俞彦公) 지파 소유의 묘산(苗山) 한 곳이 토명(土名) 상원당(上園坈)에 위치, 본래부터 삼송(杉松)과 묘목을 관리·양육해 왔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 금약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기에, 무지한 사람들이 산에 들어와 경계를 침범할까 염려된다. 이에 두 약(兩約)과 보(保), 족(族)에 다시 알리고 거듭 금령을 밝힌다. 이전의 일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되, 이후로는 크고 작은 각 호의 남녀 누구든 구실을 만들어 함부로 산에 들어가 훔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산주(山主)가 이를 붙잡아 향약에 알리고 관에 고발하여 처벌하게 하며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 특별히 금약을 세워 알린다.

건륭(乾隆) 3년 9월 25일 금약을 세움.

향약: 첨일상·유영경.

보정: 첨무비·유조주.

족중: 유중선·진민(振民)·진도(振韜), 첨무로·세영(世永)·진(震)·무진(懋珍)·진소(震霄).

(立復申禁約, 鄕約詹一祥、俞永慶, 保正詹懋斐、俞兆周, 族眾俞眾璿、詹懋魯等. 今有業主俞彦公支下獨業苗山一號, 坐落土名上園坈, 里向來掌養杉松苗木, 因年遠日久, 禁約未彰, 誠恐無知人等, 入山侵界, 今復鳴兩約保族 , 再行申禁. 除前不究 , 嗣後凡大小戶男婦人等, 毋得借端入山, 竊取侵犯. 如有等情, 一聽山主捉獲鳴約, 呈官究處 , 決不輕恕. 特立禁約通知.

乾隆三年九月念五日立禁約.

鄕約 詹一祥、俞永慶.

保正 詹懋斐、俞兆周.

族眾 俞眾璿、振民、振韜 , 詹懋魯、世永、震、懋珍、震霄).[37]

이 문서를 통해 볼 때, 이 촌락에서는 첨씨(詹氏)와 유씨(俞氏) 두 종족이 동일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향약과 보정(保正)의 정원 배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양 종족의 세력 역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바로 두 성씨 종족이 향약을 통해 공동으로 금령(禁令)을 반포하고 기존 향촌 질서를 함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 문서는 연합으로 금약(禁約)을 반포하는 방식을 통해 유씨 가운데 유언공(俞彦公) 지파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묘산(苗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문서에서는 "이전의 일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되, 이후로는 크고 작은 각 호의 남녀 누구든 구실을 만들어 함부로 산에 들어가 절취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산주가 이를 붙잡아 향약에 알리고 관에 고발하여 처벌하게 하며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除前不究 , 嗣後凡大小戶男婦人等 , 毋得借端入山 , 竊取侵犯。如有等情 , 一聽山主捉獲鳴約 , 呈官究處 , 決不輕恕)"고 하여 금령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침계(侵界) 문제를 예방하고 유씨 종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문서 말미의 족중(族衆) 서명 부분에서는 유씨와 첨씨 두 성씨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배열되어 있으며, 양 종족 대표가 각각 따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형식 역시 향약 내부에 나타난 종족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분쟁 조정이나 금약(禁約)의 재반포 외에도, 다성(多姓) 집거 지역의 향촌 질서 속에는 각 성씨가 서로

37) 『立禁侵業主俞彦公支下獨業苗山禁約』.

협력하는 국면 역시 존재하였다. 신전도(辛田都)의 주(朱)·이(李)·오(吳) 세 성씨가 도갑 내부의 점묘(點卯)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한 계약 문서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합동약(合同約)을 세운다. 신전도(辛田都)의 주·이·오 삼 성씨 등이 본 도(都) 내부의 공무를 위해 약정을 맺는다. 본 도는 비록 삼패리(三牌里)에 속하나 인가가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공사가 번다하다. 이에 본 도 이십패(廿牌) 등이 모두 모여 의논하였다. 성유(聖諭)를 강명(講明)하고, 관도(串圖)를 의논하여 하나의 도로 합쳐 함께 처리하기로 하였다. 문현(文縣)·무현(武縣) 두 현령에게 품의하여 관도를 허락받았으며, 관의 향약인 주씨와 보장(保長) 이모(李某), 오붕(吳朋), 보장 오엽릉(吳葉凌) 등이 참여하였다. 이후 문·무 두 현의 점묘 및 각종 공무와 관련하여, 내촌(內村)과 외촌(外村)이 서로 일을 미루어 지체할까 염려되므로, 이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약정한다. 이후 관청의 점묘 업무는 당월에는 내촌의 주씨가 담당하고, 다음 달에는 외촌의 이·오 두 성씨가 담당하여 번갈아 맡되, 서로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점묘를 빠뜨리는 일이 있을 경우, 해당 차례 담당자의 책임으로 하며 다음 갑(甲)에 연루시켜서는 안 된다. 또 관부가 본 도에 임하는 경우의 상례적이지 않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내촌은 내촌끼리, 외촌은 외촌끼리 함께 분담하여 처리한다. 통지가 오면 즉시 도착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일이 그르쳐질 우려가 있다.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마땅히 관도(串圖)의 취지를 이해해야 하며, 일을 구실 삼아 부담이 과중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공적인 비용은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이십패의 연공(年公)들이 함께 관에 고발하여 이치를 따지도록 하며, 오직 당번 담당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훗날 근거가 없을까 염려하여, 여러 이장들이 함께 계약을 세워 보관한다.
>
> ……
>
> 강희(康熙) 24년 7월 6일, 신전도 이십패가 함께 계약을 세움.
>
> (立合同約，辛田都朱、李、吳三姓等，爲居里本都公務事。本圖雖三牌里，人煙散處，公事浩繁。今合都廿牌等，齊集酌議。講明聖諭，委議串圖，合爲一都料理。稟具文、武二縣主蒙准串圖，在官鄉約朱、仝李保長李吳朋、保長吳葉凌，日後文武點卯，每凡公事，恐內外兩相耽誤，今邀有眼仝議，約嗣後官中點卯，本月內村朱姓答應，次月外村李吳答應，輪流充當，毋得推諉。如有失卯，仍系彼承值，不得累及下甲。再官府臨都，不常事務，所有使費，內村合內外村合外，眼仝公付料理。信到即至，毋得耽延，免後失事，再值事之人，自當體悉串圖之念，不得借事爲由，似以派多，公使公用。如有梗頑不遵者，廿牌年公同呈官理論，毋得專靠值事之人。恐後無憑，眼仝里長立約存照。
>
> ……
>
> 康熙廿四年七月初六日辛田都廿牌年合仝約).[38]

이 계약 문서를 통해 볼 때, 계약 체결 과정에는 관향약(官鄉約) 주씨(朱氏), 보장(保長) 이씨(李氏), 그리고 보장 오엽릉(吳葉凌) 세 사람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 하나의 성씨 종족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38) 『康熙廿四年辛田都朱李吳三姓輪值公事合同約』, 李睒琅, 『喬溪李氏宗譜』, 개인소장.

있다. 청대에 들어 향약이 제도화되어 기층 관리 체계 속에 편입된 배경에서,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일정한 직무를 맡고 있었지 단순히 종족 내부의 개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향약과 보장으로서 본인들의 종족 구성원을 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종족 전체를 대표했다. 이는 곧 이 향약 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의 기본 단위가 종족이었음을 의미하며, 향촌 질서 속에서 향약의 종족화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증명해 준다.

4. 종족화된 향약과 기층 거버넌스 체계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종족화된 향약이 휘주에서 향촌 사회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층 사회의 자치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부정적이다. 향약 제도가 명청 시기 정부의 기층 거버넌스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가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특히 "이 시기 향촌 사회가 자치를 실현하였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학자들은 기층 향촌의 '자치'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이샤오퉁(費孝通)의 '쌍궤정치설(雙軌政治說)'이다. 그는 지방의 향신(鄉紳)들이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조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향약 제도는 줄곧 관방(官方)에서 기층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활용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적어도 휘주의 경우, 현재 확인되는 문헌 속에서는 관방을 대표하는 권력이 언제나 향약 제도의 결정적 힘으로 존재하였으며, 종족 세력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향약은 편찬 시작부터 이미 종족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휘주의 향약이 철저하게 민간이 편찬하고 운영한 산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 향약 제정 과정에서 관청이 향약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휘주의 향약이 시행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청의 인가에 달려 있었다. 예컨대 여씨(余氏) 향약의 정문(呈文) 말미에는 여씨 향약이 최종적으로 "삼가 조례와 항목을 책자로 만들어 인신(印信)을 청하노니 반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정문을 올립니다. 현주 오부모(吳父母)가 비준하고 시행을 허락하였다(謹將所立條款, 繕寫成冊, 呈乞印信, 給示頒行. 爲此, 具呈須至呈者. 縣主吳父母批: 準行)"[39]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문당진씨향약서(文堂陳氏鄉約敍)』에서도, 부로(父老)들이 모두 향약 내용을 인정한 이후 "이에 읍부 요후(廖侯)에게 청하였고, 요후가 다시 이를 성사시켜 주었다(因以請於邑父母廖侯 , 侯復作成之)"[40]고 밝히고 있다. 종합하자면, 휘주에서 향약의 편정은 '관비민판(官批民辦)'이자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휘주에서 향약 제정 과정의 최종 권력, 곧 시행을 허가할 권한은 여전히 관청이 장악하고 있던 것이다. 관부의 인가가 없다면 향약은 실제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명청 시기 향약 편찬 과정에서 휘주지부(徽州知府) 하동서(何東序)는 향약을 적극 시행한 공으로 인해 『휘주부지(徽州府志)』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향약 시행 과정에서 세운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안향약(新安鄉約)』을 편정한 일이었다. 『신안향약』은 향약의 구체적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9) 光緒『婺源沱川餘氏宗譜』卷四〇『禮俗·鄉約』.
40)『文堂陳氏鄉約敘』, 隆慶『文堂陳氏鄉約』.

> 하나, 향약 모임은 기존의 보갑(保甲)과 성시(城市)의 편제를 따르되, 방리(坊里)가 서로 가까운 곳을 하나의 약(約)으로 삼는다. 향촌에서는 하나의 비(鄙) 혹은 하나의 종족(族)을 하나의 약으로 삼되, 촌락이 작고 인구가 적으면 큰 촌락에 부속시키고, 종족이 작고 인구가 적으면 큰 종족에 부속시켜 함께 하나의 약으로 편성한다. 각각 부류별로 책자를 작성하여 약정(約正)의 통제를 받게 한다(一約會依原編保甲城市, 取坊里相近者爲一約, 鄉村或一鄙、或一族爲一約, 其村小人少, 附大村; 族小人少 , 附大族; 合爲一約. 各類編一冊, 聽約正約束).
>
> 하나, 각 약마다 연령이 높고 덕망이 있으며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는 자 한 사람을 선발하여 약정(約正)으로 삼고, 두 사람을 약부(約副)로 삼는다. 예문(禮文)에 밝은 자 몇 사람을 두어 약찬(約贊)으로 삼고, 도행(道行)과 예의를 담당하여 성유(聖諭)를 설명하게 한다. 또 글 읽는 동자 십여 명을 두어 시가(詩歌)를 노래하게 한다. 그 밖의 사민(士民)은 모두 향약에 참여하여 강설을 듣게 한다. 만약 먼저 벼슬하였던 향신(鄉紳)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로 하여금 향약을 주관하게 한다. 그 향약은 성유훈량방(聖諭訓良榜) 육조(六條)를 강목으로 삼고 각각 항목으로 세분한다. 부모에게 효순하는 항목은 여섯 조목, 연장자를 존경하는 항목은 여섯 조목, 자손을 교훈하는 항목은 다섯 조목, 생업을 안정시키는 항목은 여섯 조목으로 한다. 그 여섯째는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으로, □□□□□ 닭과 돼지 수에 제약을 두고, 의복·상례·궁실에 제약을 둔다(一每約擇年高有德、爲眾所推服者一人 , 爲約正; 二人爲約副, 通知禮文者數人, 爲約贊; 道行禮儀爲司講, 陳說聖諭; 又得讀書童子十餘人, 歌詠詩歌. 其餘士民, 俱赴約聽講. 有先達縉紳家居, 請使主約. 其約以聖諭訓良榜六條爲綱, 各析以目, 孝順父母之目有六; 尊敬長上之目有六, 教訓子孫之目有五, 各安生理之目有六. 其六曰定有限, □□□□□雞豕有數 , 衣喪宮室有制).[41]

이러한 편제의 기본 내용은 만력(萬曆) 2년에 시행된 무원(婺源) 여씨(余氏) 향약과, 융경(隆慶) 6년에 시행된 『문당진씨향약(文堂陳氏鄉約)』에서도 모두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향약 모두 약정(約正)·약부(約副)·약찬(約贊)·약강(約講)에 대한 기록을 갖추고 있으며, 「성유연의(聖諭衍義)」·「권계삼십일칙(勸戒三十一則)」·「성유연(聖諭演)(부록)」 등의 전문 항목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진씨 향약은 일족(一族)이 단독으로 하나의 약을 구성하는 형태였기에, 여씨 향약보다 『신안향약』의 규정과 더 잘 부합하였다. 또한 가시(歌詩)·동생반(童生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더 자세하였다. 물론 양자의 내용이 『신안향약』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두 하동서가 제정한 기준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휘주부 육현(六縣)의 향약 조직 편제가 기본적으로 하동서의 『신안향약』 틀 안에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42] 이는 향약에 대한 관청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약 제도 자체에 자치적인 독립성이 결여되었음 보여준다.

약의(約儀) 속에서도 관방의 특수한 지위는 드러난다. 종족화된 향약은 장유(長幼) 간 존비 관계를 강조하며 연장자를 존대하지만, 관청의 여기에서도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적어도 여씨(余氏) 향약의 경우를 보면, 현주(縣主) 등 지방 관원이 향약의 선강(宣講) 의식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절

41) 何東序, 嘉靖『徽州府志』.

42) 卞利,『經營鄉約：明末清初的鄉約實踐——以徽州爲例』,『甘肅社會科學』, 2023년 제6기, 48~60쪽.

차가 마련되었다.

하나, 읍부모관(邑父母官)이 향약에 임하면, 제생(諸生)들은 문밖 몇 걸음까지 나가 맞이하고, 향신(鄕紳)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들어간다. …… 읍부모관은 동쪽에, 향신은 서쪽에 자리하며,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차례대로 동서 양편에 늘어선다. …… 각 집사들 역시 모두 평소와 같이 하되, 일이 끝나면 간단한 식사를 마련하고 향신이 배석한다. 식사가 끝나면 읍하고 작별하며, 향신은 문밖까지 배웅하고 평소 의례대로 가마에 오를 것을 청한다. 제생들은 몸을 굽혀 전송하고, 약정과 약부 등은 조금 더 먼 곳까지 배웅하는데, 모두 평소의 의례대로 한다(一邑父母臨約, 諸生出門外數步相迎, 鄕紳侯於門首, 陪入門……邑父母東, 鄕紳西, 諸人以次列東西班……及各執事俱如常, 事完, 辦一小飯, 鄕紳陪飯. 飯畢, 揖別, 鄕紳送出門, 請登轎如常儀, 諸生鞠躬送, 約正副等稍遠送, 俱如常儀).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자리 배치를 보면, 관청을 대표하는 읍부모관은 동쪽의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향신이 함께 입장하고 식사에 배석하며, 제생들이 서로 영송하고, 약정과 약부가 더 먼 곳까지 배웅하는 등의 특별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는 약의에서 관청의 지위가 종족보다 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관방의 권력은 또한 종족의 가법(家法)이 향약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동원되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여씨(余氏) 향약의 규정 가운데 "약사(約史)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본현의 부모관(父母官)께서 상사의 명문(明文)을 받들어 향약의 정사를 시행하면서 창선부(彰善簿)와 기과부(紀過簿)를 내려보내셨다. 향약 내부에 최근 선행으로 기록할 만한 일이 있으면 공정하게 추천하고, 불선한 일이 있어 기록해야 할 경우 역시 공정하게 보고하라'고 하고, 약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約史出班, 言曰: "本縣父母奉上司明文, 舉行約政, 發有彰善簿、紀過簿, 約內近日有善應書, 從公指舉; 有不善應書, 亦從公指報." 約史復班.)"[43]는 구절을 보면, '서부(書簿)'의 권력 근원이 여전히 관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서부'와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 상벌 방식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상 종족이 종족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최종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자연스럽게 관청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휘주 향약에서도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 "하나, 각 향약은 창선부와 기악부(紀惡簿) 두 종류의 명부를 마련하고, 모임 날에 함께 상의하여 확정한다. 선행이 있는 자는 즉시 기록하여 올리고, 과실이 있는 자는 처음 모임에서는 우선 관용을 베풀되,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기록한다. 만약 완고함을 믿고 법에 대항하거나, 모임 자리에서 흉포하게 굴며 약속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성유(聖諭)를 업신여기고 선을 막으며 악을 돕는 행위로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명부에 기록하여 그 악행을 남긴다. 만약 그래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요후(廖侯)의 비유(批諭)에 따라 가장이 (관청에) 보내 추궁받게 한다(一約所立紀善、紀惡簿二扇，會日公同商確。有善者即時登紀，有過者初會姑容，以後仍不悛者，書之。若有恃頑抗法，當會逞凶，不遵約束者，即是侮慢聖諭，沮善濟惡，莫此爲甚，登時書簿以紀其惡，如更不服，遵廖侯批諭，家長送究)."[44] 진씨(陳氏) 향약을 보면, 악행자에 대한 처벌이 단계적임을 알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서부'를 통해서도 약속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관청의 권력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관방 권력이 종족 권력보다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3) 光緒『婺源沱川餘氏宗譜』卷四〇『禮俗·鄕約』『約儀』.

44) 隆慶『(祁門)文堂陳氏鄕約』.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향약이 대표하는 관방 권력은 종족의 보장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여러 종족이 함께하는 향약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점은『입청원출효기약(入淸源出曉起約)』과『입금침업주유언공지하독업묘산금약(立禁侵業主俞彦公支下獨業苗山禁約)』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입청원출효기약』에서 호씨(胡氏) 가족이 기존 향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향약과 보갑(保甲) 체계에 편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청의 지원이 있었는데,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근래 보건대 너희 무원(婺源) 백성들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곧바로 현에 호소하고 있다. 본현은 매번 향약과 보장(保長)에게 명하여 이를 명확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향약과 보장은 끝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모두 각 촌락이 스스로 하나의 향(鄕)을 이루고 스스로 하나의 보(保)를 칭하면서, 명목상으로는 공적인 보고라고 하나 실제로는 사적으로 선출된 데에 있다. 그리하여 매번 인정에 치우쳐 폐단을 숨기고, 외부인을 차별하며 먼 곳 사람들을 억압하니, 그 해악을 이루 다 셀 수 없다. 이제 본현은 별도로 보갑을 다시 편성하니 반드시 규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열 집을 하나의 갑(甲)으로 삼고, 열 갑을 하나의 보로 삼으며, 열 보를 하나의 향으로 삼는다. 약장(約長)은 공적으로 보갑을 추천하고, 갑장은 이를 편성하여 등록한다. 흩어져 거주하는 자들도 반드시 인접한 두 이웃에 편입시켜야 하며, 각 갑과 각 보는 모두 빠짐없이 편성해야 하니 한 집도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조사하여 규정대로 되지 않은 곳이 적발된다면, 생들이 이미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라도, 스스로 편의를 도모하여 나의 법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를 알고, 온 고을 사람들도 이를 함께 알라(近見爾婺民纖微細事，輒訴縣控，本縣每批約保理明，約保竟不爲理明，揆厥既由，皆系每村自聯一鄉，自號一保，名雖公報，實則私舉，每每徇情匿弊，欺異啖遠，其害不可枚數. 今本縣另編保甲，必要昭例而行，十家爲一甲，十甲爲一保，十保爲一鄉，約長公舉保甲，甲長編着；當之零星居住者，必要附在兩鄰；每甲每保，均挨編定，不許缺少一戶；查出未便，生等既言不行，不得自相取便，亂我成規. 爾等知之，通邑之人咸共知之).[45]

이는 당시 일·이·삼갑(一二三甲)이 연합하여 올린 정사(呈詞)에 대해 현지의 현장(縣長)이 비답한 것을 필사한 것이다. 이 기록에서는 당시 각 촌락의 보갑 운영이 실제로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은 과거 이 지역의 향약과 보갑이 혼란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보갑 체계를 다시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호씨는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효기약(曉起約)에서 이탈해 청원약(淸源約)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관방 권력의 보장 아래에서만 보갑의 재편이 가능하며, 호씨 종족의 이익 역시 관방 권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입금침업주유언공지하독업묘산금약」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문서에는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산주(山主)가 이를 붙잡아 향약에 알리고 관에 고발하여 처벌하게 하며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如有等情, 一聽山主捉獲鳴約, 呈官究處, 決不輕恕)"고 하였다. 즉 관방의 권력을 통해 유언공(俞彦公) 지파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묘산(苗山)의 재산권을 명확히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씨(俞氏) 종족의 이익을 보호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휘주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완량(完糧) 등 향약이 부담해야 했던 기층 업무는

45) 胡佽讓,『發批呈抄錄』,『入淸源出曉起約敘記』。

이 시기에 이르러 어떤 의미에서 관청이 약정(約正)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만약 약정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늦어도 만력(萬曆) 중후기에 이르면, 향약은 이미 정부의 기한부 조사와 성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미 향약이 발달하였던 동남 지역에서는 향약이 기층 거버넌스 체계 속에 편입되는 특징을 보였고, 지방 제도적 성격까지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숙정십사년사월기문현후담향약배년왕덕창등입청약수관공무합동문서(明崇禎十四年四月祁門縣侯潭鄉約排年汪德彰等立清約輪管公務合同文書)」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 후담향(侯潭鄉)의 향약(鄉約)에서 순번에 따라 공무(公务)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해 올립니다. 본 향약에서 약정(約正)인 왕종청(汪鍾清)이 관리하던 원래의 장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중의 불만을 샀고, 이에 숭정(崇祯) 4년부터 현(縣)에 고발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으나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현주(縣主)이신 변(邊) 나으리를 받들게 되었는데, 마침 흉년을 맞아 향약의 장부와 구휼 상황을 조사하시게 되면서, 이 일이 다시 공정(公庭)에서 송사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12배년(排年)이 장부를 명백히 청산해 보니, 작년과 올해 송사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아 있는 은(銀)은 온전하게 10냥입니다. …… 그 약정(約正)이라는 관직의 명목은 그 책임(干系)이 매우 무거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독점하여 임무를 맡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중이 논의하여 왕량흥(汪良興)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받기로 하였으며, 3개 탄(疃, 마을)이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무릇 부역을 맡거나, 관청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 향약을 강론하는 일, 선과 악을 조사하여 보고(举报)하는 등의 일은 곧 해당 순번에 걸린 본 실무자 4인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처리하도록 합니다.(侯潭鄉約呈排爲清約輪管公務事. 本約內因約正汪鍾清經管原領賬目未明, 致眾拋, 於崇禎四年, 訐告至今, 未得清妥. 今奉縣主邊爺, 因歲凶, 查約賬飢, 致又復訟公庭. 十二排年稟明清算, 除上年並今歲訟中支費外, 實在見銀一十兩整 …… 其約正應官名目, 干係甚重, 力難獨任, 眾議串作汪良興承, 議以三疃拈鬮爲定, 凡遇應役, 並迎送官府, 講約, 舉報善惡等事, 即系本實經管四人承任).[46]

후담향약(侯潭鄉約)의 문서를 통해, 향약의 장부가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현주(縣主)에 의해 조사된다는 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향약의 제도화로 인해 이 시기 약정(約正)은 이미 기층 거버넌스 체계의 일환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약정직을 맡을 수 없었고, 약중(約眾)이 그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을 다시 찾아야 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휘주에서 향약은 줄곧 관청이 기층 거버넌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수단에 불과하다. 종족화(宗族化)는 향약이 휘주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지의 영향력 있는 종족 세력과 결합하여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었는데, 이는 지에양(解揚)이 제기한 '다양일체(多樣一體)' 모델과도 부합한다. 비록 지방에서는 각지의 상황별 차이로 인해 중앙의 정책이 서로 다른 현지화 특성을 보였고 실정에 맞게 변화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중앙의 정책에 서비스하는 것이었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47] 휘주 지역의 종족

46)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編,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藏徽州文書類編·散件文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7年版, 269쪽.
47) 解揚, 『皇權到底下不下縣？』, 『歷史評論』, 2022년 제5기, 79~83쪽.

화된 향약은 다양성의 한 발현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일체(一體)'에 봉사하며 중앙의 통제를 따랐다.

5. 결론

향약은 명청 시기 중요한 기층 거버넌스 수단으로서, 그 시행 과정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형세를 이용하고 지역 상황에 적응하며 현지화된 특징을 드러냈다. 전통 시기 휘주 사회에서는 종족이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향약과 종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합하였는데, 이러한 결합은 구체적으로 향약의 종족화로 나타났다. 향약의 종족화는 단지 표면적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향약의 편찬부터 향약 텍스트, 나아가 약의(約儀)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휘주 향약은 곳곳에서 종족화의 특징을 드러냈다. 아울러 명청 시기 향약은 보갑제(保甲制)와 결합하면서 점차 제도화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향촌 질서의 구축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종족은 점차 향약의 관할 단위가 되었으며, 기존의 호(戶)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역시 향약 종족화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약의 종족화가 곧 종족 사신(士紳)들에 의해 향약이 백성을 통치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기층 자치를 실현하였다는 의미도 아니다. 사실상 향약은 여전히 관청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휘주의 향약은 편정 과정에서 줄곧 "관비민판(官批民辦)"의 모델을 유지하였으며, 『신안향약(新安鄉約)』의 반포 역시 향약의 편정이 관방이 설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했다. 또한 약의(約儀) 속에서 관방이 누린 특별한 의식들은 관방 권력이 종족보다 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방 권력은 동시에 최종적인 징계 권력의 보장 역할도 수행하였다. 여기에 더해 완량납세(完糧納稅) 등 각종 평가 체계는 약정(約正)을 공식적인 기층 거버넌스 체계 속에 편입시켰다. 이상의 여러 사실들은 모두 휘주 향약의 운용 과정에서 관청의 권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으며, 줄곧 종족 권력 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종족화된 향약은 실제로는 중앙집권 체제가 휘주 지역에서 드러난 하나의 특수한 형태이자, 관방이 기층 사회를 관리하는 통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종족과 향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종족은 향약을 매개로 점차 조직화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향약은 종족이 자신들의 집거 지역에서 지니고 있던 영향력을 빌려 민중을 구속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향약을 통해 기층 사회에 대한 통제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중국 향약사 연구는 단순히 일반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각 지역의 민간 문헌과 함께 향약이 지역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또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향약 운영의 실제 논리와 구조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향약(소오키테, 무라오키테)’과 항왜의 향약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 美信)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nagamori@sta.tenri-u.ac.jp

1. 미리말
2. 중세 일본의 소손(惣村)과 소오키테(惣掟)
3. 근세 일본의 무라(村)와 무라오키테(村掟)
4. 맺음말을 대신하여——항왜(降倭)의 향약과의 비교

1. 머리말

일본 중·근세의 촌락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할 목적으로 소오키테(惣掟)·무라오키테(村掟)라고 불리는 규정이 작성되었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의 향약(鄕約)에 대응하는 규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세에는 사다메(定), 오키부미(置文), 오키메(置目), 근세에는 지게오키테(地下掟), 무라기조(村議定), 무라모시아와세(村申合), 무라키테이(村規定), 무라기메(村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중세 소손(惣村)에서 작성된 것을 ‘소오키테’, 근세 촌락에서 작성된 것을 ‘무라오키테’로 통칭한다.

중세(15~16세기)의 소오키테는 소손(惣村) 혹은 소(惣)라고 불리는 촌락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외부의 지배나 침략에 저항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촌락 구성원들이 연명으로 서명(連判)하는 등 상호 규제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에 비해 근세(16~19세기)의 무라오키테는 주로 촌락 내부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촌락 구성원이 연명하여 무라야쿠닌(村役人; 마을 임원)에게 제출하는 증서[證文]적 성격을 지닌 것도 많다. 에도(江戶) 시대의 무라오키테는 다수 현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방면에 걸치는데, 특히 수리권[水利權]에 관한 것처럼 일상적인 생산이나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한 것이 많다. 이러한 무라오키테 중에는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정한 것이나, 일상적인 교류를 끊는 ‘무라하치부(村八分)’ 처분을 규정한 것도 있다.

나아가 에도 시대 후기에 이르면 검약, 도박(博奕), 도둑, 방화 등 풍속 단속이나 넨구(年貢; 전세) 납부 기한 엄수 등 촌락 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 많아진다. 에도 시대 말기에는 도덕적 훈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나타난다.

조선의 향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무라오키테 역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양자는 내용적인 공통점을 지님과 동시에 차이점도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중·근세 촌락 공동체의 양상을 개관하고, 소오키테와 무라오키테의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임진전쟁[壬辰戰爭] 이후 조선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일본 장병, 즉 항왜[降倭]가 만든 향약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향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오키테·무라오키테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필자는 일본의 소오키테·무라오키테의 전문가가 아니다. 본 발표는 일본 중·근세 촌락 공동체에 관한 방대한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그 일부분을 소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 중세 일본의 소손(惣村)과 소오키테(惣掟)

중세의 농촌——슈고(守護) 영국제[領國制]와 소손(惣村)・소(惣)의 형성

14세기 후반, 아시카가씨(足利氏)의 무가 정권(막부[幕府]) 하에서 일본의 농촌은 슈고다이묘(守護大名) 통제 아래에 있는 영주(장원영주[莊園領主]나 고쿠진(國人) 등의 무사)의 지배를 받았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란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영주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를 '소손(惣村)' 혹은 '소(惣)'라고 부른다.

소손은 자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소손에서는 사타닌(沙汰人), 오토나(乙名)라고 불리는 지자무라이(地侍) 출신의 지도자를 선출하였으며, 경찰·재판 등도 스스로 집행하고 무력도 갖추고 있었다. 소손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단하는 절차(검단[檢斷])를 행하는 것을 '지켄단(自檢斷)'이라고 했다. 처벌은 처형과 추방형의 두 종류였다.

소손의 구성원인 소햐쿠쇼(惣百姓; 마을 백성)들은 소손을 유지하기 위해 요리아이(寄合; 모임)를 열어 소오키테(惣掟; 규약)를 정하였고, 재산으로서 이리아이치(入會地; 공유지. 소유지(惣有地)라고도 함.)를 소유했다. 또한 영주와 교섭하여 책임을 지고 넨구(年貢; 전세)를 도맡아 납부하는 제도(햐쿠쇼우케(百姓請)·지게우케(地下請))를 실현시켰으며, 전세의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주(장원 영주나 고쿠진)가 슈고다이묘의 힘에 의존하자, 슈고다이묘는 장원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슈고다이묘는 무력으로 영주로부터 장원을 빼앗아 그것을 고쿠진에게 나누어 주며 가신화(家臣化)를 추진했다. 슈고다이묘는 한 '구니(國)' 안을 영국[領國]으로 삼아 지배를 강화하고, 소손에 대해서도 토지별로 단센(段錢; 주로 논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 사람별로 부야쿠(夫役; 노동・과역)를 부과해 나갔다. (슈고 영국제[守護領國制])

중세의 소오키테(惣掟)

15세기, 각지의 슈고 다이묘나 그 부하로 있던 무사 세력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서, 영주가 일정한 자치를 행하던 소(惣)의 백성들로부터 토지와 가재도구를 몰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소손 내부에서도 마을 전체의 의사라는 명목 하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함부로 처형하거나 추방형에 처하는 등의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소손에서 처형되거나 추방된 백성의 토지와 가재도구를 영주가 몰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마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집행하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1461년(寬正 2년), 오미국(近江國) 이카군(伊香郡) 스가우라(菅浦; 현 시가현 나가하마시)의 소오키테에는 소손이 마을 내의 백성을 함부로 처형하거나 이유 없이 추방형에 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문이 보인다.[1]

---

1) 소쇼(惣庄)의 힘을 빌려 사람을 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금한다. (寬正2年「菅浦惣庄置文」) 藤木久志, 2010, 18쪽.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449년(寶德 원년) 시나노(信濃) 북부(현 나가노현 나카노시)에서도 영주가 영내의 백성에게 폭행을 가해 가재도구를 빼앗거나, 빚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소(惣)를 떠난 백성의 토지와 가택, 가재도구를 영주가 몰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2] 1492년(明應 원년), 오미국 이카군 오쿠시마(奥島)의 소오키테에는 추방형에 처해진 백성의 가산을 소(惣)의 소유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3]

그러한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1483년(文明 15년) 스가우라에서 제정된 소오키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료 1】1483년『지게오키부미(地下置文)』[4]

- 마을에서 마을 사람이 근거 없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형되거나 추방당했을 경우, 그 유산은 지금까지처럼 마을에서 몰수하지 않고 처벌을 받은 자의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마을에 있어 참으로 타당하고 바라는(바람직한) 일이다.
- 또한, 마을의 승려가 비행을 저질러 죄를 추궁받고 추방형에 처해졌을 경우, 남겨진 사찰 영지(寺領)나 불물[佛物] 등은 그대로 (마을에서) 보전한다.
- 이러한 마을의 규약(오키부미)은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무거운 형벌의 집행이 눈에 거슬려 불쌍히 여겨지므로, 거듭 마을 전체의 약속으로서 이 규칙(定; 사다메)을 정하기로 한다.
- 만약 이 결정을 어기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마을에서 그 자를 추방형(죄과)에 처한다.

이 시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처형되거나 추방형을 받으면 그 가옥과 가재도구, 토지가 모두 마을로 몰수되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이에(家; 집)'가 대가 끊겨 단절되어 버리면, 그 '이에'가 담당하던 논밭의 경작 및 납세 등의 의무가 마을 전체에 부과되게 되므로, 마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는 죄로서 처벌하되, 죄인의 '이에'는 '이에'로서 보전하여 자손에게 계승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한편, 소손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도(惣堂, 마을 사찰)가 있었다(그중에는 주지가 없는 소도도 있었다). 사찰의 승려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승려는 소(惣)에서 추방되었으나 사찰의 재산은 그대로 소손의 소유로서 유지되었다.

마을을 위해 희생된 자의 재산

'이에(家)'의 계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처형이나 추방이 집행되었을 때뿐만이 아니었다. 농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났으며, 때로는 주민들 가운데서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다. 마을을 위해 희생된 자의 '이에'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마을의 책무였다.

---

2) 도망치거나 도산(逃散)한 백성의 유적(遺蹟; 논밭·가택·가재도구)은 영주(지토[地頭])가 신중히 처분해야 마땅함에도, '그 자가 빚을 지고 도망쳤다'고 핑계를 대며 가재도구와 수확물(家內作物)을 몰수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중략) 영주가 영내의 마을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가산을 몰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寶德元年、信濃 高梨一族의「定置条条」) 藤木久志, 2010, 24~25쪽.

3) 집을 나갔을 때는 집안의 재산을 소쇼(惣庄)에서 거두어들여야 함. (明應元年의「奥島庄置文」) 藤木久志, 2010, 22쪽.

4) 寛正 2년『菅浦惣庄置文』(藤木久志, 2010, 21~22쪽.)

1589년(天正 17년), 오미국(近江國) 아자이군(淺井郡, 현 시가현 나가하마시 고호쿠초)에서는 서로 이웃한 나카노(中野)마을, 아오나(青名)마을, 요카이치(八日市)마을 등 세 마을 사이에 물난리(수리 분쟁)가 일어나 폭력 사태로 발전되었다. 이 분쟁은 영주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이자 누나의 아들)의 법정에서 나카노마을의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약 2년 전에 히데요시가 발령했던 '겐카초지레이(喧嘩停止令, 싸움 금지령)'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 마을의 소다이(惣代; 대표자)가 한 명씩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나카노마을에서 대표로 뽑힌 인물이 바로 세이스케(清介)라는 자였다.

세이스케는 마을을 위해 희생양이 될 것을 승낙하는 대신 마을 측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마을은 이를 수용했다. 첫째는 세이스케의 후계를 (어린) 딸에게 잇게 할 것, 둘째는 세이스케 부녀가 살던 가택과 농지를 딸에게 상속시킬 것, 셋째는 소손(마을 공동체)이 그 딸을 양육할 것이었다.[5]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을은 '이에'의 영속[永續]을 중시하여 개인의 죄와 '이에'의 존속을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세이스케의 사례는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마을에서 사라지게 된 자의 '이에'를 보전하고 계승시키기 위해 마을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공통점이다.

부모가 처형당하든, 추방당하든, 혹은 마을을 위해 희생되든 간에 그 '이에'는 자녀에게 계승되었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친족이나 마을이 양육한 뒤, 성인이 되면 대를 잇게 했다. '이에'의 성립을 보장하는 것이 곧 마을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인을 잃은 '이에'를 보존하기 위해, 그 집의 농지 경작이나 납세 의무를 마을이 연대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을 '소쓰쿠리(惣作)'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소쓰쿠리는 큰 부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 처분을 받았던 자가 마을로 복귀(還住)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경우, 그 집과 가재도구, 농지는 그대로 반환되었다.[6]

전쟁과 마을——소쓰쿠리(惣作)의 거부

16세기, 일본 전역이 전란의 세상이 되자 소손(惣村) 백성들의 삶은 단숨에 불안정해졌다. 마을을 도망치는 백성, 전쟁에 동원되는 백성, 전쟁터에서의 '데카세기(出稼ぎ, 돈벌이)'를 목적으로 마을을 떠나는 백성들이 증가했다. 그렇게 주인을 잃은 논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할 것(소쓰쿠리)이 요구되었다.

분고국(豊後國) 오이타군(大分郡; 현 오이타현 유후시 하사마초)은 오오토모 요시무네(大友義統)가 다스리던 땅이었으나, 임진전쟁 전장에서 도망친 죄로 영지를 몰수당하고 히데요시의 가신인 야마구치 겐반(山口玄蕃)에게 주어졌다. 다음의 【사료 2】는 1593년(文祿 2년)에 야마구치 씨가 영내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사료 2】1593년 분고 오이타군『도모쓰케노 시디이(當毛付けの次第)』[7]

- 고향을 비우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마을 사람들은 본래의 마을로 돌아오라.
- 논밭의 주인이 사라져 황폐해진 농지는 소쓰쿠리(공동 경작)로 삼아 경작하라. 황무지가 있다면 마을의 책임으로 묻겠다.

5) 藤木久志, 2010, 43~46쪽.

6) 스가우라(菅浦)에서 추방 처분을 받았던 겐자부로(源三郎) 부자의 복귀가 1568년(永祿 11년)에 허가되었을 때, 부자의 가옥과 가재도구 중 남아있는 것을 부자에게 인도할 것과 직접 경작하던 논밭을 인도할 것이 마을 내에서 합의되었다. 다만 추방 전에 소작(小作)했던 토지의 권리는 반환되지 않았다. (藤木久志, 2010, 26~27쪽.)

7) 藤木久志, 2010, 31~32쪽.

전란 속에서 마을을 떠나는 백성이 증가하면서 주인이 없는 농지 또한 늘어났다. 영주는 그러한 농지의 소쓰쿠리를 마을에 명령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쓰쿠리는 백성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이에 오미 기타나이키(北内貴)마을(현 시가현 고카시)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제정했다.

【사료 3】1614년 오미 기타나이키 마을『오키테(掟)』[8]

- 우리 모두는 올해 납부해야 할 전세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 마을이 이토록 곤궁함에 처해 있음에도, 주민들 중에는 마을과 가정을 버리고 야반도주(야간 도망)하는 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마을에 남은 우리로서는 그 자들의 논밭 경작을 일절 떠맡지 않도록 하자.
- 또한, 야반도주한 자가 남기고 간 빚이나 빌린 쌀을 갚아야 할 소작분 등이 있더라도, 마을이 그 반환 책임을 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
- 나아가 영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야반도주한 자의 가옥이나 의무와는 일절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도록 하자.
- 이러한 규약들을 서로 결코 어기지 않도록 하자.

중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소오키테(惣掟)를 제정하고 소손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손 내부의 '이에(家)'의 계승을 중시했다. 평상시에는 소쓰쿠리가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능했으나, 전시가 되자 소쓰쿠리의 유지는 곤란해졌다. 사회의 변화에 직면한 소손은 새로운 소오키테를 제정하여, 소손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소쓰쿠리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3. 근세 일본의 마을과 무라오키테(村掟)

막번(幕藩) 영주에 의한 촌락 지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일본을 통일하자, 전국이 도쿠가와 장군가[將軍家](막부[幕府])와 각지의 다이묘(大名; 번[藩]) 하에서 통치되었으며(幕藩體制), 지배계급인 무사[武士]는 조카마치(城下町, 성하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이로써 백성들이 살아가는 농촌과의 분리(병농[兵農] 분리)가 진척되었고, 무사는 농촌에 거주하지 않은 채 무라(村; 마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삼아 지배하였다.[9]

막번[幕藩] 영주는 영내의 겐치(檢地;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장량[丈量](면적)과 농작물의 고쿠다카[石高](수확량)을 결정하고, 가구 수와 인구를 확인하여(이에가즈아라타메(家數改)), 부역을 부담할 혼뱌쿠쇼(本百姓; 백성)를 확정한 뒤 겐치쵸(檢地帳; 토지대장)을 작성했다. 또한 천주교를 금지하기 위

8) 藤木久志, 2010, 34쪽.

9) 1600년 무렵 일본의 인구는 약 1,200만 명 또는 1,400만~1,500만 명이었으며, 18세기 초두에 3,000만 명을 돌파하고, 19세기 후반에는 3,300만 명 정도까지 증가했다. 전국에 약 6만 3천여 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18~19세기 평균적인 마을의 인구는 400명 정도, 농지의 수확량(무라다카(村高))은 400~500고쿠(石)(1고쿠=약 180리터), 경지 면적은 50초(町) 전후(1町=1헥타르)였다고 한다. (渡辺尚志, 2009, 8~9쪽, 15~17쪽). 일설에 농민은 당시 인구의 약 84%를 차지했다고 한다. (北島正元 1959).

해 '슈몬닌베쓰초(宗門人別帳; 사람마다 신앙대상을 기재한 장부)'를 만들어 개인을 관리하고, 각 마을의 사찰에 보관하도록 했다.

근세의 '이에(家)'는 가명(家名)·가업(家業)·가산(家産)의 일체성을 지닌 생산 단위이자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의 가장(호주)은 대대로 같은 이름(가명[家名])을 자칭했다. 가계를 계승할 아들이 어릴 때는 '요묘(幼名; 유명)'으로 불리다가, 가독(집)을 상속하면 아버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했다. 은퇴한 아버지는 '인쿄나(隱居名; 은퇴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혹은 상호나 가문의 명칭인 '야고(屋號)'를 사용하기도 했다. 근세 사회에서도 중요시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에'였다.[10]

무라우케제(村請制)와 마을의 자치

막번 영주는 마을에 나누시(名主, 또는 쇼야(庄屋)·기모이리(肝煎)), 구미가시라(組頭), 햐쿠쇼다이(百姓代) 등의 마을 임원(무라카타 산야쿠(村方三役))을 두어 영주의 명령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전세 납부와 부역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무라우케제(村請制)).

마을 주민들은 인근 5가구를 한 조로 하는 고닌구미(오인조[五人組])로 편성되어 서로 도왔으나, 전세 납부가 지연되거나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는 연대책임을 져야 했다. 또한 주민 상호 간을 감시하게 함으로써 천추교 신자를 단속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고닌구미의 대표를 구미가시라라고 한다.

주민 중에는 논밭과 가택을 소유한 혼뱌쿠쇼(本百姓)와, 타인의 논밭을 빌려 소작으로 생활하는 미즈노미뱌쿠쇼(水呑百姓), 그리고 혼뱌쿠쇼에게 예속된 나고(名子)·히칸(被官) 등의 계층이 존재했다.

주민들은 이리아이치(入會地; 공유지, 공유산림)나 농업용수를 공동으로 이용했으며, 모내기, 벼베기, 지붕 이기, 우물 청소 등을 할 때는 '유이(結; 노동력 교환)'나 '모야이(공유 및 공동 작업)' 등으로 불리는 공동 노동을 수행했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무라하치부(村八分; 집단 따돌림)' 등의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다.

막부는 납세자인 혼뱌쿠쇼를 유지하기 위해, 1643년(寛永 20년)에 '논밭 영대 매매금지령(田畑永代賣買의 禁令)' [11]을, 1673년(延寶 원년)에 '분지제한령[分地制限令]'을 내리는 등 백성들의 농지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해지지 않도록 정책을 펼쳤다(1초부(町歩)를 표준으로 삼음).

막부·영주의 법——고기(公儀)의 법도(法度)

농촌의 백성들은 막번 영주가 제정한 법의 지배를 받았다. 다음의 【사료 4】는 1659년(萬治 2년)에 센다이번(仙臺藩, 미야기현 센다이시)이 오미국(近江國)에 있던 비지령(飛地領, 떨어진 영토)(시가현 히가시오미시)에 시달한 총 9개조의 법령 중 일부이다.

【사료 4】1659년 센다이번의 『법도(法度)』 (일부)[12]

1. 기리시탄(천추교 신자)에 대해 철저히 탐색하고 조사하며, 오인조(五人組)에게 명하여 방심 없이 조사하고, 만약 수상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고발할 것. 또한 고기(公儀; 막부)의 제찰[制札] 취지를 준

10) 渡辺尚志, 2009, 11~12쪽.

11) 1643년(慶應 20년) 간토(関東)의 한 지역에서 발령된 향촌 단속령(지침)인 『도민시오키(土民仕置)』 17개조의 제13조에서 "1. 논밭은 영대(영구히) 매매하지 말 것"이라는 문언이 보인다. 1687년(貞享 4년), 막부로부터 전국을 향해 "전지(농지) 영대매매는 이전에 하교하신 바와 같이 더더욱 엄금할 것"이라는 포고(오후레[お触れ])가 내려진다. (미토번, 기슈번, 가가 마에다번 등 영대매매를 인정한 번도 있었다) (藤井健二, 2013, 83~87쪽)

12) 水本邦彦, 2015, 92~93쪽.

수할 것.

5. 도박(博奕) 및 그 외의 사소한 내기 도박일지라도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
6. 도당[徒黨]을 결성하고 맹세(서약)하는 자는 가장 무거운 죄과로 다스린다. 영내에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고발할 것. 숨겨두었다가 다른 곳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쇼야(庄屋)와 기모이리(肝煎)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8. 이전부터 행해져 온 관행일지라도 다노모시코(賴母子講)를 행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무분별한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할 것.

영주는 천추교를 금지하고 고닌구미(오인조)에게 상호 감시와 탐색을 명하는 한편, 도박이나 다노모시코(賴母子講;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민간 금융 조직)처럼 백성의 생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그리고 영주 권력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도당 결성을 금지했다. 다노모시코가 금지된 이유는, 본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노모시코가 종종 사행성이나 투기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번 영주의 법(公儀의 法度)을 위반한 자는 부교쇼(奉行所, 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엄중한 형벌에 처해졌다(대부분 사형에 처함).

막번 체제 하에서 사회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농민 생활에 대한 막번 영주의 규제는 더욱 세밀해졌다. 1665년(寛文 5년) 고후 도쿠가와번(甲府德川藩) 영지(나가노현 사쿠시)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진 「햐쿠쇼 미모치노 코토(百姓身持之事)」에서는 막부 법령의 준수, 영주에 대한 복종, 마을 임원을 부모처럼 여길 것 등 봉건제 하의 신분·계층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업 경영에 힘쓸 것, 술이나 차의 구입 금지, (쌀이 아니라)잡곡을 주식으로 삼을 것, 차를 마시며 남편을 소홀히 대하는 아내와는 이혼할 것 등 농민 생활에 대한 세세한 규제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세만 잘 납부하면 백성만큼 마음 편한 이가 없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13] 이와 같은 농민 규제는 19세기 중엽 무렵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훗날 이른바『게이안 오후레가키(慶安御触書)』로 알려지게 됨.)

근세의 무라오키테(村掟)

위와 같은 고기(公儀; 막부)의 법과는 별개로, 개별 마을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마을의 규칙(무라오키테)을 제정했다. 이는 중세 '소오키테(惣掟)'의 내용을 계승한 것으로, 개별 마을의 개성에 맞추어 다양한 무라오키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무라야쿠닌(村役人; 마을 임원)의 선출

마을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또한 무라오키테를 통해 규정되어 있었다. 각 영주의 지배 하에서 마을 임원(무라카타 삼역)의 인선은 대체로 마을의 의향에 일임되었다. 선정 방법은 마을마다 달랐는데, 전대[前代]의 토호[土豪]나 지자무라이(地侍) 등의 가문이 세습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마을도 많았다.

1669년(寛文 9년) 오미국(近江國) 고카군(甲賀郡) 기타나이키(北内貴)마을(현 시가현 고카시 미나쿠치초)의 무라오키테에서는 쇼야(庄屋)의 임기를 2년으로 할 것, 쇼야에게는 면세 혜택을 줄 것(면세가 되지 않을 경우 마을이 세금을 부담), 연간 2고쿠(石)의 급여를 지급할 것, 기모이리(肝煎)의 임기는 1년으

13) 1665년(寛文 5년) 고후 도쿠가와번 영지『百姓身持之事』(山本英二, 2002, 30~32쪽)

로 하며 연간 4토(斗)의 급여를 지급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14]

법도(幕藩 영주의 법)와 무라오키테의 관계

다음의 【사료 5】는 1675년(延寶 3년) 오미국 야스군(野洲郡) 아와지(安治)마을(현 시가현 야스시)의 무라오키테이다.

【사료 5】1675년 오미국 야스군 아와지마을의 무라오키테[15]

1. 마을의 요리아이(寄合; 회합)에서 상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생육 중인 작물이나 수수, 면화를 훔쳤을 경우에는 과태[過怠](벌금)로서 쌀 5두[斗]와 전[銭] 1관문[貫文]을 과한다. 쌀 5두는 마을에 납부하고, 500문은 고발한 자에게 주며, 나머지 500문은 피해자에게 줄 것.
2. 위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물품일지라도 도둑질을 하였을 경우에는 벌로서 전 1관문을 마을에 납부할 것. 그중 500문은 고발한 자에게 주고, 500문은 피해자에게 줄 것. 또한, 해당 자는 고닌구미(五人組)에서 제외할 것.
3. 민가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기(公儀, 막부 및 영주 권력)에 고발하여 그자를 마을에서 추방할 것. 후일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정한다.

생육 중인 농작물 등을 훔친 자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규정함과 동시에(제1·2조), 다른 주민의 가택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기(公儀)에 소송'할 것과 나아가 그 자를 마을에서 추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농경지의 작물에 대한 절도와 개인의 가택에 침입하는 절도는 차원이 다른 범죄였으며, 후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중죄로 여겨져 고기(公儀)에 고발됨과 동시에 추방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무거운 죄는 고기(公儀)에 호소하고, 가벼운 죄는 무라오키테로 대응하는 마을의 권력과 고기(公儀)의 권력이 지닌 이원적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무라오키테(村掟)의 변천

다음의 【사료 6】은 1662년(寛文 2년) 오미국(近江國) 가모군(蒲生郡) 미쓰야(三津屋)마을(현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미쓰야초)에서 제정된 무라오키테이다.

【사료 6】1662년 오미국 가모군 미쓰야마을의 무라오키테(『惣中法度の事』)[16]

1. 어떠한 농작업이든, 또한 땔나무 채취든 간에 해가 저문 후에는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행할 때는 횃불을 밝히고 갈 것.
2. 도둑을 붙잡았을 때는 포상으로 쌀 1고쿠(石)를 하사한다. 호코닌(奉公人; 머슴)이나 아이일지라도 도둑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숙박시켜서는 안 된다.
3. 2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나뭇잎을 긁어모아서는 안 된다. 만약 몰래 긁어모은 자는 쌀 5승[升]의 벌에 처한다.

---

14) 1669년(寛文 9년) 오미국 고카군 기타나이키마을『相定め申す庄屋の事』(水本邦彦, 2015, 90~91쪽)

15) 1675년(延寶 3년) 오미국 야스군 아지마을『法度之事』(水本邦彦, 2015, 96쪽)

16) 1662년(寛文 2년) 오미국 가모군 미쓰야마을『惣中法度の事』(水本邦彦, 2015, 83쪽)

4. 논의 논둑이나 연못 주변 등의 풀을 베어서는 안 된다.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이일지라도 쌀 5승의 벌에 처한다.
5. 소와 말에게 논밭의 작물을 먹였을 때는 쌀 5승을 지주에게 지급할 것. 다량으로 먹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변상할 것.
6.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단 하룻밤일지라도 숙박시켜서는 안 된다.
7. 다른 마을 사람과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말다툼이나 분쟁[爭論]을 벌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일몰 후의 농작업을 금지하고(제1조), 도둑을 잡은 자에 대한 포상(제2조), 마을의 공유지인 산지의 사용 기간 설정(제3조), 논둑이나 연못 주변 등 공유지의 관리와 우마[牛馬]의 통제(제4·5조), 수상한 자의 숙박 금지(제6조), 다른 마을과의 분쟁 금지(제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18세기 후반인 1767년(明和 4년) 시모우사국(下總國) 가쓰시카군(葛飾郡) 고야(幸谷)마을(현 치바현 마쓰도시)에서 제정된 무라오키테를 살펴보자.

【사료 7】1767년 시모우사국 가쓰시카군 고야마을의 『覚』[17]

1. 경작에 힘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외 어떠한 악행이나 도당[徒黨] 결성도 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점을 엄중히 타이르고 훈계할 것. 만약 (자녀가) 발칙한 짓을 저질렀을 때는 부모도 동죄로 다스린다. 만에 하나 경작에 힘쓰지 않고 논밭을 황폐하게 버려두는 자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임원들이 현지를 조사한다. 범인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과태[過怠](벌금)를 부과한다. 만약 범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방치된) 황무지의 손실분을 그 경중을 참작하여 마을에서 연대하여 대금을 나누어 지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합의하였으니 조금의 위반도 하지 않겠나이다.
2. 농작물이나 농기구 등을 훔친 범인을 찾아내어 관청(부교쇼 등)으로 인도해 재판에 넘길 경우, 그 절차 및 압송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마을 전체에서 부담한다.
3. (타인 소유의) 나무에 열린 과실을 훔치거나, 혹은 산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황폐하게 만든 범인을 찾아냈다면 과태전[過怠銭](벌금) 3관문[貫文]을 부과한다.
4. 유한[遺恨](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시비를 걸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석탑 등을 운반해 놓은 자가 있을 경우, 마을의 청년들이 역[役](임무)으로서 그 석탑을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운반해 놓는다. 만약 (시비를 건) 범인을 찾아낸다면 과태(벌금)로서 1인당 전[錢] 2관문씩을 부과한다.
5. 유쇼가쓰(遊正月; 휴일)에 관한 건은 봄의 히마치(日待; 일출을 기다리는 행사)에 3일, 씨뿌리기에 3일, 쓰미덴(摘田, 못자리 만들기)에 3일, 모내기에 3일, 본(우란분절[盂蘭盆節]) 이후에 3일로 하며, 말을 돌보는 날로서 춘하추동 각각 1일씩으로 정한다. 이 이외의 신사(神事)나 불사(佛事), 매월 1일과 15일의 휴일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한다. 비록 정월(휴일) 기간 중일지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일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위의 내용을 마을 임원(村役人), 나누시(名主), 오인조(五人組), 소뱌쿠쇼(惣百姓)까지 전원이 상의하여 결정한 이상, 서로 주의하여 법도를 깨뜨리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소햐쿠쇼 전원이 연명하여 서명(연

17) 1767년(明和 4년) 시모우사국 가쓰시카군 고야마을 『覚』 (渡辺尚志, 2021, 219~221쪽)

인(連印))한다.

※1관문은 동전 1,000개. 현재 가치로 약 3만~5만 엔 상당.

이 무라오키테에서는 평소에 농사에 힘쓸 것, 악행과 도당 결성을 하지 말 것,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는 부모도 연좌하여 처벌할 것(제1조), 타인의 과실이나 공유지인 산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벤 자에 대해 벌금 처분을 내릴 것(제3조), 주민 간의 원한 처리(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휴일을 마을 차원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점(제5조)이 주목된다. 다음에 서술할 농작물·농기구 절도 이외에 대해서는 모두 마을의 자치권 하에 마을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료 6】에서는 농작물 절도와 마을 사람 집에 침입한 도둑을 구별하여, 후자를 더 무거운 죄로 간주해 관청(부교쇼(奉行所))에 고발한 뒤 추방형에 처했었다. 반면 【사료 7】의 무라오키테에서는 농작물이나 농기구를 훔치는 행위 자체를 중죄로 다루어 영주의 관청으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추방형에 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 50년이 지난 1812년(文化 9년), 같은 고야마을에서 제정된 무라오키테를 살펴보자.

【사료 8】1812년 시모우사국 가쓰시카군 고야마을의 『村方法度之取極メ』[18]

1. 매년 수해가 지속되어 백성들이 곤궁하고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모든 일에 검약하고 사치스러운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마을 임원(村役人)들의 지시를 조목조목 숙지하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마을의 규약은 몇 번이나 제정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그 규칙들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에 이번에 다시금 규약을 기록하여 반드시 준수할 것을 일동이 서약하였다.
2. 막부와 영주의 법을 굳게 지킬 것.
3. 논밭 작물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범인은 도난 현장에 묶어 둔(창피를 준) 후 마을에서 추방에 처한다. 범인을 찾지 못할 때는 마을 전체가 투표(이레후다[入札])를 실시하여,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자를 평의에 부친 후 추방에 처한다.
4. 도박이나 내기를 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과태전 3관문[貫文]을 부과한다. 그 양옆의 집도 똑같이 (과태전 3관문을) 부과한다. 도박 장소를 제공한 자는 가택수색(또는 폐문[閉門] 처분) 조치를 취한 위에 한층 더 무거운 과태전 5관문을 부과한다.
5. 혼례는 나누시(名主)에게 신고하고, 그 후에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초대할 것.
6. 장례나 법사[法事]의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친척 일동이 간곡히 술을 대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나누시(名主)에게 신청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7. 추선공양[追善供養]의 염불[念佛]에 모이는 자들은 단지 밥을 먹기 위해서만 모이고 있다. (부처를 애도하는 마음 따위는 없다)
8. 의리인정[義理仁義](선물을 주고받는 사교 교제)은 향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마을에 있는 친척에게도 이 결정을 전달하여 (교제를) 거절하도록 하라.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엄벌에 처한다.
9. 자녀의 '카미오키(髪置き; 밀었던 머리를 3세부터 기르기 시작하는 의식)'나 '오비토키(帯解き;

18) 1812년(文化 9년) 시모우사국 가쓰시카군 고야마을 『村方法度之取極メ』(渡辺尚志, 2021, 223~225쪽)

5~7세에 어른과 같은 허리띠를 매기 시작하는 의식)' 축하 의식은 소료(惣領; 가업을 이을 장남)만 행할 것.

19세기 초, 이 마을 주변에 수해가 잇따르면서 백성들은 극도로 곤궁해졌고, 무라야쿠닌으로부터도 검약을 명령받은 상태였다(제1조). 관혼상제에서의 사치를 경계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보인다(제5·6·8·9조). 이러한 조문들은 18세기 이전의 이 마을의 무라오키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비참한 생활 속에서 농작물 도난이 지속되었던 것일까. 범인은 본보기(시중 돋움)로서 도난 현장에 묶인 뒤, 추방이라는 엄중한 처분을 받았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주민들에 의한 이레후다(入札;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처럼 투표를 통해 범인을 찾는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행해지던 것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도박을 하는 백성은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도박을 한 자와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후자가 더 중죄로 다루어졌다(제4조).

마을 사람에 대한 처벌——무라하치부(村八分)

근세의 마을에서는 중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처형', '추방'에 더해 다양한 형벌이 집행되었다.[19] 특히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한 '무라하치부(村八分)'는 혹독한 제재였다. 이는 절교[絶交]를 통해 마을 내부 생활에서의 공동체 관계를 차단하고, 고통을 주어 개과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무라하치부'라는 명칭은 마을 안의 일상적인 교제 관계 중 화재와 장례의 두 가지를 제외한 여덟 분(80%)의 교섭을 거부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지역에 따라 '무라하자기(마을에서 튕기기)', '무라하부키(마을에서 배제하기)', '무라하즈시(마을에서 빼기)', '무라오노조쿠(마을에서 배제하기)', '소토시테하즈스(소로서 배제하기)' 등의 호칭으로도 불렸다)

1803년(享和 3년) 6월, 단바국(丹波國) 히카미군(氷上郡) 오가와(小川)마을 이와야(岩屋)(현 효고현 탄바시)에서 이소하치(磯八)와 고로에몬(五郎右衛門)이 무라오키테를 어기고 도박을 했다. 이에 대해 마을 안의 다양한 교제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는 조치, 즉 '무라하치부'의 처분이 내려졌다. 만약 마을 외부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신원 조회나 문의가 오더라도 두 사람을 마을 주민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20]

당시의 백성들에게 마을은 곧 세계였다.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농촌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의 파탄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무서운 제재였다.

실제로 가혹한 제재를 받은 이소하치와 고로에몬은 그 엄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뉘우쳤다. 그리하여 2달 후 중개인을 통해 마을에 사죄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다. 당시 제출했던 이치후다(一札; 서약서)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21]

무라하치부에 처해진 것은 절도·폭행·강간 등 형사 범죄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공동체 질서

19) 절도 등에 대한 본보기 형벌로는 승려가 되어 3년간 근신하기, 머리카락 일부(片鬢)를 잘라내고 붉은 두건을 쓴 채 장례 행렬 맨 앞에 서기,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붉은 두건 쓰기, 외출할 때 도둑이라는 표찰(盜人札)을 목에 걸고 다니기, 다리 위에서 하루 동안 박람(인중 노출) 처해지기, 가도에 세운 기둥에 묶여 3일 동안 방치되기 등의 제재형이 있었다. (水本邦彦, 1993, 23~24쪽)

20) 1803년(享和 3년) 6월, 단바국 히카미군 오가와마을 이와야『定』. (田岡香逸, 1954, 1~2쪽)

21) 1803년 8월, 단바국 히카미군 오가와마을 이와야『一札之事』. (田岡香逸, 1954, 2쪽)

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특히 품행이 나쁘고 마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가 대상이 되었다.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을 때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죄의 술(謝り酒)을 대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이 해제되었다.

근세의 무라하치부에서는 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절교 외에도, 이웃집에서 종을 거칠게 울려 괴롭히거나 집 문 앞을 푸른 대나무로 엮어 가로막는 등 적극적인 박해 행위가 수반되기도 했다. 무라하치부는 엄격한 제재이기는 했으나, 추방형과는 달리 마을 내에 머무는 것 자체는 허용되었으며, 마을의 책임하에 개과천선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맺음말을 대신하여——항왜(降倭)의 향약과의 비교

지금까지 일본 중·근세 농촌 사회의 양상을 개관하고, 소오키테(惣掟)와 무라오키테(村掟)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근세 일본의 촌락과 무라오키테의 성립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의 향촌, 조선의 향약과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진전쟁 때 조선에 투항하여 조선 향촌 사회의 일원이 된 일본 장병, 즉 항왜[降倭]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향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야가[沙也可]'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충선(金忠善, 1571~1642)은 임진전쟁 중에 수하들을 이끌고 조선에 투항한 '왜장(倭將)'이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대구광역시 우록리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22] 그의 문집인 『모하당집[慕夏堂集]』에는 김충선이 제정했다고 전해지는 「내외자손 급 향리공정인 약조[內外子孫及鄕里共井人約條]」(이하 '약조')가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필자는 조선의 향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으며, 이 약조가 조선 향약 전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다만 중세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이 조선에서 작성한 향약을, 지금까지 서술한 일본의 무라오키테와 비교하는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나름의 일정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약조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9】內外子孫及鄕里共井人約條

1. 생각건대, 나는 타국에 자취를 기탁하여 멀리 만리의 땅에 몸을 붙였으나, 자식과 손자가 있고 눈앞에서 성장해 가는 이들도 있도다. 너희 내외의 남녀 자손들은 내가 멀리 이 땅에 와서 몸을 기탁한 뜻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화목할 것을 경계로 삼으며, 충성과 효도를 소중한 근본으로 삼아 내가 생전에 품었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2. 생각건대, 내 자손과 성[姓]은 다를지라도 같은 우물을 쓰는 이웃(동일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친밀한 정이 마치 골육[骨肉]과도 같다. 그러므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로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녀자의 말이나 아이들이 전하는 말을 곧이듣고, 끝내 다툼의 불씨를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째이며, 그 외 온갖 선한 행실이 이를 따르는 것이다. 신분의 고하와 남녀를 불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모든 선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4. 한 마을에 사는 자들끼리 젊은이가 연장자를 밀쳐내거나,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22) 中村栄孝, 1933, 1965, 한문종 2006, 長森美信 2023 등 참조.

함부로 남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술을 좋아하여 과하게 마셔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짓도 해서는 안 된다. 도박을 해서는 안 되며,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5. 농업과 양잠(養蠶)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생업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여 빈궁함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대저 환자(還上)나 전세 등을 관청에 납부할 때는 매번 처음에 정해진 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여 관청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한 마을에 사는 자가 만약 질병이나 불행을 당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면,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파종(씨뿌리기), 김매기, 추수 등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8. 마을 사람이 만약 화재를 당해 집을 잃게 되면, 저마다 지붕을 일 샛과(萱草)나 서까래(椽木) 등의 자재를 가지고 와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9. 만약 나라에 변고가 일어나거나 전란이 발생할 경우, 나의 내외 자손과 마을 사람들은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장으로 나아가 목숨을 바쳐 힘껏 싸움으로써 이를 평정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10. 마을 사람이 만약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적을 맞았을 때는 신분의 상하와 관계없이 마을 안의 모든 집에서는 저마다 삼끈(麻繩) 한두 묶음과 삼릉의 짚고(三稜之杖, 호신·포박용 몽둥이)를 지참하고 양식을 챙겨 추적해야 하며, 발자국을 따라 도적을 붙잡아 5일 이내를 기한으로 돌아와야 한다.
11. 마을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아이의 기질과 재능이 문[文]과 무[武] 중 어느 쪽에 적합한지 잘 분간하여, 저마다 격려하고 인도함으로써 아이가 성장하고 대성하기를 기대하며 키워야 한다.
12. 마을 사람 중에 만약 농기구가 없어 뜻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소나 농기구를 가진 자가 먼저 그 사람에게 빌려주어 도우며, 농사의 적기를 놓치거나 시기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내 자손이나 마을 사람이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치를 때 재물이 없어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처한 형편과 힘에 따라 금품을 모아 서로 도와야 한다.
14. 마을 사람이 만약 다른 마을 사람과 분쟁을 일으켰을지라도, 한쪽 편만 들어 당파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의리[義理]에 기반하여 그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잘 판단하고 화해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15. 매년 봄과 가을에 강[講](강학)을 열 때, 유사[有司]는 이 약조를 가지고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읽어 주어야 한다. 부녀자와 아이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들려주어야 한다.
16. 봄의 강[講]은 꽃이 피는 계절에 열고, 가을의 강은 단풍이 드는 계절에 연다. 강을 열 때는 각자 음식과 과일을 가져와 온종일 연회를 즐긴다.

이 약조와 일본의 무라오키테 사이에서 형식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우선, 일본의 무라오키테는 주민들이 요리아이(寄合; 모임)를 열어 주민 전체의 총의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약조는 김충선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도 농사 장려(제5조)나 도박을 금지하는 내용(제4조)처럼 일본 무라오키테와의 공통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부모에 대한 효도(제3조), 환자(還上)·전세[田稅]의 납부(제6조), 도둑 및 도적에 대한 대응(제10조) 등은 조선의 향약·동약(洞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창의[倡義]에 관한 내용(제9조), 도둑 및 도적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제10조) 등은 일정한 특수성, 독특성을 가진 부분일 수도 있다.

제4조처럼 향촌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측면, 즉 목적의 관점에서는 일본의 무라오키테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무라오키테는 '불조법[不調法]; 예의에 어긋나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이나 악행[惡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기술할 뿐, 무엇이 악행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15조나 제16조에 보이는 춘강[春講]이나 추강[秋講]과 같은 용어는 유학이나 성리학을 접해본 적도 없는 일본의 마을 주민들이 만든 무라오키테에서는 결코 등장할 수 없는 표현이다.

공동체로서의 상호 부조와 관련하여, 이 약조에서는 마을 주민이 병에 걸렸을 때의 농사 지원(제7조), 화재를 당했을 때의 가옥 재건(제8조), 빈곤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때(제12조), 가난하여 관혼상제를 치르지 못할 때(제13조)의 대응 등 여러 항목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조선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이며, 일본에서 '이에(家, 가문·집안)'와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소쓰쿠리(惣作; 공동농업 노동)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일본과 조선의 통치 이념 및 통치 체제의 차이,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농촌사회와 향촌 사회의 구조적 양상 그 자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그 통치 이념을 향촌 사회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가 향약이었다면, 일본의 무라오키테는 막번 영주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서 일정한 자치권 하에 마을 공동체를 주민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약조의 말미에는 김충선이 이 약조를 제정한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인 일본을 버리고 조선에 투항한 나(김충선)는 이향[異鄕]인 조선으로 이주하여 대구 우록리에 정착했고, 자손들과 함께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에 이르렀다. 성씨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을에 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친목과 조화가 생겨날 것이며, 마을에 돈목화융[敦睦和融]과 인후[仁厚]의 풍속이 뿌리내릴 것이다. 자손들과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약조를 지켜나간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며, 다른 마을 사람들 또한 이 마을과 주민들을 함부로 잡보지 못할 것이니, 인[仁]을 미덕으로 삼는 마을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16세기 후반 일본의 전란 시대에 태어난 사야가(김충선)는 무사와 농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던 소손(惣村) 사회에서 성장하여, 소손이 정했던 소오키테(惣掟)에도 익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임진전쟁을 거치며 조선에서의 영주[永住]를 결단한 김충선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 함께 조선인보다 더 철저한 조선인이 되고자 지향했다. 그리고 당시 그가 내린 선택 덕분에 김충선과 그 후손들은 우록리의 사족[士族]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그 마을과 가계를 오늘날까지 계승·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慕夏堂文集』3巻附1巻1冊（金忠善撰。木版本. 六世孫金漢輔刊. 憲宗8年壬寅(1842)陽復前十日序刊. 京都大學圖書館（河合ホ-2）等）

『慶安御触書』（https://sybrma.sakura.ne.jp/329keiannoohuregaki.html）

北島正元, 1958,『江戸時代』岩波書店

五味文彦, 2012,『日本史の新たな見方、捉え方――中世史からの提言』敬文社

田岡香逸, 1954,「村八分と追放について」『地方史研究』12（地方史研究協議会）

長森美信, 2023,「壬辰戦争（文禄・慶長役）における朝鮮人被虜人と降倭――日本人になった朝鮮人、朝鮮人になった日本人」,『民衆史研究』105（民衆史研究会）

藤井譲治, 2013,『江戸時代のお触れ』山川出版社

藤木久志, 2010,『中世民衆の世界――村の生活と掟』岩波書店

水本邦彦, 1993,『近世の郷村自治と行政』東京大学出版会

水本邦彦, 2015,『村――百姓たちの近世』岩波書店

山本英二, 2002,『慶安の触書は出されたか』山川出版社

渡辺尚志, 2009,『百姓たちの江戸時代』筑摩書房

渡辺尚志, 2021,『近世の村と百姓』勉誠社

中村栄孝, 1933,「慕夏堂金忠善に関する史料に就いて」『青丘学叢』[23]

中村栄孝, 1965,「朝鮮役の投降倭将金忠善――その文集と伝記の成立」,『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38

韓文鍾, 2006,「壬辰倭乱時의 降倭將 金忠善과『慕夏堂文集』」,『韓日關係史研究』24(한일관계사학회)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余乃海外羈旅之人, 孤寄殊方之蹤, 慕中夏禮樂文物之盛, 借聖人一片寸壤之廛, 遺托子孫, 自成一村, 間有他姓同里共井, 則必有敦睦和融之風, 然後里可有仁厚之俗矣, 苟或不然, 人各異心, 家各異論, 則吾所以慕夏投托之義, 果安在哉, 玆以大槩約條, 列之于左, 以爲一里中金石之典, 誠不負約條, 而一乃其心, 則衆心成城, 日新又新矣, 外村之人, 誰敢侮之, 而其將謂里仁爲美矣, 惟願吾內外子孫與他姓之共井者, 克遵此丁寧之約條, 則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云爾.」『慕夏堂集』

조선후기 광주 양과동계의 동정 수호와 중수

정수환(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 후기 마을에서 조직한 동계에서 갖춘 공유자산의 내용을 추적하고 이들이 작동한 내용을 치부자료로 확인한다.

광주 양과동은 1604년(선조 37) 계를 설립하고 1740년(영조 16) 새로 개정하였다. 동계를 만들 때 혼례와 상례에 필요한 집물(什物)과 동정(洞亭)을 갖추고 있었다. 안정적인 동계 운영을 위해 1663년(현종 4) 계원이 납입한 곡물로 동답(洞畓)을 마련했다. 이 토지는 1694년(숙종 20) 계원을 위한 혼상부조 등의 기반이 되는 의전(義田)이었다. 이런 재원을 활용하여 동계를 운영한 내용을 확인한다. 분석 대상 자료는 18세기 말의 『동정중수출역기』와 19세기 전반을 대상으로 한 『동계하기책』이다.

이들 자료는 18~19세기 동계 운영의 실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동계 운영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지출 내용을 확인하기 좋은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전인 동답을 비롯하여 동정 그리고 마을의 행사에 호혜와 협동을 실현한 구체적인 모습을 재구성한다.

1. 머리말.
2. 공유자산 동정, 건립과 중수
3. 양과동 동정, 호혜를 위한 협동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 전라도 광주 양과동은 동계를 구축하고 공유자산으로 동답과 동정 등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에 상호부조를 실현하였다. 양과동계는 연구 초기 조선전기 사림파의 향약 보급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향약의 가치로 평가했다.[1] 그리고 광주향약을 주도했던 이선제의 묘지명을 분석하여 내용적으로 광주향약보다 예안향약과의연결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2] 그렇지만 규약의 구성이나 좌목의 내용을 비교하여 '동계향약'으로 인식하면서 향약과는 차별성을 부각했다.[3] 그리고 광주 양과동의 좌목과 규약을 분석하여 '향약'의 범주에서 떼어내 동계의 범주에서 설명하면서 동답을 마련하고 동계의 규모를 갖춘 시점을 임진전쟁 직후인 1604년(선조 37)으로 확인하고 조선 후기 운영에 있어 동답이나 동정을 구축하여 호혜와 협동을 실현한 사실을 밝혔다.[4] 따라서 양과동은 임진전쟁 직후 동계를

1) 朴翼煥(1991),「15世紀 光州鄕約의 鄕規約的 性格」,『金昌洙教授華甲記念史學論叢』, 간행위원회.

2) 한종수(2022),「조선전기 〈광주향약〉의 입약과 그 영향」,『서강인문논총』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 朴焞(1999),「朝鮮前期 光州지방의 鄕約과 洞契」,『東西史學』5, 한국동서사학회.

4) 정수환(2024),「조선후기 마을의 동답과 동정을 위한 협동 - 전라도 광주 양과동계와 공공지물(公共之物)」,『지방사와 지방문화』27-2, 역사문화학회.

조직하고 마을 활동을 펼쳤다.

마을과 동계를 분석하는 시각은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갈등 혹은 호혜를 위한 협동의 공간과 조직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가 있다. 20세기에는 마을을 이른바 '사족지배체제'를 전제로 마을 주도권(Hegemony)를 둘러싸고 유력 사족들이 하민(下民)들을 관리하고 그들 세력의 터전으로 구축하는 활동 공간으로 분석했다.[5] 그렇지만, 최근에는 마을과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이라는 호혜를 위해 서로 협동을 실현하고자 했던 제도로서 동계와 동약 등을 주목하고 있다.[6] 마을의 호혜와 협동을 위한 공유자산의 사례를 발굴하고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마을과 연결한 동계의 운영을 완의, 절목 등의 선언적인 내용 분석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담은 치부류 고문서를 이용한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치부류 분석 성과는 전라도 영광과 장흥의 족계 혹은 문계가 대상이었다. 김하임은 영광 남평씨의 1741~1927년 〈족계용하기〉를 분석하여 계의 전답 경영이나 계원의 제사와 부조를 위한 내용을 확인했다.[7] 그리고 김건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장흥의 서계와 문계를 분석하여 계원들이 계의 곡식을 나누어 가지는 내용을 확인하였다.[8]

이 연구는 양과동에서 공유자산으로 확보한 동정의 관리모습을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양과동 동계의 설립과 동답, 동사, 동정 그리고 집물 등의 공유자산을 이용한 호혜와 협동의 가치를 추적한 성과를 활용한다.[9] 그래서 양과동계에서 동정을 중수하고 관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계에서 재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산의 가치를 수호한 활동의 실제를 확인한다.

2. 공유자산 동정, 건립과 중수

양과동의 동계를 향약과 혼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0] 17세기 말 동계를 서술한 내용이 있다.

이 땅은 '향약'의 '의(義)'와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대게 의전(義田)을 처음 만들 때 동원(洞員)이 곡식을 모으는 움직임에서 나왔지만 이미 동계(洞稧)의 기반이 되었으니 바로 '공공지물(公共之物)'입니다.[11]

인용문에서 보듯이 향약과 동약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동정(洞亭) 중수에 대한 설명에서도 향약과 동약을 혼용하고 있다. 바로 "갑오년간에 향약이 무너지고 정자가 새로워지고 향

5) 김인걸(1984), 「조선후기 鄕村事會統制策의 위기」, 『震檀學報』 58, 震檀學會; 김용덕(1989), 「朝鮮後期의 地方自治-鄕廳과 村契」, 『國史館論叢』 3, 國史編纂委員會; 이해준(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정진영(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심재우는 이러한 20세기 연구 성과로 '사족지배체제론'을 담론화했다고 평가했다((2019), 「조선시대 향촌 사회조직 연구의 현황과 과제-향약·계에 관한 성과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90, 朝鮮時代史學會).

6) 한도현 외 지음, 2017,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정수환, 2019, 「17세기 경주 국당리(菊堂里) 동계(洞契)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 47-4, 한국학중앙연구원.

7) 김하임(2014), 「조선후기 족계의 재정운영-남평문씨 〈〈족계용하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8) 김건태(2010), 「조선후기 契의 재정운영 양상과 그 성격-전라도 장흥군 용산면 上金里 書契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38, 고려사학회; 김건태(2013), 「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1818~1945년 전라도 고흥군 용산면 상금리 수원백씨 門契 자료」, 『古文書硏究』 43, 韓國古文書學會. 한편, 장부 분석결과 실질적인 운영은 租로 실현하였으나 기재는 錢으로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9) 정수환(2024), 앞의 글.

10) 이하 내용은 정수환(2024, 앞의 글)을 전재하였다.

11)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197쪽(「幼學 朴恬 等 上書」).

약이 거의 복구되었다.”라는 언급과 함께 “동약이 나뉘고 깨어진 뒤에”와 같이 술회하기도 했다.[12] 이런 인식에서 양과동은 관청을 향해서는 마을 활동을 ‘향약’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마을 내부에서는 ‘동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양과동의 고문서로 볼 때 양과동의 사례는 동약을 갖춘 동계로 볼 수 있다.

양과동의 동정 혹은 동계의 계사와 함께 중요한 활동의 거점이자 더 오랜 기반은 정자, 즉 양과동정이었다. 동정의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동정 중수를 기념한 기록에 단서가 있다. 1800년(정조 24) 최원지는 「양과동정중수기」에서 동정의 상량기록을 근거로 기와지붕으로 바꾼 시기를 1617년(광해군 9) 5월 4일로 확인했다.[13] 그리고 이에 앞서 동정을 초가로 조성한 정자였다는 또 다른 기록도 있다.

양과(良菓)로 정자의 이름을 한 것은 왜일까? 양과는 옛 현으로 언제 마을이 되었는지, 또 몇 해에 이 정자를 올렸는지 모른다. 예전에 간원대(諫院臺)라 일컬었는데, 터만 있다가 그 뒤에 여기에 정자를 짓고 짚을 덮었다. 또 그 뒤에 더 수리하면서 기와로 덮고는 ‘양과동정(良菓洞亭)’으로 이름을 하였다.[14]

「양과동정중수기」의 내용 중 1791년(정조 15) 박성일이 쓴 부분이다. 그는 마을 역사와 함께 조선 초기부터 사림들의 모이는 공간으로 ‘간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원대 터를 기반으로 모정을 짓고 중수를 거듭했다고 적었는데, 여기에는 정자의 사실성을 보완하고 마을의 역사와 명예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 이런 자세는 기록과 연관성도 일부 있다. 16세기 간행한 임억령(1496~1568)과 고경명(1533~1592)의 문집에 양과모정(良菓茅亭)에 대한 내용이 있고,[15] 18세기 중엽 『여지도서』에 ‘양과정(良菓亭)’이 등장하고 19세기 중엽 『대동지지』도 같은 내용이 있다.[16] 박성일의 기술은 18세기 중엽 지역의 지식인이 읍지나 문집 등으로 서원과 정자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었다.[17] 그의 기록에 의지할 경우, 양과동정은 17세기 초엽에 중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앞서 있었던 모정은 동계 창립과 비슷한 시기에 동계와 갖추었다고 하겠다.

마을의 공유자산 동정의 중수는 1786년(정조 10) 여름에 시작하여 5년에 걸친 역사로 1791년(정조 15)에 마쳤다. 박성일은 동계의 약화로 동정 관리의 소홀에 있었기에 동계를 중수했다고 밝혔다.

갑오년(1774) 즈음, 향약이 마침내 깨어지고 무너져 정자만이 홀로 가시덤불 가운데 우뚝 섰지만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병오년(1786) 여름에 … 동중(洞中)에 재력을 모으는 통지문을 내어서 수십 말의 보리를 얻었다. 그러자 나에게 고치고 지붕 이는 일을 맡기기에 의리 때문에 함부로 사양하지 못했다. 5년이 지나 신해년(1791) 봄에 장인을 불러 수리했다. 용마루와 다락(棟樓)을 고치고 돌층계 길을 쌓았다.[18]

「양과동정 중수기」는 1774년(영조 50) 향약의 중단과 정자 관리의 한계, 1786년(정조 10) 동정 중수 필요성 인식과 착수 그리고 1791년(정조 15) 3월에 장인을 불러 공사를 시작한 과정을 수록하고 있다.

---

12)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51~265쪽(「良菓洞亭重修記」).

13)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63~264쪽(「良菓洞亭重修記」).

14)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51쪽(「良菓洞亭重修記」).

15) 『石川先生詩集』 권3, 五言四韻-次良菓茅亭韻; 『霽峯集』 권5, 詩-題良瓜茅亭. 이들의 문집은 각각 1584년(선조 17)과 1617년(광해군 9) 간행했기에 모정의 실제를 보여준다.

16) 『輿地圖書』, 「光州牧」 樓亭條; 『大東地志』 권12, 「全羅道 光州」 樓亭條.

17) 정수환, 2021, 「조선후기 선산일대 서원에 대한 기록과 지식 그리고 일상지식」,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8)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53쪽(「良菓洞亭重修記」).

1791년 12월 낙성하고 기문을 완성하였으므로 거의 8개월 거친 역사였다. 박성일은 향약, 즉 동계가 무너지고 12년 동안 동정을 관리하지 못한 현실을 묘사하면서 동중 활동 공간으로 동정을 상정했다. 그렇기에 그는 중수를 계기로 "정자는 이로 말미암아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고, 규약도 이로 말미암아 옛것을 따르게 되었다."[19]고 적었다. 중수 뒤에도 "이번에 새로 정자 지붕을 얹어 수리하고 거의 예전 규약을 다시 닦았다."[20]고 다시 확인했다. 동중과 동계는 활동 공간을 위한 공유자산으로써 동정을 계속 강조하며 확인하고 있었다.

동계의 기반이 동정이라는 내용은 「동중간통(洞中簡通)」에도 있다. 「동중간통」은 동정 중수를 마을과 계원들에게 알린 편지였다. 1786년(정조 10) 7월 12일, 동계는 '양과회소(良菓會所)'를 설치하고 동말(洞末) 최종적 등 6명 연명으로 동중에 간통을 보냈다.

> 한 마을의 자랑하는 곳인데 어찌 예전 규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기울어지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 이번 보름에 바라건대, 동정(洞亭)에 모두 모여 자리에 앉아 서로 의논하면 다행이겠습니다.[21]

편지 형식으로 동중 계원들에게 동정에서 제회를 알리는 내용이다. 동계가 느슨해지면서 양과동정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 동계와 동정이 양과동의 일부인 점을 알 수 있다.

정자 중수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791년(정조 15) 12월 박성일은 기문에서 2~3인의 원로들이 발의하고 자기가 주간했다고 적었다. 같은 달 보름, 동정 중수를 기념한 모임에서 이창우는 최종적과 박성일이 중수를 주간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동정 중수를 주도한 사람이 여럿이었다. 주도자는 최종적인 중수 결의가 있었던 상황을 묘사한 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동약(洞約)이 나뉘어 깨진 뒤(分破)에 매번 이 정자에 올라 … 도리와 기둥이 썩어지고 누각 마루판도 떨어져 나가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그 위에 올라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친척 박치혁과 고정충이 좌우에 앉았다 … 다음날 간통을 보내 동회를 소집하여 나와 박성일, 고정악에게 맡겨…[22]

최종적은 자신과 함께 박치혁과 고정충이 중수를 발의한 사실과 또한 자신과 박성일, 고정악이 실무를 담당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박치혁과 고정충이 최종적과 함께 동정 중수를 발의하였고, 실무는 최종적과 박성일, 고정악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이 발의와 실무에 간여했기에 중수를 발의한 인물을 2~3인 원로로 표현했다.

하지만 9년 뒤 추기한 1800년(정조 24) 봄, 최원지의 회고 기록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 최원지는 본인과 박성회가 또한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실무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23] 이처럼 18세기 말 동정을 중수하는 과정에 대한 엇갈린 기록은 중수 주도와 성과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서로의 차이와 경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동정 중수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의 차이는 동계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을 조금 보여준다. 「양과동정중수기」에는 「동중간통」과 함께 「수합록」을 포함하고 있다. 「수합록」은 동정 중수를 위한 재원 마련

19)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54쪽(「良菓洞亭重修記」).
20)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60~261쪽(「良菓洞亭重修記」). 동정과 향약을 동격화한 글은 박치혁을 비롯하여 최휴지, 이창우, 최종덕, 류덕종이 지었다.
21)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61~262쪽(「良菓洞亭重修記」).
22)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55쪽(「良菓洞亭重修記」).
23)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64~265쪽(「良菓洞亭重修記」).

내용과 함께 1791년과 1800년 동정 중수와 관련한 기문과 시문, 그리고 회고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양과촌을 비롯한 인근 10개 자연촌을 동중으로 설정하고, 자연촌마다 '수합유사(收合有司)' 한 명의 책임하에 재원을 확보한 내용을 정리했다(표, 그림 참조). 기록에 따르면, 마을의 계원 54명으로부터 보리 1말을 거두고 이를 이식하여 중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표 1〉 양과동정 중수 수합록 참여 현황

마을	占孫村	良苴村	黃山村	順生村	應男村	泥場村	福壽村	水下	笠巖	柒石	합계
참여인	10	7	7	9	3	2	5	5	5	1	54
좌목확인	4	2	4	0	1	1	2	3	1	0	18

「수합록」에 이름을 올린 동중 계원 54명 중 18명만 「동계좌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과 같으며, 행정촌 양과동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자연촌이 분포하고 있다. 1791년 중수에 참여 혹은 회고한 13명 중 최종적, 최창지, 최종극, 류익명은 좌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수를 주도한 원로로 볼 수 있는 박치혁, 고정충, 최종적 중 최종적 만 「동계좌목」에 올랐다. 이를 1800년 중수를 회고한 최순지와 박성회까지 확대하더라도 최순지는 좌목에 있으나 박성회는 없다.[24] 그리고 중수기의 기문을 짓고 순생촌의 수합유사를 수행했던 박성일이 좌목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순생촌의 이씨와 류씨등 동계중수에 관여했던 9명 모두 좌목에서 확인할 수 없다.

동정 중수 참여자는 「동계좌목」에서 1/3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동계 좌목에 오른 사람들의 가계 기록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동정과 동계 중수에 주관한 사람들의 기록에 일관성이 부족한 내용은 동정 중수와 중수 뒤 동계 자료를 정리한 인사들이 짧은 기간 안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동정의 중수를 완성하고 동계의 회동 공간으로 계속 관리가 있었다. 1791년(정조 15) 동정 중수를 완료한 이후 동정의 관리 내용을 담은 「동정중수출역기」가 있다. 이 자료는 1799년(정조 23)~1806년(순조 6)을 전후한 시기 동정의 수리 및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다.[25] 동정 중수 이후 남은 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동정의 식리 내용, 동회를 위한 찬가(饌價) 및 음주가(飮酒價) 등의 지출 그리고 재실 중수나 현판 설치 등의 활동 내용이다. 1889년(고종 26)에는 동계에서 광주목에 상서를 올려 동정 인근의 투장에도 대응하였다.[26] 18세기 말의 동정 중수 활동은 이후 동정 관리에도 계속 전례로 남았다.[27] 이처럼 동정은 동계활동을 위한 호혜의 공간이었기에 계속 관리를 위한 협동 대상이었다. 「양과동적입의서」에는 17세기 초 건립한 동정 관리에 내용도 적고 있다.

> 1. 동정은 해마다 2월 그믐날 안에 지붕을 덮는다. 5묶음의 짚으로 각기 2축(軸)을 만들고 새끼줄 10묶음, 대나무 장대 1개로 해서 건장한 사내종 1명을 유사가 직접 감독한다. 지붕을 기한에 하지 못하면 유사가 제회(齊會)에서 여러 도구를 보내지 않은 계원에게 그들

24) 「동계좌목」 권1에 이은 「동계좌목」 권2에는 동계중수와 관련한 인사들 기록이 없다(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洞契座目」 2).

25) 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광주향약」 3, 277~285쪽(「洞亭重修出役記」). 작성 시기는 참여 마을과 계원의 현황이 대동소이하며, 치부가 곡물과 전문으로 이루어졌고, 把摠이나 風憲과 같은 직역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洞亭重修債, 洞亭錢, 茅亭會所과 같은 중수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26) 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광주향약」 2, 215~219쪽(「1889年 高淇鎭・崔基祚 上書」).

27) 1786년과 1791년의 동정 중수 활동은 1905년 동정을 중수할 때 참고하였다(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117쪽(「收租案」)).

의 노를 20대 때릴 일.[28]

「양과동적입의서」에 매해 2월까지 초가지붕을 새로이 준비하는 내용과 재료를 계원들의 협동으로 마련할 것을 결의한 내용이다. 동정을 개초하는 책임은 동계의 유사에게 있었다. 「양과동정중수기」에 동정의 지붕이 초가였다는 사실과 1786~1791년(정조 15) 중수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동정의 지붕을 기와로 바꾼 시기가 1617년(광해군 9)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29] 개초 관련 내용이 없는 「동향약」과 달리 「양과동적입의서」에는 인용문과 같이 개초 내용이 있다. 동계의 집물, 동답 그리고 동정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동향약」보다 「양과동적입의서」가 보다 오랜 기록이다. 동답이나 동정의 내용을 참고할 때 「양과동적입의서」는 최소 1617년 이전의 기록이다.

동계 설립 후 '신의'를 강조하기 위해 조약을 마련했다. 고문서에는 '혼상부조(婚喪扶助)'와 '길흉경조(吉凶慶弔)'를 통해 환난상휼을 실현하려 했던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강신과 질서유지를 위한 벌책들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계의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집물이나 동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중차일장(洞中遮日帳)' 같은 집물은 동원(洞員)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마을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유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동정은 모정직(茅亭直)을 선발하고 그에게 잡역을 면제하는 대신 동정 관리와 동계의 제회에 사환하도록 했다.[30]

양과동 동계는 설립 초기 빠르게 공유자산을 확보하고 관리에 협동했다. 1604년(선조 37) 설립한 직후 집물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 다음, 비슷한 시기 동정을 확보하고 1617년(광해군 9) 초가에서 기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663년(현종 4)쯤, 계금으로 확보한 곡식을 식리하여 또한 동답을 마련하였다. 동답과 동정의 내용은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다.

18세기 후반에도 동계는 공유자산 관리와 협동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1786년(정조 10) 동정을 중수하면서 동계 강신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강화했다. 당시의 내용은 이후 동계활동에도 전례가 되었다. 일례로, 1905년 동정을 중수하고 동계의 강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수조완의서」에는 병오년(1786) 동계의 재원 마련 방향을 되짚고 있다.[31] 병오년 동정 중수를 위해 보리(牟) 한 말을 모아 5년 동안 취식(取殖)하고 남은 재원으로 동계를 부활시켰던 내용을 적용했다.[32] 동계의 지속성을 위해 앞선 운영의 지혜를 참고하고 있었다.

동계가 내부 갈등으로 위기가 있을 때도 중수로 동계를 이었다. 1786년(정조 10) 양과동정 중수를 두고 1791년(정조 15)의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 계원들 사이의 이해 차이와 경쟁이 있었던 점은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고문서인 1791년 4월 28일 「양과동완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과동완의」에는 "우리 동약(洞約)이 흩어져 깨어진 뒤, 슬펐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상장(喪葬)에 서둘러 도와주는 도리를 업신여긴" 것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33] 이처럼 동계가 작동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과 호혜를 위한 상장부조를 위해 동계 중수를 실현했던 노력을 「양광동완의」에서

28)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93쪽(「良苬洞籍立議序」).

29)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63~264쪽(「良苬洞亭重修記」).

30)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93쪽(「良苬洞籍立議序」).

31)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117쪽(「收租案」). 「수조안」의 표지에 "을사년(1905) 11월에 동계를 다시 세운(復立)다"는 내용이 있다. 1786년(정조 10) 동정 수리를 위해 마을에 알린 '洞中簡通' 내용은 「良苬亭重修記」에 수록하고 있다(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54~255쪽(「良苬亭重修記」)).

32) 동계는 1786년 병오년의 동정 중수 사실을 확인하고 2갑자가 돌아오기 한 해 전 1905년(을사년)에 동정을 중수하고 동약을 복원했다(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124~125쪽「收租案」)).

33)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103~108쪽(「良苬洞完議」).

확인할 수 있다. 동계의 중수 기금은 여름 보리(牟) 1말과 가을 벼(租) 1말을 동원들로부터 3년 동안 수합하여 해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장과 함께 소상·대상에도 계원들에 대한 부조를 달성했다. 이처럼 동계는 이전에 운영했던 가치를 호혜로 확인하고 이를 계속하기 위한 협동으로 중수를 실현했다.

3. 양과동 동정, 호혜를 위한 협동

〈〈동정중수출역기〉〉(이하 〈〈동정중수〉〉)는 양과동의 동정 중수를 완료한 1799년 이후 1806년까지 동정을 중심으로 마을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다. 자료의 작성시기를 특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정 관리를 위해 수합에 참여한 마을 기록이 1791년과 대동소이하고 치부에 사용한 화폐단위가 兩錢을 기준으로 하면서 1966년(고종 3) 당백전 통용 이후 고액 단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갑자년 전여유사의 기록에서 서압의 형식이 19세기 말 양과동의 다른 치부 자료와 구분하며,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양식을 띈다. 더불어, 재원 운영 기록 중 把摠의 직역 기록과 함께 洞直 내용이 있다. 동계는 1870년(고종 7)까지 동직에 대한 면역 요청 활동을 전개하였다.[34]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정중수〉〉는 19세기 이전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의 구성에 따르면 작성 시기는 1799~1806년에 해당한다. 이 자료를 바탕삼아 양과동에서 마을 정자의 관리와 더불어 정자 주위에서 일어난 동계의 호혜와 협동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동정중수〉〉의 기재 내용 순서에 따른 작성 연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癸亥(1803년), 收合錄, 辛亥(1791년), 壬子(1792년), 己未(1799년), 庚申(1800), 辛酉(1801년), 癸亥(1803년), 甲子(1804년), 乙丑(1805년), 丙寅(1806년), 甲子(1804년), 己未(1799년)

〈〈출역기〉〉는 대체로 수합록에서 시작해서 1791년에서 1806년까지 연대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만, 계해년(1803) 기록은 표지 뒷면, 마지막 쪽의 1799년(정조 23) 〈己未年頃給記〉 내용은 추록한 것이다. 동정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 현황을 〈〈양과정중수기〉〉와 비교하면 표와 같다.

〈표 2〉 동정(양과정) 중수와 관리에 참여 현황

마을	占孫村	水春村	良苴村	黃山村	順生村	應男村	泥場村	福壽村	水下	笠巖	柒石	합계	구분
중수기	10	-	7	7	9	3	2	5	5	5	1	54	1791년
출역기	10	6	-	9	9	5	2	5	5	5	-	56	1799년

1791년 양과동의 동정을 중수할 당시 참여한 마을과 인원은 양과동을 포함한 주변의 자연마을 10개 54가구였다. 그리고 1799년 관리를 위해 참여한 내용도 수춘마을, 즉 양과동을 포함한 주변의 9개 마을이었다.[35] 참여 마을의 현황이나 참여 가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양과정은 양과동과 주변의 자연 마을이 함께 관리하는 공유자산이었다.

---

34) 한국학호남진흥원, 212~214쪽(「1870年 崔麟淳 等 上書」).

35) 수춘촌은 양과동을 지칭한다(「朝鮮地誌資料」(1910). 〈출역기〉에는 '수합록' 제목을 부여하여 적지는 않았으나, 〈중수기〉의 내용과 연결하여 '수합록'으로 해석했다.

1799년(정조 23)는 11월 정자 관리와 관련한 사정을 밝힌 글에서 앞뒤 사정을 찾을 수 있다.

> 신해년(1791) 6월에 거둔 보리(牟)는 55말, 10월에 거둔 나락(租)이 55말이다. 임자년(1792) 3월에 덜어둔 것(除縮)을 돈으로 바꾸어(作錢) 10냥을 만들었다. 이것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여러 번 흉년을 당하고 그해에 돈을 주어 썼던(用錢) 사람이 어쩌다 죽거나 도망하고 또 몸을 보존하였으되 거지꼴을 못 면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맞추어 돈을 마련하려 한다는 건 모두 헛소리이며 이자의 이익으로 잃어버린 것이 거의 100금이 넘는다.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두렵다. 받은 돈(所捧錢)과 남겨두었던 돈(因置錢)을 올해 이제 이 뒤에 적어서 새 유사(有司)에게 전해 준다. 이것으로 서로 살필 일이다.[36]

인용문은 〈출역기〉 수합록 기록 뒤 다음 쪽에 동정을 중수한 이후 재원의 사정을 서문의 형식으로 적은 글이다. 문서 말미에 밝히고 있듯이 '傳與'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 일종의 '전여기' 서문으로 볼 수 있다. 서두에는 1791년 동정 중수를 마친 뒤의 재원 상태를 정리했다. 동정 중수 뒤 곡물 110말을 이용하여 전문 10냥을 마련하였다. 이 본전을 바탕으로 식리를 실시하였으나 흉년이 거듭하면서 이자는 물론 본전도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의 한계가 드러난 사정을 밝히고 있다. 전여자는 8년 남짓한 동안 본전과 이자를 포함하여 거의 100냥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여 전수자에게 당부하였다. 이 의미는 과거의 사정을 갈무리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11월 22일 새로이 받은 돈(新捧錢) 64냥 2전 5푼과 인치전(因置錢) 21냥 3전 4푼으로 모두 85냥 5전 5푼으로 회계하고 전여했다.[37]

전여가 있은 다음 이듬해 경신년, 즉 1800년(정조 24) 11월 동계는 동정과 관련한 재원의 운영 내용을 기록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庚申 本利竝 119兩2戔6分 內	37兩7分 下
餘在 82兩1錢9分 分給	2兩5錢 下
實在 79兩6錢9分 分給	

한해 전 본전 85냥 5전 5푼을 바탕으로 식리로 운영한 결과 1800년 119냥 2전 6푼을 본전 수입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1799~1800년 지출 후 79냥 6전 9푼을 재원으로 정리했다. 지출 내용은 1799년 회계하지 못했던 6월의 지출 8냥 5전 6푼을 포함하여 전여 이전까지 포함하였다. 후자는 捧錢 때 비용과 동직(洞直)의 1말 5도락지 논 값 10냥 2전, 그리고 동정을 중수할 때 남은 부채 13냥 1전을 을 사용한 것들이었다. 이들 지출을 37냥 7푼을 제외하고 82냥 1전 9푼 중 동직을 위해 2냥 5전을 사용한 결과가 79냥 이상의 재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자원을 분급한 내용을 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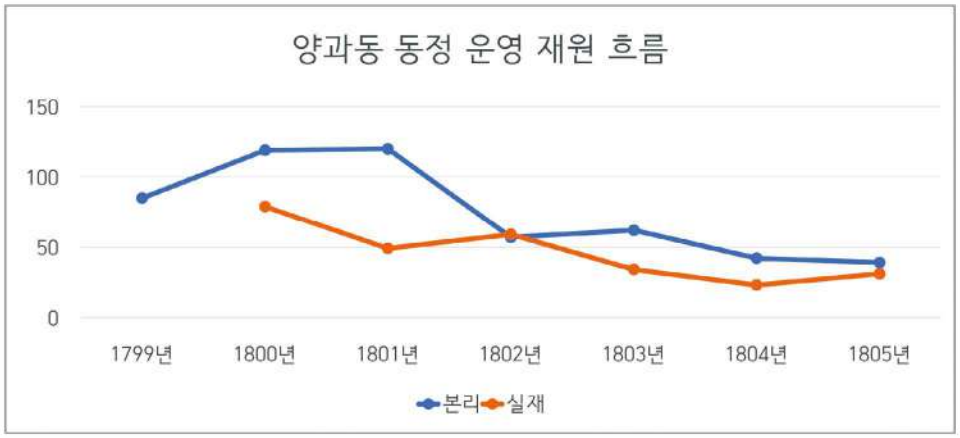
〈출역기〉에 양과동 정자 공간에서 일어난 재원의 내용을 정리한 규칙이 있었다. 동정을 중수한 뒤 1799년 앞으로 관리를 생각한 전여를 위해 79냥 이상을 마련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1800년에서 1805년에 이르는 6년의 식리와 지출 등의 내용을 기록했다. 매년 본전과 식리의 결과(本利)와 이를 바탕으로 사용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 실재(實在 혹은 餘在) 재원 규모와 분급(分給), 혹은 급채(給債)[38] 내용을 기재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분급의 수행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식리 결과 재원의 현황과 그에 바탕한 지출에 이어서 실재(實在)와 분급을 확인했다. 이런 〈출역기〉 기재 규칙에 다른 본리(本利)와 실재(實在)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洞亭重修出役記〉〉.

37) 인치전은 "水萬二兩, 順永六兩四戔九分, 禿同二兩, 先金三兩, 尹把摠一兩, 金風憲二兩, 萬山伊二兩, 汝昌伊一兩, 云昌伊一兩, 行元伊一兩, 咸平宅八戔五"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총합(已上)은 실상 22냥 3전 4푼이다. 그렇지만 〈출역기〉는 이상(已上)에 1냥의 착오가 있으며, 도합(都合)도 85냥 5전 5푼으로 4푼의 착오가 있다.

38) 1804년(순조 4) 전여 이후부터 분급 대신 급채로 기재했다.

己未(1799)	本錢 85兩5戔5分	
庚申(1800)	本利 119兩2戔6分	實在 79兩6戔9分
辛酉(1801)	本利 120兩	實在 49兩
(壬戌(1802))	本利 57兩5戔	實在 59兩1戔4分
癸亥(1803)	本利 62兩3戔	實在 34兩
갑자(1804)	本利 42兩4戔6分	實在 23兩5戔4分
을축(1805)	本利 39兩3戔1分	實在31兩9戔2分



인용문과 표는 양과동에서 동정을 중수한 이후 관리한 재원의 흐름을 담고 있다. 1799년 동정 중수 직후 마련한 85냥 이상의 전문을 토대로 이듬해부터 6년 동안 분급 혹은 급채를 통한 식리로 재원을 운영했다. 흐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5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회계가 있었던 1805년에 31냥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도 1799년의 본전을 바탕으로 식리하여 이듬해 119냥의 본전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동계의 활동에 제출하고 79냥을 갖추었다. 그리고 다시 이를 식리하여 이듬해 1801년에 120냥의 지원을 사용하고 49냥을 확보했다. 이처럼, 식리를 통해 재원을 증식하였으나 동정을 가운데 두고 운영한 동계의 지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전체 재원은 감소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1805년의 상황을 본다면, 39냥 재원의 지출을 줄여 31냥을 확보하였음에도 장기적으로 본전의 보전이 어려워질 현실을 미리 알 수 있다.

마을에서 동정을 위한 재원의 지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1800년의 지출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동정을 위한 논 값을 치르거나 동정을 중수할 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무 변제에 23냥 3전을 사용했다. 洞直의 1말 닷되지기 耘乃畓 구매는 결과적으로 동정 운영 재원을 위한 활동이었으며, 이후 1802년에 곡수(谷數)를 확보하고 이를 作錢하여 지출결과를 일부 보전하였다.[39]

1801년의 지출 내용에서 재원의 감소 현상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宮占坪畓'을 매득하기 위해 50냥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앞서 동직의 논 매득에 이은 활동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0일과 11월 20일의 회동에서 狗價, 酒價, 饌價 등으로 10냥 이상을 지출했다.[40] 동정에서 있었던 회동, 즉 전여에 주찬가 등의 지출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이듬해에도 비슷했다. 전여에 黃肉, 狗價, 酒米, 曲子, 饌價, 南草를

39) 1804년 본전을 정리하면서 '谷數三 石作錢四兩二戔'을 확인했다.

40) 1801년 동정은 식리를 위해 분급한 내용에 대한 '頃下' 내용을 지출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尹把摠 등에 3건에 대해 '年久'나 기록의 미상으로 13냥 7전 9푼을 '頃下'로 확인했다.

위해 3냥 이상을 사용하였다. 토지의 매득 활동에 따른 지출이 없고 매득한 토지로부터 곡수가 들어오면서 실재 재원은 59냥으로 현상 유지를 달성했다.

1803년에는 동정을 유지하는 비용 지출이 22냥 2전 9푼 있었다.내용은 茅亭價沙, 洞直齋重修, 洞直齋別田價 등으로 모정과 더불어 洞直齋 관리와 운영을 위한 밭 매득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여 회동과 洞會를 위해 糧米, 南草, 狗二尾, 饌價 등으로 4냥 6전 1푼을 사용했다. 그리고 같은 해의 지출 내용을 표지의 뒷면에 6월 동회에서 지출한 17냥1전5푼의 지출 내용을 별록했다. 내용은 價土價沙工錢, 狗價, 加五里三尾石魚, 曲子, 酒米, 占米, 下糧米, 酒一海價, 洞直齋重修所入 그리고 洞直家前田價五兩 등이었다.

1804년 지출 내용이 있다. 醬價, 酒米曲子, 南草, 板子價, 造至局價, 黃肉價와 함께 '六兩七戔五分月利秋下'를 포함하여 모두 17냥 6푼을 사용하였다. 특히, '月利秋下' 6냥7전5푼의 내용은 〈출역기〉 뒷부분에 '甲子七月初二日洞會'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동회 당시 지출은 狗, 酒米, 曲子, 朝食糧, 眞瓜, 使喚饁飢, 石魚, 菜蔬, 占心糧을 위해 7냥1전9푼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들 비용은 5냥은 洞直과 李哲의 債錢을 받아서 쓰거나 문중전을 받아서 충당하고 2냥8전9푼이 순수한 지출로 확인했다. 그리고 같 은날 '洞亭懸板閣畵所入'으로 3냥8전6푼을 지출하였다.

1805년은 7냥3전9푼의 지출을 적었다. 6월 13일 '望賀時用下記'에서 肴價, 酒米, 曲子價, 眞瓜價, 饒飢 등에 대해 3냥9푼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고, '捧錢時下記'에 2냥3푼 등을 지출한 내용을 확인했다. 한편, 1806년은 본리와 실재에 대한 회계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해의 '下記'만 기록했다.

한편, 1806년 기록은 완전하지 않다. 한해 전 분급(給債)한 내용에 대해 본전과 이자를 받지 미처 받지 못한 3냥과 도망(逃)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4냥을 비록하여 본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만 받은 사례가 13냥에 이르러 부도가 20냥이었다.[41] 이런 사정으로 본리는 15냥9전5푼에 불과하였다.[42] 이 중 동회에 12냥2전9푼, 捧錢時 2냥5전8푼을 사용하여 14냥8전7푼을 사용하였다. 동회가 있은 '丙寅年下記'에는 狗四首價 2냥6전과 더불어 酒米糧米曲子價 2냥1전5푼과 草價, 茅亭改板價, 茅亭會飮酒價, 茅亭會飮味西果價 등을 밝히고 있어 양과동에서 동정의 관리를 위한 지출내용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회수하지 못한 본전 26냥이 남았다. 이로써 동정을 중수한 이후 마련한 재원은 소진하였으며, 단지 매득한 토지만 남았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양과동계에서 동정 관리 목적으로 조성한 본전과 85냥은 지속 감소하였다. 본전을 활용하여 50%의 이자 확보를 위해 장리로 분급(채전)을 실시하여 초기 2년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와해 되었다.[43] 식리의 운영의 불안정 때문에 급기야 1806년 채권이 증대하면서 본전을 소진하고 말았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頃給(頃下)'이 작용했다.

1803년 동회에서 정리한 '己未年頃給錢'의 내용에서 탈급의 규모를 알 수 있다. 1799년 분급을 하였지만 본전과 이자를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 35냥 5전이었다. 게다가 도망으로 인해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 41냥 7전 1푼으로 모두 77냥 2전 1푼으로 1803년의 본전과 이자를 초과하는 규모였다.탈급에는 도망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지만 '年久'도 있었다. 분급 대상은 양과동 동계의 계원이 아니었음에도 강력한 본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서 마을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했다. 곧, 파산으로 인해 도망이 증대하거나 공동체가 와해하는 위험보다는 채권의 유예나 면제로 위기 국면을 연장하려 했던 것이다.

41) 身死로 인한 頃下도 있다.

42) 이 중 租1石17斗를 작전하여 2냥6전8푼을 포함했다.

43) 1806년에는 '長利'로 표기하고 있다.

분급(급채)의 범위는 동계 계원과 마을 사람들이었다. 1799년(정조 23) 분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水萬二兩, 順永六兩四戔九分, 禿同二兩, 先金三兩, 尹把摠一兩, 金風憲二兩, 萬山伊二兩, 汝昌伊一兩, 云昌伊一兩, 行元伊一兩, 咸平宅八戔五分

양인 이하로 보이는 구성원들에게 급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파총이나 풍헌과 같은 이 시기 신흥 성장세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출급도 있었다. 그렇다고 양과동의 계원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른 기록에는 咸平宅, 黃龍宅, 安州宅, 西林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과동은 동정과 관련한 계금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식리활동 대상을 마을 구성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계원까지도 그 범주에 넣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양과동의 〈출역기〉는 마을 공간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부하면서도 탈급을 빈번히 하는 느슨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중심은 동정이 있었다.

4. 맺음말.

조선시대 양과동은 향약의 형식을 빌어 내용으로 동계를 운영하였다. 동계의 설립은 1604년(선조 37)으로 임진전쟁 직후였다. 동계는 혼상부조라는 대의를 위해 공유자산인 동전답(洞田畓)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洞亭과 庫直 등의 건물을 갖추어 활동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이들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 사람들, 즉 계원들의 협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협동의 방향은 재원의 안정화와 공유공간의 마련이라는 호혜에 있었다.

양과동 동정은 적어도 1617년(광해군 9) 이전에 초가지붕으로 조성하였다가 이 시기 개와 한 사실을 〈양과동정중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동계를 구성하고 곧이어 정자를 마련하여 마을의 공유공간을 조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지속 유지하던 동정은 1786년(정조 10) 5년에 걸친 역사를 거쳐 중수 함으로써 동계와 마을의 가치를 이었다. 중수를 위해 양과동 중심의 10개 자연촌에서 54명 이상이 재원 마련에 참여하여 동계의 가치를 드러냈다. 그 결과 1800년(정조 24) 양과동의 동정은 새로워졌다.

동정을 중수한 다음에도 이를 계속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양과동에서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복잡한 기록이 〈양과동정중수출역기〉이다. 이 자료는 전여기로서, 내용은 1799년이후 1806년까지의 재원 마련과 인수인계 사실이다. 재원의 출발은 동정의 중수가 있은 뒤 중수에 참여한 마을 구성원들이 다시금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리활동을 전개한 결과였다. 식리를 위한 출급(급채)의 대상은 계원뿐만 아니라 마을 공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자율은 長利로서 50%를 적용했다. 그렇지만, 엄격한 관리 실현에는 한계가 있어 頃下의 빈번함으로 재원을 유지할 수 없어 1806년(순조 6) 이후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런 재원 운영의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재원을 이동하여 田畓을 마련하고 이를 회계에 적용함으로써, 동정 중수를 위한 활동이 동계의 운영에 귀속되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양과동은 마을의 공유자산 동정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운영했다. 그렇지만 마을 구성원을 위한 엄격한 재원관리의 한계로 7년만 운영되었다. 다만, 이때 마련한 동전답이 동계에 이어져 마을의 호혜와 협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19-20세기 전라도 영암 구림대동계의 변용과 장기지속성

김경옥(국립목포대)

1. 머리말
2. 문산재의 설립과 서당 중수
3. 동답(洞畓)의 매입과 사립구림학교의 개교
4.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의 개교와 중등교육의 실현
5. 맺음말

1. 머리말

현전하고 있는 구림대동계 소장자료 가운데 『전답안(田畓案)』, 『간심기(看審記)』, 『추감기(秋監記)』 등을 검토하면서 의문이 들었다.[1] 이 문서는 1900년을 전후로 작성된 구림대동계의 계답(契畓) 타조(打租)에 관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의 말미에 양사재(養士齋), 과계(科契), 서재(書齋), 송계(松契), 하계(下契) 관련 내용이 주기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 구림대동계 소유 토지가 영암군 서시면(西始面, 현 군서면), 서종면(西終面, 현 군서면), 곤시면(昆始面, 현 학산면), 곤일시면(昆一始面, 현 미암면), 곤이종면(昆二終面, 현 삼호면), 북일종면(北一終面, 현 도포면) 등지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명은 1917년 이전의 행정편제으로,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전답과 작인이 연도별로 기재되어 있었다.[2] 이들 자료는 전근대 구림대동계 소유 전답의 입지와 규모를 전해주고 있었다. 구림대동계 재원(財源)의 향방이 궁금하다.

그동안 구림대동계에 대한 연구는 향촌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왔다.[3] 기존 연구에 의하면, 구림대동계는 1565~1580년경에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창설된 것으로 전해온다.[4]

---

1) 권수용, 「영암 구림대동계 향약자료의 특징」, 『영암향약』 ③, 구림대동계 상, 호남한국학 향약자료집, 한국학호남진흥원, 2024, 36-39쪽.

2) 1917년에 곤일시면은 곤미현으로, 훗날 2방(坊)으로 나뉘어 그 으뜸이 '곤일방' 혹은 '곤일시방'이라 칭하였다. 1898년에 곤일시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오늘날 미암면에 해당한다. 곤일종면은 옛 곤미현의 끝에 해당하는 곳인데, 오늘날 삼호면으로 개칭되었다. 북일종면은 영암읍내 북쪽에 입지한 곳으로 오늘날 도포면에 해당한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1983).

3) 구림대동계 관한 연구로 다음의 논저가 참고 된다. 구림지편찬위원회 편, 『호남 명촌 구림』, 리북, 2006;김정호 외, 『왕인과 도선의 마을, 구림』, 향토문화진흥원, 1992;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2000; 정근식 외, 『구림연구-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3; 김경옥, 「조선후기 영암사족과 서원-전주최씨가문의 성장과 녹동서원의 건립사례」, 『호남문화연구』 20,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1; 김성아,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조직: 전남 영암군 구림대동계의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3; 박명희, 「문중문헌의 기록범위와 자료의 활용가능성-영암 구림 함양박씨 오한공파 문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2001; 박원표, 「구림 대동계의 지방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종화, 「조선조에 실시된 구림대동계의 성격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84;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 『전남사학』 2, 전남사학회, 1988; 전형석, 「15-16세기 영암 구림의 사족 형성 과정 연구」, 국립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25; 최재율, 「구림향약의 형성과 현존형태」, 『한일농어촌의 사회학적 이해』, 유풍출판사, 1991.

4) 「鳩林洞重修契序」, 林浩(1522~1562) 序; 「會社亭記」, 1643년, 朴瀰(1592-1645).

계안은 상계와 하계로 나뉘어 작성되었다.[5] 좌목 다음에 계원들이 결의하여 작성한 규약이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1641년(인조 19) 중수 강령은 ①상장상부(喪葬相賻), ②혼인상자(婚姻相資), ③환난상구(患難相救), ④강신수목(講信修睦), ⑤유사택정(有司擇定), ⑥행후입례(行後入禮), ⑦유죄출동(有罪黜洞), ⑧과실상규(過失相規), ⑨태만동사(怠慢洞事), ⑩춘추교량(春秋橋梁) 및 도로수치(道路修治), ⑪사산금벌(四山禁伐) 등이다.[6] 이외에 향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잡규와 추약이 기재되어 있다.[7] 이를 통해 구림대동계의 창설배경, 계원 조직과 구성, 상계와 하계의 합계, 사족 형성과 결속 등 향촌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검토된 바 있다. 이제 근현대 구림대동계가 어떤 향촌활동을 전개하였는지, 마을공동체 조직이 향촌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전근대 구림대동계가 향촌사회의 교육활동을 구현하고, 일제강점기에 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태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근대 구림촌 서당인 문산재의 설립과 중수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둘째, 1910년 구림대동계 주도로 서구림리에 사립구림학교가 설립되고, 해방 후 구림국민학교로 개칭되어 동구림리로 이전하였다. 마을공동체가 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려고 한다. 셋째, 1951년에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가 서구림리에 설립되고, 1967년에 구림실업고등학교가 동구림리에 개교하였다. 구림리에 중고등학교가 계기적으로 설립되는 과정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근현대 마을공동체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장기지속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문산재의 설립과 서당 중수

문산재는 18세기 구림대동계 주도로 설립된 서당이다. 문산재의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무신년 상량문」(1728)이 참고 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무릇 옛날의 상(庠)·서(書)·학(學)·교(校)의 제도가 행해지지 않고 폐기되더니, 가르치는 방도가 쇠락하여 마침내 중단되고 말았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스스로 성취한 인재는 없다. 도읍과 민가 사이에는 헛되이 노닐며 자포자기한 부류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속을 근심하여 절터에 건물을 마련하였다. … 절실한 마음으로 곡식과 재물을 모아 처음 성기동에 서당을 창립하고, 스승을 모셔두고 선비들을 모아 비로소 학문에 전념하게 되었다.[8]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구림촌에 옛 학교제도가 있었으나 중단된 지 오래되었다. 문득 후진 양성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이 절터에 서당을 설립한 것이다. 이 서당을 승사(僧舍)인 문수암-터에서 운영하였다

5) 「萬曆四十一年癸丑十二月初禊重修座目」, 1613년.

6) 구림대동계의 1614년 중수 강령은 ①喪葬相賻, ②患難相救, ③過失相規, ④補米收合, ⑤講信修睦, ⑥有司擇定, ⑦後入行禮, ⑧有罪黜洞, ⑨補米收合時遷延者笞罰 등 9조이다. 그 후 1641년(인조 19) 중수 강령에는 대동소이하나, 婚姻相資와 四山禁伐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鳩林大洞契誌』, 구림대동계사복원추진위원회, 2003, 31-32쪽).

7) 이외에 현전하는 구림대동계 문서로 ①『重修契案』(1641·1646), ②『契憲』(연대미상), ③『追約』(1656·1658·1659·1668), ④『西湖洞案』(1646), ⑤『會社亭題詠』(1643), ⑥『會社亭記』(1643), ⑦『會社亭上樑文』(1643), ⑧『西湖洞憲』(1670·1741·176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무신년(1728) 2월 21일 상량」, 『영암향약』 ③, 구림대동계 상, 호남한국학 향약자료집, 한국학호남진흥원, 2024, 387-390쪽.

하여 '문수재'라 부른다. 위의 기록에서 '옛날 학교제도가 폐기되고 중단되었다'라고 한 것은 구림촌의 동각인 회사정(會社亭)이 정유재란 때 소실된 이후 복구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향촌에서의 교육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18세기에 구림촌 사람들이 서당을 설립하여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성기동 문수암[9] 대들보에서 초창기 구림촌 서당 건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확인된다. 즉

- 도유사(都有司): 조경찬
- 별유사(別有司): 문재창, 정윤창, 박동우, 임익선, 박지화, 최성두, 박사익, 박형, 박수표, 박사량, 고두진, 임증표, 고두양, 임중기, 서경지, 류정연, 임우기
- 사장(師丈): 박명오
- 학도(學徒): 이홍기, 박사도, 이홍구, 윤처미, 박사일, 박사담, 박사태, 최상망, 정종, 박사순, 박세규, 류성길, 임중기, 박창경, 박사심, 임우장[10]
- 목수(木手): 조귀인, 김문리금, 장덕뢰, 최선남

구림촌 서당은 도유사 조경찬을 비롯하여 별유사 17명, 목수 4명 등에 의해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훈장은 박명오이고, 학도는 16명이었다. 이처럼 구림촌 서당은 사찰 암자인 문수암-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승사(僧舍)의 명칭 그대로 '문수재'라 불렀다.[11] 그러나 구림촌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당터 이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2] 바로 최필흥이 작성한 상량문에서 성기동 문수암-터에서 문산으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최필흥이 기문에 이르기를,

곡식과 재물을 모아 처음 성기동에 서당을 창립하고, 스승을 두고 선비를 모아 학문의 장을 마련하였다. 갑자년(필자: 1744) 봄에 문산(文山) 위에 옮겨 세웠다. 옛 재목을 가지고 건물을 완성하였다. 일을 주관한 것은 죽림옹이었으니, 새로운 학문으로 일취월장하며 호산(湖山)의 빼어남을 마음대로 하였다. … 가람을 겨우 완성하고 보니, 쌀과 소금이 모두 다 떨어져서 강당을 지을 수 없었다. 물력이 풍요로운 날을 기다린다.[13]

라고 하여 문수재가 이건하였지만, 학도들의 강학장소인 강당을 구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1728년에 구림촌 서당은 성기동 문수암-터에 처음 설립되었고, 1744년에 성기동 문수암-터에서 문산(文山)으로 이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구림촌 서당을 '문산재' 혹은 '문산서재'라 칭하였다.

문산재 이건 이후 최필흥은 또다시 상량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1788년(정조 12)에 문산재 강당을

9) 문수암-터는 죽정마을 서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입지하며, 오늘날 문산재-터로 전해온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1983, 179쪽).

10) 「執任書齋僧舍樑上」, 1657.

11) 초창기 구림촌 서당이 문수암-터에 설립되어 일명 '문수재'라 불렀다. 이런 까닭에 20세기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문수재-터' 즉 '문산재-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1983, 179쪽).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초창기 문수암-터에 설립된 서당을 '성기동 서당'이라 칭하고, 문산에 이건한 서당을 '문산재'라 기술한다.

12) 「병오년 이건」 (1726년); 「정미년 단장」(1727년); 「무신년 강당 이건」(1728년).

13) 「무신년 2월 21일 상량」, 최필흥 撰, 1728년.

건립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재(書齋)는 옛날 상량문이 없었다. 승사(僧舍)의 상량문을 생원 박순우가 들보에 적어 놓았고, 강당의 상량문은 졸렬한 내가 그 전말을 기록한다, … 아아! 서당을 성기동에 창건한 것이 무신년(필자:1728년)이었고, 갑자년(필자:1744년)에 문산으로 옮겨 세웠으며, 강당은 재력이 부족하여 건립하지 못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다시 그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간지가 처음 창건했던 해와 같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는가? 아! 옛 어른들께서 사업을 부지런히 힘썼음을 알겠다. 지금 옛 들보를 보니, 무릇 우리 후생들이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14]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구림촌 서당은 1728년(무신)에 설립되고,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1788년(무신)에 문산재 강당이 신축되었다.[15] 이렇듯 18세기 구림대동계는 서당과 강당을 구비하면서 학문의 장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구림대동계는 문산재의 설립과 중수, 이건 등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1832년에 낭주 최태중이 찬한 문산재 상량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성기동에 서당을 개설하고, 학궁(學宮)을 문산으로 이건하여 강론하니, 유학의 전수에 근본이 있게 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16] 이처럼 문산재는 19세기에도 구림대동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20세기 초에 작성된 구림대동계의 『전답안(田畓案)』, 『간심기(看審記)』, 『추감기(秋監記)』 등에 '서재'가 주기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림촌 서당인 문산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구림대동계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답(洞畓)의 매입과 사립구림학교의 개교

일제강점기 영암지방에 근대학교가 건립되었다. 일반적으로 근대학교 설립의 주체는 해당지역 지방관이었다. 왜냐하면 전근대 지방관이 반드시 행해야하는 '수령칠사(守令七事)'에 학교 건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 영암군 구림촌 근대학교의 건립주체는 구림대동계였다. 구림대동계는 동답(洞畓)을 통해 근대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현전하는 구림대동계 관련 문서 가운데 '동답'에 관한 기록은 1670년경에 작성된 『서호동헌(西湖洞憲)』「추약」에서 검출된다. 당시 구림대동계에서 새로 세칙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규약 제5조「유사택정(有司擇定)」에 추가로 기재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답(洞畓) 경작에 전(前) 유사는 한 곳의 작부만 전여한다. 해마다 창고에 보관할 쌀·포목·나락을 계산한 연후에 남은 것은 매년 논을 사서 의장(義庄)으로 삼는다. 다만 유사가 논

14) 「무신년 상량」, 최필흥 撰, 1788년.

15) 문산재 강당 건립시기는 최필흥이 작성한 상량문에 '간지가 처음 창건했던 해와 같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겠는가'라는 문구에서 창건시기 간지가 무술년으로 1727년이고 강당이 건립된 시기는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무술년으로 1788년에 해당한다.

16) 실재 현전하는 구림대동계 문서에 1957년 4월 23일에 함양 박찬종이 지은 문산재 상량문이 전해온다. 그는 상량문에서 "사백년 간 인재를 길러낸 것이 헛되지 않았다. 70여 명이 강학하는 곳으로 현전하고 있으니, 땅은 사람으로 인해 이름이 나고, 사람은 땅과 더불어 뛰어난 것이다"라고 문산재의 장구함을 노래하고 있다(「상량문」, 박찬종 撰, 1957년).

> 을 매입할 때 회문(回文)하여 모두 모인 상태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고, 절대로 사사로이 값을 내주지 않도록 한다. 또 계에서 논을 살 때 계원의 논이면 매입하지 않는다. 또 병작하는 것도 계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쌀과 나락을 거둬들이는 날은 12월에 2회, 1월 2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17]

위의 대동계 규칙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림대동계 소유 동답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창고에 필요한 재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계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대동계 재정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 후 1741년에 작성된 『서호동헌』에는 보다 토지 관련 상세한 규정이 반영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제7조 「유죄출동(有罪黜洞)」 에 〈동답(洞畓)〉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과 나락을 거둬들이는 것은 매년 4회에 걸쳐 실시한다. 11월에 2회 12월에 2회 행한다.
- 해마다 곳간에 보관할 쌀·포목·나락을 계산한 후 남은 것이 있으면 논을 사서 의장으로 삼는다. 논을 매입할 때 유사는 회문(回文)을 낸 다음 함께 모여 상의해서 결정한다.
- 논을 살 때 계원의 논을 사더라도 병작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 동답은 유사가 성실한 사람을 정해 병작하도록 하고, 생산된 곡물은 일일이 독봉하여 체례(遞禮) 전에 모두 납부한다.
- 동답의 종자는 병작자가 갖추도록 하되, 전세(田稅)의 절반과 볏짚을 종자값으로 제하고, 준다.
- 동답은 8월에 상유사가 직접 살피도록 한다.[18]

이렇듯 구림대동계 소유 토지가 영암지방 곳곳에 분포하고, 해당 전답에서 연 4회 토지세를 수합하였다. 특히 17세기 말에 동답 매입시 계원 소유 토지는 매입 불가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100여 년이 지난 18세기 중엽에는 계원 소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동답 종자에 대한 관리 규정도 경작인과 조율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아마도 구림대동계의 동답이 곳곳에 분포하면서 규정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림대동계의 동답은 어디에 분포하였을까? 다음 〈표 1〉은 구림대동계 관련 『간심기(看審記)』에서 계답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무자년 『간심기(看審記)』[19]

지 명	병작인	비 고
서시면(西始面, 현 군서면)	2	이상 水南 打租　70石 16斗
서종면(西終面, 현 군서면)	16	
곤이시(昆二始, 현 학산면)	47	
곤이종(昆二終, 현 서호면)	24	
곤일시(昆一始, 현 미암면)	13	

17) 『서호동헌(西湖洞憲)』 「유사택정(有司擇定)」, 1670년 경.)

18) 『서호동헌』, 1741년.

19) 표제는 『간심기(看審記)』(무자년 월일)이라 기재되어 있고, 총 61면이다. 내표제는 '西始面'이라 기재되고 연이어 경작인별 토지 규모와 소출량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 분포는

지 명	병작인	비 고
북일종(北一終, 현 도포면)	181	이상 水北 打租 137石 7斗 水南[20] 北部 合 208石 6斗 公事員 朴○○/ 別有司 李○○ 該有司 曺○○/ 新有司 全○○
물주종(物主種)	146	
조감평(趙甘坪, 현 도포면?)	85	
길곶지(吉串之, 현 도포면?)	30	
양사재(養士齋)	7	6석 12두
과계(科契)	7	5석 8두
서재(書齋)	11	10석 3두
송계(松契)	4	2석 13두
하계(下契)	7	4석 6두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림대동계 소유 계답은 영암군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즉 영암군 군서면을 비롯하여 학산면·서호면·미암면·도포면 등지에 분포하고, 이 토지를 경작하는 인원이 무려 544명이며, 소출량은 총 208석 6두로 추산된다. 이외에 양사재 6석 12두, 과계 5석 8두, 서재 10석 3두, 송계 2석 13두, 하계 4석 6두 등 구림대동계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기관별로 토지 규모와 소출이 부기되어 있다.

이러한 구림대동계의 재정은 일차적으로 동계 구성원들의 관혼상제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자산은 토지를 매입하여 계답을 축적하였으며, 그로 인한 식리전을 규합하여 구림대동계 재정을 증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구림대동계는 양사재와 서재(실재 문산재), 송계와 하계 등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별로 토지를 구분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재 관련 토지에서 산출된 기금이 근대학교 재정의 원천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20세기 구림촌 사람들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다음 〈표 2〉는 20세기 전반 전라도 영암에 설립된 근대학교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01~1950년 영암지방 근대학교 현황[21]

번호	연도	학교명	소재지	연혁	비고
1	1908	영암공립보통학교	영암읍 회문리	1908.04.01. 영암공립보통학교 인가 1938.04.01. 영암서심상소학교 1945.08.15. 영암국민학교(서구림 / 동구림)	영암향교 열무정 장암정 망호정 부춘정 구암사 영호사
2	1910	사립구림보통학교	군서면 동구림	1910.04.01. 사립구림보통학교	회사정 죽정서원 간죽정

20) 도갑사의 별칭이 수남사(水南寺)다. 도갑사는 월출산에 입지한 사찰로, 신라 때 창건하여 수남사라 불렀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1983, 178쪽).

21) 이외에 폐교로 인해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 제외되었다. 즉 금정동국민학교(1934), 영암동국민학교(1943), 영보국민학교(1944), 서호북국민학교(1944), 학산서국민학교(1944), 금정북국민학교(1946), 신북남국민학교(1950) 등이다(『영암군지』, 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278-291쪽).

번호	연도	학교명	소재지	연혁	비고
2	1910	사립구림보통학교	군서면 동구림	1917.04.20. 구림공립보통학교 1949.12.31. 구림국민학교 개칭	죽림정 태호사 국암사 이우당
3	1920	서창공립보통학교	삼호면 서창리	1920.08.31. 서창공립보통학교 인가 1934.04.01. 용당간이학교 설치 1938.04.01. 서창꽁립심상소학교 1943.04.01. 삼호공립학교 1949.09.01. 서창국민학교	
4	1922	신북공립보통학교	신북면 월평리	1922.10.01. 신북공립보통학교 인가 1938.04.01. 신북공립심상소학교 1941.04.01. 신북공립국민학교 1949.12.31. 신북국민학교	영팔정 삼충각
5	1923	금정공립보통학교	금정면 용흥리	1923.10.01. 금정공립보통학교 인가 1928.04.01. 금정공립심상소학교 1946.09.01. 금정국민학교	
6	1924	시종공립보통학교	시종면 내동리	1924.07.02. 인가 1938.04.01. 시종공립심상소학교 1941.12.30. 시종공립국민학교	
7	1924	장천공립보통학교	서호면 장천리	1924.09.24. 개교 1938.04.01. 장천공립심상소학교 1941.04.01. 장천공립국민학교 1941.05.부설 금강간이학교 설립 1945.09.24. 장천공립국민학교 1945.11.30. 장천국민학교	구고사 부조묘 충효문 장동사
8	1925	도포공립보통학교	도포면 덕화리	1925.04.11. 도포공립보통학교 개교 1937.04.01. 도포공립심상소학교 1941.04.01. 도포공립국민학교 1949.12.31. 도포국민학교	
9	1926	학산공립보통학교	학산면 금계리	1926.06.11. 학산공립보통학교 인가 1934.04.01. 부설 매월간이학교 인가 1939.04.01. 학산공립심상소학교 1942.04.01. 학산공립국민학교	집영재
10	1930	덕진공립보통학교	덕진면 덕진리	1930.09.19. 영보정에서 개교 1930.11.14. 덕진리(310) 이전 1938.04.01. 덕진공립심상소학교 1941.04.01. 덕진공립국민학교	녹동서원 영보정 송양사 이우당 시서영당 동백정

번호	연도	학교명	소재지	연혁	비고
11	1932	신흥간이학교	시종면 금지리	1932.04.01. 신흥간이학교 인가 1943.09.01. 시종북공립국민학교 1948.04.12. 종남공립국민학교 1949.12.31. 종남국민학교	
12	1936	미암공립보통학교	미암면 선황리	1936.03.25. 미암공립보통학교 인가 1938.06.01. 미암공립심상소학교 1941.04.01. 미암공립국민학교 1948.09.01. 미암국민학교	
13	1937	해창간이학교	군서면 해창리	1937.04.04. 해창간이학교 인가 1943.04.01. 군서북공립학교 인가 1950.04.01. 군서북국민학교	
14	1937	사설강습소	영암읍	1941. 간이학교 1944. 영암남국민학교 1947. 한대분교장 격하	
15	1938	신북공립 심상소학교 부설 갈곡간이학교	신북면 학동리	1938.03.31. 인가 1946.03.31. 현 부지로 이건 1946.03.31. 신북서국민학교	
16	1941	장천공립보통학교 부설 금강간이학교	삼호면 성재리	1941.04.05. 인가 1944.03.31. 서호북국민학교	
17	1944	삼호서 공립보통학교	삼호면 용앙리	1944.05.24. 개교 1953.11.16. 삼호중앙국민학교	
18	1946	독천국민학교	학산면 독천리	1946.10.03. 설립인가 1948.03.01. 독천공민학교 1950.10.05. 전쟁으로 교실 전소	
19	1949	삼호서국민학교	삼호면 용당리	1949.09.01. 삼호서국민학교 용당분교 1950.03.15. 용당국민학교 인가	

위의 〈표 2〉는 1901-1950년 영암지방에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의 현황이다. 영암지방의 근대학교는 영암읍(2), 군서면(2), 삼호면(4), 신북면(2), 금정면(1), 시종면(2), 서호면(1), 도포면(1), 학산면(2), 덕진면(1), 미암면(1) 등 읍면에 고루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암읍 행정 중심지에 건립된 공립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전근대 동성마을에 건립된 사립학교이다. 먼저 영암읍의 경우 1908년에 가장 먼저 공립보통학교를 건립하였다. 이는 전근대 읍내에 향교가 건립되어 관학교육을 주도하였듯이, 근대학교도 가장 먼저 출범하였다.

반면 향약을 근간으로 한 동계 조직이 활발히 운영되었던 군서면과 덕진면의 경우 전근대 영암을 대표하는 성씨들의 입향과 정착, 서원과 사우의 건립, 서재와 누정을 통한 서당교육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

다. 바로 전근대 향촌활동이 활발했던 마을공동체가 근대학교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실제 영암읍의 동쪽에 입지한 덕진면 영보촌의 경우 16세기에 전주최씨·거창신씨·남평문씨 등이 혼인을 통해 혈연·지연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내외손을 대표하는 최덕지(1384-1455)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7세기에 존양사를 건립하였고, 존양사는 영암지역에서 유일하게 사액을 받아 녹동서원으로 승격되었다. 20세기 영보촌 사람들은 동각인 영보정에 근대학교를 설립하였고, 1930년에 덕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근대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또 영암읍의 서쪽에 입지한 군서면 구림촌의 경우 영보촌과 쌍벽을 이루며 전근대 향촌활동이 활발하였다. 구림촌의 근대학교는 영암읍에서[22] 두 번째로 건립되었다. 즉 1910년 4월 1일에 구림대동계의 주도로 사립구림학교가 구림촌에 설립되었다. 근대학교가 주민에 의해 운영되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1910년 8월 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사립구림학교와 구림대동계에 관한 기사가 확인된다.

영암군 구림면(필자: 군서면 구림리)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에 열심하며, 전토 200여 두락을 매수하여 종묘(種苗) 모범장을 설치하고, 뽕나무 300여 주를 구입하여 인민들의 식수사업을 장려함으로 영암군 부노들이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또 300여 년 보유해오던 200여 두락 계답(契畓)을 기부하였다.[23]

위의 기사는 1910년 4월 구림촌에 사립구림학교의 건립을 이슈로 다루었다. 이 기사의 요지는 '구림리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구림대동계가 300여 년 동안 보유해왔던 계답을 지역 사회 주민과 교육사업을 위해 희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실제 1917년에 구림대동계는 사립구림보통학교에 부지 2,900평, 학교림 3,500평, 논 600여 두락, 임야 20정보, 현금 18,000원 등을 기부하여 동년 4월 20일에 구림공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24] 1923년 4월 1일에 구림공립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인가를 받고, 1949년 12월 31일에 구림국민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다. 그런데 1960년 4월 2일 구림국민학교가 서구림리에서 동구림리로 교사를 이전하게 된다. 구림대동계의 근대교육을 향한 또 다른 기획의 결과로 주목된다.

4.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의 개교와 중등교육의 실현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선인 대상 초등교육은 보통학교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중등교육은 사실상 일본인 대상 교육으로 운영되었다.[25] 이런 까닭에 조선인을 위한 중등교육은 전무하였다. 해방을 맞이한 구림촌 사람들은 사립중등학교 설립을 기획하였다. 1910년 군서면 서구림리에 사립구림학교를 설립하여 초등교육을 시작한 바 있는 구림대동계는 동답과 임야를 희사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였지만, 정작 졸업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군서면에 중학교가 없었기

22) 『영암군지』 하, 「제1장 교육」, 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285쪽.

23)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4일자.

24) 『鳩林大洞契誌』 구림대동계사복원추진위원회, 2004,58쪽.

25) 김경옥, 「20세기 전반 간척으로 인한 섬마을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신안 도초고등공민학교 사례」, 『한국학연구』 7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0, 7-8쪽.

때문이다.

영암군 관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근대학교를 설립했던 구림촌 사람들은 중등교육기관 건립을 주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중등학교 건립 부지였다. 이에 구림촌 사람들은 기존 사립구림학교를 설립했던 경험을 되살려 중학교 건립에 그대로 반영했다. 즉 구림촌의 초등교육시설이 사찰의 승사(僧舍)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구림대동계의 계사(契舍)에 사립고등공민학교를 출범한 것이다.[26] 그러나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영암군 관내 학교시설을 방화하여 교사(校舍)를 전소하였다. 예컨대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설립된 독천공민학교와 금계리에 개설되었던 학산공립국민학교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27] 이런 상황이었기에 한국정쟁으로 구림촌의 중등교육기관의 운영도 여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구림촌 사람들은 중등교육을 구림대동계 계사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1951년 10월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 인가를 받아 동년 11월에 동구림리 마을 회관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였다.[28] 1959년 3월에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가 도립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자, 구림대동계는 서구림리 공립구림국민학교터를 중등교육 장소로 전환하고, 구림국민학교는 동구림리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서구림리에서 개교했던 구림국민학교가 서구림리로 이전하고, 중등교육기관이 서구림리에 터를 잡은 것이다. 이처럼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부지를 서로 맞교환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림대동계에서 희사한 학교부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구림대동계는 계답 100여 두락과 부지 15,000평을 희사하여 도립고등공민학교(구림중학교의 전신)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29] 1960년 4월, 구림대동계의 의도대로 구림촌의 초등교육시설과 중등교육기관이 각각 서구림리와 동구림리에 재정립되었다.

그런데 구림촌 사람들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기관이 정립되자, 후속사업으로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구림촌 사람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토지를 기증받고,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결과 1967년 10월, 구림실업고등학교가 인가를 받았다, 고등학교 부지는 구림중학교와 함께 사용하였다. 1972년 구림실업고등학교는 구림고등학교로 개칭되고, 1976년 9월에 구림중학교에서 분리되어 군서면 동구림리에 학교를 이전하였다.[30] 이때 구림대동계는 사산(四山)을 구림고등학교 건립 부지로 기증하였다.[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근대 구림촌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하고, 향약을 근간으로 한 구림대동계를 조직하여 거주민들의 관혼상제를 지원해왔다. 근대를 맞이하여 구림대동계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대교육을 위한 사립구림학교를 설립하였다. 해방 후 구림촌 사람들은 중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림대동계 계사를 임시 교사로 삼아 구림고등공민학교를 출범시켰다. 또 한국전쟁이후 상급학교인 구림고등학교 개교를 위해 구림대동계 소유 임야를 학교부지로 기부하였다. 이처럼 전근대 향촌공동체가 서당을 중심으로 학교제도를 운영하였다면, 근현대 마을공동체는 근대학교의 설립과 재정지원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

26) 박원표, 「구림 대동계의 지방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1쪽.

27) 『영암군지』 하, 「제1장 교육」, 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278-291쪽.

28) 박원표, 같은 논문, 41쪽.

29) 『鳩林大洞契誌』, 구림대동계사복원추진위원회, 2004, 58쪽.

30) 구림고등학교는 1967년에 구림실업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1972년에 구림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고, 1974년에 구림고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영암군지』 하, 「제1장 교육」, 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295쪽).

31) 구림대동계 소유 사산(四山)은 대동계책에서 거론되었던 임야인데, 주로 지역민의 공동묘지로 사용되어오다가 고등학교 부지로 기증한 것이다(박원표, 같은 논문, 42쪽).

5. 맺음말

이 글은 전근대 마을공동체 주도로 향촌사회의 교육활동을 구현하고, 일제강점기에 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근대 구림촌은 혼인을 통해 혈연 및 지연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마을공동체는 여씨향약을 근간으로 구림대동계를 창설하였고, 강령은 ①상장상부(喪葬相賻), ②혼인상자(婚姻相資), ③환난상구(患難相救), ④강신수목(講信修睦), ⑤유사택정(有司擇定), ⑥행후입례(行後入禮), ⑦유죄출동(有罪黜洞), ⑧과실상규(過失相規), ⑨태만동사(怠慢洞事), ⑩춘추교량(春秋橋梁) 및 도로수치(道路修治), ⑪사산금벌(四山禁伐) 등이다.

전근대 구림대동계는 계원들의 관혼상제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향촌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실천하였다. 계원의 관혼상제는 대동계 재정을 구축하여 대비하고, 교육활동은 서당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구림촌 서당은 1728년(영조 4)에 성기동 문수암-터에 개설되었다. 번잡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서당을 운영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까닭에 초창기 구림촌 서당은 소위 '문수재'라 불렀다. 구림대동계는 서당에 스승을 초빙하고, 학도 16명이 학문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였다. 1744년(영조 20)에 구림촌 사람들은 성기동 문수암-터에 조성되었던 서당 건물을 해체하여 문산 일대로 이건하였다. 이로부터 '문산재' 혹은 '문산서재'라 칭하였다. 그 후 1788년(정조 12) 문산재의 강당이 새로 건립되면서 비로소 학문의 장으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근대로 접어들자, 구림촌 사람들은 근대학교 건립을 주도하였다. 그 첫 번째 활동은 사립구림학교의 설립이었다. 그리하여 1910년 사립구림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당시 신문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향촌사회에 사립학교가 건립되자 이슈로 기사화하였다. 신문 기사에는 '300여 년 보유해왔던 200여 두락의 계답(契畓)을 기부하자, 영암군내 부로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라고 소개하였다. 실제 1917년 구림대동계는 사립구림보통학교에 학교부지와 학교림, 논과 임야, 현금 등을 기부하여 공립구림보통학교의 개교에 기여하였다.

해방이 되자, 구림촌 사람들은 향촌 내 중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구림촌의 중등교육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자, 구림대동계는 정식 인가를 받기도 전에 계사(契舍)에서 중등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란으로 인해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없었다. 구림촌 사람들은 서구림리에 중등교육을 위한 임시 교사를 마련하여 학교를 운영하였다. 1951년에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자, 동년 11월에 구림대동계는 동구림리 마을 회관에 고등공민학교의 임시 교사를 마련하여 지속하였다. 1959년에 사립군서고등공민학교가 도립고등공민학교로 인가되자, 구림대동계는 계답을 학교 부지로 희사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구림리에 있던 구림국민학교를 동구림리로 이전하고, 구림국민학교 터에 도립고등공민학교를 개교하였다. 이는 구림대동계에서 계답을 초중등학교에 희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60년 군서면 동구림리에 구림국민학교가 새롭게 출범하자, 서구림리에는 도립고등공민학교가 들어섰다. 구림촌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상급학교 건립을 기획하였다. 바로 구림촌에 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한 것이다. 1967년에 구림실업고등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고, 1972년에 구림실업고등학교가 구림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때 구림대동계 소유 사산(四山)을 구림고등학교의 부지로 기증하였다. 이 임야는 지역민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해왔으나, 고등학교 건립 부지가 필요하자, 지목을 변경하여 학교부지로 희사한 것이다. 이렇듯 구림대동계는 전근대 서당인 문산재(혹은 문수재)부터 근대학교

인 구림국민학교와 구림중학교, 구림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국 전근대 마을공동체가 지역민들의 관혼상제를 지원하는데 주력하였다면, 근현대 구림대동계는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동력이었다.

[참고문헌]

『鳩林大洞契誌)』, 영암군·구림대동계사복원추진위원회, 2004.
『영암향약』③, 구림대동계 上,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한국학호남진흥원, 2024
『전답안(田畓案)』, 『간심기(看審記)』, 『추감기(秋監記)』
『황성신문』(1907-1908), 『매일신보』(1911-1941), 『동아일보』(1920-1950),
『시대일보』(1924-1926), 『조선일보』(1924-1948)

구림지편찬위원회 편, 『호남 명촌 구림』, 리북, 2006
김정호 외, 『왕인과 도선의 마을, 구림』, 향토문화진흥원, 1992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2000
정근식 외, 『구림연구-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1983

권수용, 「영암 구림대동계 향약자료의 특징」, 『영암향약』 ③, 구림대동계 상, 호남한국학 향약자료집, 한국학호남진흥원, 2024
김경옥, 「조선후기 영암지방 사족활동과 서원건립-전주최씨가문의 성장과 녹동서원 건립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조선후기 영암사족과 서원-전주최씨가문의 성장과 녹동서원의 건립사례」, 『호남문화연구』 20,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1
김경옥, 「18세기 후반 영암 열무정 사포계의 조직과 향촌사회」, 『고문서연구』 35, 한국고문서학회, 2009
김경옥, 「20세기 전반 간척으로 인한 섬마을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신안 도초고등공민학교 사례」, 『한국학연구』 7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0
김성아,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조직: 전남 영암군 구림대동계의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3
박명희, 「문중문헌의 기록범위와 자료의 활용가능성-영암 구림 함양박씨 오한공파 문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2001
박원표, 「구림 대동계의 지방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종화, 「조선조에 실시된 구림대동계의 성격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84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 『역사학연구』 2, 호남사학회, 1988
전형석, 「15-16세기 영암 구림의 사족 형성 과정 연구」, 국립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25
최재율, 「구림향약의 형성과 현존형태」, 『한일농어촌의 사회학적 이해』, 유풍출판사, 1991

조선 후기 면약·면계의 유형과 성격

- 장흥부 남면 향약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

이광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 머리말

향약은 성리학적 윤리 체계가 반영된 향촌 자치 규약이다. 중국 북송(北宋) 대 남전현(藍田縣)의 여씨 형제(呂氏兄弟)가 처음으로 향약을 제정하였으며, 남송(南宋) 대 주자(朱子)가 이를 증손(增損)하였다. 주자가 증손한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은 『소학(小學)』과 여러 성리서에 수록되었다. 고려 후기 주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유학 지식인들도 자연스레 주자가 증손한 향약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향약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중종 연간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건의한 기묘사림(己卯士林)의 여러 발언에 따르면, 1517~1519년 동안 적어도 서울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몇몇 고을에서 향약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 또한 기묘사림에 앞서 15세기에 이미 전라도 용안현(龍安縣)과 성균관(成均館)에서는 향약의 덕목을 권장하였고,[2] 전라도 광주목(光州牧)과 태인현(泰仁縣)에서 향약을 시행했다고 한다.[3] 그러나 당시 시행된 향약의 형태와 내용, 그 범위와 대상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림 세력을 중심으로 향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중종·선조 연간 사림파는 향약의 전국적 시행, 즉 제도화를 건의하였지만, 이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향약은 주자 성리학의 실천과 기묘사림이 남긴 개혁 정치의 유산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토대로 더욱 확산되어 갔다. 여기다 16세기 중·후반 조선 성리학 계보를 이끈 명유(名儒)가 향약 규정을 직접 제정함으로써, 향약 시행은 각 학맥의 사림에게 도통(道統)의 계승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향약의 광범위한 보급에는 재지사족의 향촌 개발과 기반 확대라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뒷받침되었다.[4] 그렇게 중국에서 보급된 향약은 조선의 사회상과 실정에 맞추어 이른바 '조선적 향약'[5]으로 한국 전통 사회에 뿌리내렸다.

---

1) 이광우, 「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 『동아인문학』 39, 동아인문학회, 2017, 142~146쪽.

2) 전라도 용안현에서는 고을에서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한 후 향약의 덕목을 읽었으며(『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全羅道 龍安縣 風俗), 성균관에서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강응정(姜應貞)이 서울의 여러 준사(俊士)와 함께 주자의 고사를 따라서 향약을 제정했다고 한다(『秋江集』 卷7, 雜著, 「師友名行錄」).

3) 15세기 중반 전라도 광주목(光州牧)에서 김문발(金文發)이 향약을 제정하였다(『光州牧誌』 人物). 비슷한 시기 태인현(泰仁縣)에서는 정극인(丁克仁)이 고현동학(古縣洞約)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향음주례가 후대에 향약으로 인식된 것이다(김용덕, 「향음례고 -성종대의 향약에 대하여-」,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76쪽). 다만, 15세기의 향약이 실제 향약으로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향약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 개별 자치 조직을 후대에 향약으로 소급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3, 23~35쪽.

5) 류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진단학회, 1938.

조선에서 향약은 시행 주체와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 고유의 지방 행정 단위와 결합한 향약이 중국의 그것과 구분되는 특징이라 생각한다.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향약은 고을 단위의 주현향약(州縣鄕約)이다. 그런 주현향약이 시행되면 면리제(面里制) 아래에서 면약(面約)·이약(里約)도 함께 결성되었다. 또한 면리제와 별개로 시행 주체의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한 동약(洞約)이 존재하였다.[6]

그간 역사학계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향약을 주목하였으며, 지금까지 시기·지역 및 시행 주체·목적 등에 따른 다양한 사례 연구를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단선적으로 파악된 향촌 사회의 다양한 실상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다만, 주현향약과 동약에 비해 면약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다. 주현향약 하부의 면약을 언급한 경우는 많아도, 개별 면약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전라도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남면(南面) 면약은 연구자들에게 가장 이른 시기에[7] 주목받은 면약이다. 비단 남면 면약뿐만 아니라, 장흥에는 다른 면에서 시행된 면약 자료와[8] 동계를 비롯한 각종 계 자료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많은 연구자가 장흥 지역 향촌 사회를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장흥 지역 고을 하부 구조의 다양성과 그것의 운영 원리가 면밀하게 검토되었다.[9]

그중에서도 남면 면약은 면약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다만, 면약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면약이 가지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임을 전망하였다.[10] 그런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그간에 개별 면약·면계에 관한 사례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며, 주현향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그 하부에 편제한 면약이 어느 정도 검토되었다.[11]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장흥부 남면의 면약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면약·면계의 유형과 범주, 성격과 특징을 그간 축적된 개별 면약·면계에 관한 사례 연구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조선 향약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6) 주현향약 아래에서 면리제 단위의 '이약'이 구상된 사례는 확인되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대신 시행 주체의 생활 반경인 동·촌 단위의 동약·동계(洞契)·촌약(村約)·촌계(村契)가 실질적으로 최말단 자치 조직으로 운영된 듯하다(김용덕, 「조선후기의 지방자치 -향청과 촌계-」,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1989, 125~126쪽). 이때 동·촌의 범위는 실제 행정 단위인 '리'와 일치하는 경우, 복수의 '리'인 경우, '리'보다 하위의 자연촌인 경우로 접근할 수 있다.

7) 김희태, 「조선후기 호남의 향촌면약에 대하여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4; 「조선후기 장흥부 남면 면약의 시행배경과 내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8) 남면 면약 자료는 장흥군 용산면 용산경로당에 소장된 것으로 해당 자료를 소개 및 수록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장흥문화원, 『장흥 향약 모음』, 199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 1, 2006; 한국학호남진흥원, 『장흥향약』 1 남면면약, 2024. 본 발표문에서 남면 향약 자료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장흥향약』 1 남면면약, 2024'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9) 장흥의 향약 연구로는 '백지연·박경하, 「19세기 후반 전라남도 장흥군 주현향약의 성격」,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백지연, 「1902년 전라남도 保民鄕約의 운영과 특징」, 『역사민속학』 63,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가 있으며, 그 외 동계를 비롯한 각종 계 조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10) 김희태, 앞의 논문, 2007, 60쪽.

11) 장흥부 남면 면약처럼 장기간 지속된 개별 면약·면계에 관한 사례 연구로는 경상도 남해현 남면의 향약계(이광우, 「1784~1945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향약계의 성격 -면약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a), 동래부의 사천면 면계(진상원, 「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사상면) 동안 연구를 위한 예비적 검토」, 『향도부산』 37,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9; 「17·18세기 동래부 사천면 면계의 성격변화」, 『향도부산』 4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3; 「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의 주민자치 조직과 주현향약」, 『향도부산』 4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4) 정도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자가 주현향약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하부에 편제된 면약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소개하였다.

2. 면약·면계의 범주와 주현향약과의 관계

면약·면계는 말 그대로 '면' 단위로 시행되는 향약과 계이다. 따라서 면약·면계의 범주와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부를 이루는 주현향약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정부는 지속적인 '면-리'의 체계화를 통해 고을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농민 지배와 부세(賦稅) 수취를 도모하고자 했다.[12] 실질적인 지방 통치의 역량과 별개로 조선 정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할 당시부터 '면-리-통(統)-호(戶)'와 '권농관(勸農官)-이정(里正)-통주(統主)'[13]로 이어지는 고을 하부 구조의 계통화를 구상하였다. 이후 점진적인 면리제 정착에 따라, 주현향약을 제정하는 자들도 그 아래에 고을 하부 구조의 근간인 '면' 단위의 면약을 편제하게 된다.

이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은 면리제를 적용한 주현향약의 선구로 평가받는다.[14] 그는 1560년(명종 15) 파주향약(坡州鄕約)의 서문을 쓰면서 각 리에 설치된 향약을 하나로 통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15] 1571년(선조 4) 청주목사 재임 중에는 면에 해당하는 장내(掌內)와 그 아래 리에 각각 계장(契長)과 별검(別檢)을 둔[16] 서원향약을 직접 제정하였다. 그의 서원향약은 후대의 주현향약에서 '면' 단위를 근간으로 하는 면약·면계를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면약·면계의 경우 주현향약·동약에 비해 전승되고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아마 주현향약·동약과 비교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된 면약의 사례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1892년 경상도관찰사 이헌영(李鑢永)이 발급한 완문(完文)에서 언급한 다음의 대목이 주목된다.

> 하나, 차라리 면약소(面約所)가 없는 것은 가능하나, 도약소(都約所)가 없는 것은 불가하다. 혹 저지하려는 무리가 훼획(毁劃)에 마음을 품고, 분면(分面)의 계획을 야출(惹出)하면 결코 허락하거나 따르지 말 것이다.[17]

1891년 이헌영은 관내 열읍(列邑)의 수령에게 주현향약 시행을 지시했는데, 뒤이은 위의 완문에서 무리하게 면약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고을 하부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오히려 면약 시행을 빌미로 '분면' 시도를 획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령이 주도한 주현향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하부에 면 단위의 면약을 구상하기도 하지만,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은 정령을 내세워 무리하게 면약을 조직하지 않은 것이다.

굳이 '분면' 시도가 아니라도 면에는 다양한 세력과 계층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일정하지 않다. 장흥부 남면만 하더라도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남면-부서면(府西面)-남면-남상면(南上面)·남하면(南下面)-남면-용산면(容山面)'으로 변모해 왔다.[18] 또한 주현향약은 이익(李瀷)의 지적처럼 수령의 교체와 의지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19] 그 하부의 면약도 실질적인 운영과 유지가 힘들

12) 이수건,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338~339쪽.
13) 『經國大典』 卷2, 戶典, 「戶籍」.
14) 박경하, 「18세기 주현향약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174쪽.
15) 『栗谷全書』 卷13, 序, 「坡州鄕約序【庚申】」, "鄕約之設 匪今伊始 作輟不恒 有具無實 良由里各爲約 不統于州".
16) 『栗谷全書』 卷16, 雜著3, 「西原鄕約」, '條目', "每掌內 各置契長一人【淸州二十五掌內也】 … 每里 各置別檢".
17) 『敬窩集略』(下), 「嶠蕃集略」 4, '完文'.
18) 권수용, 「장흥 남면 면약의 특징」, 『장흥향약』 1 남면면약, 2024, 12쪽.
19) 『星湖僿說』 卷13, 人事門, 「江陵俗」, "近世作宰者 或行鄕約於邑中 率皆人去 而事廢終無所益".

었을 것이다. 이에 주현향약을 통해 실질적인 향정(鄕政) 개혁을 구상한 유형원(柳馨遠)과 안정복(安鼎福)은 면 단위의 면약을 생략하고 실제 향촌 구성원의 생활 범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동약·동계를 주현향약의 하부 단위로 설정하였다.[20] 때로는 그 절충으로서 1893년(고종 30) 전라도관찰사 김문현(金文鉉)의 지시로 순창군(淳昌郡)에서 시행된 주현향처럼 면약 아래에 동계를 두어,[21]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상도 확인된다.

이처럼 면약·면계는 지속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 그 때문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자료도 특정 시기 작성된 각 면의 약안(約案)·계안(契案), 또는 시행 주체인 지방관 발급의 절목류(節目類)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록 면약·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려할 사항이 있다. 바로 주현향약 시행 과정에서 면약·면계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주현향약의 시행 목적은 고을 백성의 자율적인 교화를 유도함으로써, 수령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각 고을에는 유사한 교화 기구가 존재하였다. 이미 향촌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향청(鄕廳)]가 향촌 교화를 명분으로 운영되었으며,[22] 관학인 향교(鄕校)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주현향약을 제정한다면, 무엇보다 기존 자치 기구와의 관계 설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향약 조직과 기존 자치 기구 간에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23] 주현향약의 하부조직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면리제 아래 '수령-면임(面任)-이임(里任)'으로 이어지는 행정 계통뿐만 아니라, 면에 따라서는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면약·면계 조직이 존재하였다. 이는 해당 향약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1893년의 이헌영이 주현향약을 지시하면서, 무리한 면약 편제를 경계한 것도[24] 이를 염두 한 결정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면리제 정착과 함께 등장한 개별 면약·면계 조직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주현향약의 면약으로 조직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기존의 자생적인 면약·면계가 주현향약 시행 후 그 하부 구조로 활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 다행히 우리 성주(城主) 유후(兪侯)[유주기(兪胄基)]께서 … 옛 의리를 깊이 연구하여 집강(執綱)을 세워 향약을 만들고, 그 조목을 나열하여 약조로 삼아 고을에 유시(諭示)하였다. 면이 열여섯 곳인데 이러한 뜻으로 진작시키고, 조목이 열둘인데 이러한 뜻으로 교화시켰다.[25]

위의 글은 1734년(영조 10) 장흥부 남면 면약의 약안 서문이다. 장흥부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향약

---

20)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鄕約事目」, "一 各鄕之內 又各以附近村里設契【卽俗所謂洞契 每二里合設一契 勿論士庶皆同契 置上下契長上下有司】."; 『臨官政要』, 時措, 教化章, "洞契之設 觀本面民戶之多少而定焉 假如一面五百家 則或半之爲二契 或三之爲三契".

21) 이문현, 「1893년 전라도 순창군 팔등면 향약의 재구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문 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 3, 국립민속박물관 2007, 97~102쪽; 황재영, 「1893년 순창군의 향약 실시와 인보조지의 강화」, 『한국사연구』 192, 한국사연구회, 2021, 214~215쪽.

22) 1517년경 『여씨향약언해』을 간행한 경상도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은 그 서문에서 각종 약임(約任)을 향임(鄕任)인 좌수(座首)·별감(別監)에 견주었다. 김문웅 역, 『역주 여씨향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1, 75~77쪽.

23)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984, 51쪽.

24) 주 17) 참조.

25) 1734년 「南面坊約案」, '面約序';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024, 55쪽. 남면 면약 자료 번역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024'을 참조한 것이다. 이후 남면 면약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한 경우, 자료명은 생략하고 해당 책자의 쪽수를 병기한다.

이 시행된 기록이 있지만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다.[26] 그런 가운데 새롭게 장흥현감(長興縣監)으로 부임한 유주기(兪胄基)[27]는 교화를 명분으로 주현향약을 시행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관내 각면에도 향약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면약은 수령의 관령에 따라 주현향약의 하부로 처음 조직되었다.

그런데 남면 면약은 1734년 이전에 이미 결성되어 있었다.

아! 우리 남면에 향약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지난 정해년[1707] 남면의 어른들이 관가에 아뢰고 면안(面案)에 관인을 찍고 집강(執綱)을 표시하여 약조를 만들었으나, …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주 곽후(郭侯)[곽정후(郭禎垕)]가 부임했는데, … 그리하여 온 고을의 선비들을 모아 진작시킬 급선무를 자세히 의논하고, 향에는 향강(鄕綱)을 만들고 면에는 면약을 만들어 집강을 표시하고 체문[帖文]을 내려 권면하였다.[28]

1764년(영조 40) 장흥부 남면 면약의 약안을 중수하면서 작성한 위의 서문에 따르면, 남면 면약은 1707년(숙종 33) 자생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707년 작성된 완의(完議)에는 면약의 결성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면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명분이 문란해졌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무릇 모든 요역(徭役)이 균등하지 못하고, 부지런히 이끌지 않기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다.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교화시키는 도리에서 어찌 별도로 건의할 규약이 없겠는가? 이에 한 면의 상하(上下)가 입을 모아 의견을 모으고, 폐단을 채취하여 대략 법조(法條)를 늘어놓고 집강을 분정(分定)하였다.[29]

위의 완의에 따르면, 1707년 남면에서는 풍속의 문란 원인을 요역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이에 면민이 뜻을 모아 향약을 시행하고, 별도의 약임을 임명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남면 면약은 강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부세 운영에서 면리임을 감독·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장흥부 남면 면민은 부세 운영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현향약 시행에 앞서 면약을 제정한 것이다. 그런 남면 면약은 후일 주현향약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레 그 하부인 면약으로 편제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지속성을 가진 면약·면계의 사례로 검토된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남면향약계(南面鄕約稧)와 동래부 사천면(沙川面) 동계[30]도 주현향약과 별개로 결성된 조직이다. 남해현 남면향약계는 1784년(정조 8) 면전(面錢)을 식리(殖利)하여 남면에 부과되는 부세를 공동납(共同納)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31] 동래부 사천면 동계는 결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관련 자료 중에서

---

26) 『長興府靑襟案』; 김희태, 앞의 논문, 2007, 40~41쪽.

27) 장흥은 1413년(태종 13)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1653년(효종 4)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일(『孝宗實錄』 卷11, 4年 25日(丁巳)), 1676년(숙종 2) 아들이 아비를 살해한 일(『肅宗實錄』 卷5 2年 2月 7日(己未))로 현으로 강등되고 현감이 파견되었다. 또한 1728년(영조 4) 무신난(戊申亂)에 연루되어 10년간 현으로 강등되었다(『英祖實錄』 卷47, 14年 1月 11日(甲子)). 유주기는 무신난의 여파로 장흥현으로 강등된 1733년 장흥현감으로 부임하였다.

28) 1764년 「南面坊約案」(87~88쪽), '面約序'.

29) 「完議」(41쪽).

30) 동래부에서는 면계를 동계로 불렀으며, 각면에는 그 명부인 동안이 있었다(진상원, 앞의 논문, 2024, 266쪽). 면리제가 정착한 후에도 면의 명칭은 면·방(坊)·리(里)·사(社)·동(洞)·촌(村)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되었다(이수건, 앞의 책, 1989, 70~71쪽).

31) 「面鄕約稧先生案」 第壹冊, '完文'; 이광우, 앞의 논문, 2015a, 243~244쪽.

가장 오래된 1612년(광해군 4)의 동안에 따르면 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위해 후포(帿布)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2]

특히 동래부에서는 1678년 동래부사에 의해 주현향약이 시행되면서 관내 각면에 면약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에 사천면에서는 주현향약 계열의 동계와 구성원 간 상호부조와 부세 운영을 위해 운영된 자생적 동계 조직이 한동안 양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3] 즉, 사천면에서는 자생적 동계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수령에 의해 주현향약이 시행될 때마다 그 하부의 면약인 동계가 결성된 것인데, 양 조직은 1872년에 이르러 하나의 동계로 통합된다.[34] 이처럼 장흥부 남면 면약, 경상도의 남해현의 남면향약계와 동래부의 사천면 동계는 모두 부세 운영과 상호부조라는 면민의 공통된 목적 아래 자생적으로 결성되었기에 주현향약 시행을 계기로 결성된 면약·면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지닐 수 있었다.

면약·면계의 결성 계기와 더불어 면 단위 향약과 계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남면 면약의 경우, 18~19세기에 작성된 7종의 약안과 4종의 수행안(隨行案)에는 일관되게 해당 조직을 면약 또는 방약(坊約)으로 언급하고 있다.[35] 반면, 남해현 남면향약계의 경우 결성을 주도한 남해 사족 하명홍(河命洪)의 행록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실천한 향약이었다고 하나,[36] 전승되고 있는 자료에서 향약을 표방한 가장 오래전 기록은 20세기 이후에야 확인된다.[37] 동계의 성격을 가진 '동' 단위의 결사 조직이 조선 후기 이후 주자증손여씨향약 규정의 접목을 통해 향약의 외피를 두르고 그 운영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하였듯이,[38] 남면향약계도 계로 시작했으나 어느 시기부터 자신들의 조직을 향약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의 사천면 동계도 18~19세기 주현향약의 하부로 편제되면서, 본격적으로 향약 정신을 표방하였다.

한편, 면계가 적극적으로 주현향약 하부에 편제되는 사례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은 관내 열읍에 향약 시행을 지시하였다. 이때 흥해부(興海府)로부터 주현향약을 계기로 동하면(東下面)·동상면(東上面) 2개 면에 면약이 결성된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동하면·동상면의 면약은 주현향약 시행으로 새롭게 결성된 것이 아니라, 식리를 통하여 부세 행정에 대응하던 면 단위의 집강계(執綱契)가 주현향약 시행을 계기로 면약으로 변모한 것이었다.[39] 이처럼 면계가 향약 조직으로 변모하거나 향약 정신을 표방해 가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면계도 '면' 단위 향약의 한 범주이자 조선 향약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

32) 「沙川面舊洞契座目」; 진상원, 앞의 논문, 2019, 312쪽.

33) 진상원, 앞의 논문, 2019, 312~319쪽; 앞의 논문, 2024, 262~263쪽.

34) 「戀舊契新座目」, '戀舊契新座目序'; 진상원, 앞의 논문, 2019, 319~326쪽.

35) 현재 약안은 1734·1764·1783·1796·1818·1832·1861년, 수행안은 1761·1788·1860·1899년에 성책된 것이 전한다. 한편, 용산경로당에는 남면 면약 자료 외에도 1831년 「長興府南面補民稧節目」(294쪽), 1845년 「南面補民稧追節目」(311쪽), 1846년 「南面補稧節目」(317쪽), 1847년 「長興府各人等查徵錢出給各面救弊節目」(332쪽)이 전하는데(한국학호남진흥원, 앞의 책, 2024), 남면 면약과 보민계 간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1832년의 「南面坊約案」이 1831년 보민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권수용, 앞의 논문, 2024, 20쪽), 보민계 자료에서 면약을 언급한 대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향약과 관계없이 장흥부사가 부세 마련을 위해 각면별 식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6) 『晉陽河氏大同文獻錄』 卷1, 「通政公行錄略」, 1969, "有倡設鄕約 … 先依藍田之條例 次倣退陶之約規 古今之有宜異者 增損之".

37) 「契規」. 第一編 第一章 總則; 이광우, 앞의 논문, 2015a, 252~253쪽.

38) 이광우, 「조선 시대 향약의 유형과 특징 -주현향약·면약·동약, 시행 단위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8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25, 211~215쪽.

39) 『石荷集』 卷9, 序, 「興海東下面約契案序」; 「東上面約契節目序」; 이광우,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의 향약 시행과 그 성격 -19세기 후반 관찰사 주현향약의 한 사례-」, 2015b, 256~257쪽.

3. 주현향약과 남면 면약의 변화

면약·면계는 면민의 공통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되기도 하지만, 주현향약이 시행될 때는 그 하부에 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현향약은 수령의 권위 강화, 향정 개혁, 정부의 지시 등 다양한 계기로 시행되었다. 그런 경우 수령이 직접 제정한 조직 체계를 고을과 각면에 하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면약·면계의 운영 체계와 구조는 주현향약의 시행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현재 전승되는 장흥부 남면 면약의 약안 대부분은 주현향약 시행을 계기로 중수된 것이다.

장흥부 남면 면약은 1707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때 집강을 분정하였다. 남면 면약에서 약임은 '집강'으로 총칭되는데, 제정 당시의 약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하나. 공사원(公事員) 2인과 각 리(里) 별유사(別有司)는 1년마다 교체한다.
> 하나. 약정(約正) 이하 감관(監官)·면장(面將)·산직(山直) 등은 집강이 풍헌(風憲)과 서로 의논해서 차정(差定)할 사람을 보고한다.[40]

남면 면약의 약임은 자치 계통과 풍헌으로 대표되는 면임의 행정 계통이 의논해서 선발하였다. 이때 약정과 공사원은 면약의 일을 맡은 약임이며, 감관·면장·산직은 구체적인 임무가 나오지 않으나 행정 계통과 함께 면의 부세·치안·금송(禁松)의 일을 맡는 직임으로 추정된다. 당시 남면 면약은 관부의 허가를 받아 약임을 임명했지만, 자치적 기능을 바탕으로 행정 계통과 함께 면의 대소사를 관리한 것이다.

남면 면약은 1732~1733년 흉년으로 거의 폐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41] 이때 새로 부임한 장흥현감 유주기가 주현향약을 시행하면서, 남면 면약처럼 향약을 운영하던 면은 향약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향약이 없었던 면은 향약이 새롭게 조직되었다.[42] 같은 해 1월 장흥의 유학(幼學) 위세봉(魏世鳳)은 상소를 올려 호남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여씨향약을 따라 방약을 세울 것을 청원하였다.[43] 1724년 장흥현감 유주기의 주현향약 시행은 위세봉의 상소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44]

> 하나. 면의 사무를 관장하는 아전들이 관의 일을 빙자하여 양반을 깔보고 서민을 침해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 이런 횡행하는 무리는 면에서 일제히 모여 징계하여 다스리고, 심할 경우 관에 알려서 엄히 다스려 징계할 바탕으로 삼을 일.[45]

1734년 주현향약을 시행하면서 유주기는 면약의 임무를 규정한 '관하12조(官下十二條)'를 각면에 발급하였다. 그 12개 조목 중에서도 위의 조항은 면약 조직에 부여한 강력한 통제 권한이다. 실제 18세기에는 수령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면을 기간으로 하고 향교 조직을 활용해서 고을 백성을 적극적으로 통제

---

40) 「完議」(41쪽).
41) 1764년 「南面坊約案」(86쪽), '面約序', "而連値壬癸之凶 幾至此約之廢矣".
42) 1764년 「南面坊約案」(86쪽), '面約序', "則前日有約之面 其約也 於是乎大振 前日無約之面 是約也 於斯焉創始".
43) 『英祖實錄』 卷37, 10年 1月 12日(己丑).
44) 김희태, 앞의 논문, 2007, 45~46쪽.
45) 1734년 「南面坊約案」(57쪽), '官下十二條'.

및 교화하는 주현향약이 활발하게 제정되는데,[46] 장흥현감 유주기의 주현향약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폐지될 위기에 처한 남면 면약도 진작되었으며, 구체적인 절목은 확인되지 않으나 약임 조직과 권한도 '관하12조'에 맞추어 개편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8세기 이후부터 근대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의 주현향약 제정 빈도는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수령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봉건 정부와 유림 세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주현향약 대부분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수령이 교체되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47] 따라서 실제 주현향약의 제정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고을에서 향약의 시행과 재개가 거듭되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유후(兪侯)[유주기]가 체직되어 돌아간 뒤로는 관청에서 신칙하는 일이 없고, 면에는 해이해지는 폐단이 생겼다. 비록 방약이라는 허명은 남았지만 실제로 조목이 시행되는 일은 없다.[48]

위의 서문은 1764년 새롭게 작성된 남면 면약의 약안 서문으로 변석후(邊碩厚)가 쓴 것이다. 이 서문처럼 장흥에서도 유주기가 이임하자, 1734년의 향약은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유주기는 방약 시행을 건의한 위세봉의 상소와 정부에서의 논의에 편승해 면약에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한 '관하12조'를 제정하였지만, 그가 이임한 후 관련 규정의 지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서문에서 "실제로 조문이 시행되는 일이 없다."라는 대목도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장흥부사 곽정후가 1764년 주현향약을 다시 제정하고 관내 각면에 면약 제정을 지시하였다.[49] 남면 면약도 이에 맞추어 약안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더불어 약임의 명부인 「집강수행안(執綱隨行案)」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현재 남면 면약에는 4종의 조선 후기 수행안이 전승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1761~1831년의 「집강수행안」이다. 여기에는 남면 면약의 약임이 도유사(都有司) 1인, 공사원 2인, 유사 2인, 직월(直月) 2인 체제인 것으로 나타난다.[50] 1707년의 완의처럼 행정 계통과 연계된 약임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1783년에 이르러 남면 면약에서는 약안인 「남면방약안」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 해의 남면 면약은 정조의 윤음(綸音)이 계기가 되어 정비되었다.[51] 그해 장흥부사로 부임한 신대곤(申大坤)은 정조의 윤음으로 효유(曉喩)하였고, 남면 면약은 그것을 받들어 약안과 규정을 함께 개정하였으며, 이를 관아에 보고한 후 향약을 새롭게 시행하였다.[52] 다만, 신대곤의 효유가 향약 시행을 지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9세기 이후 장흥부에서 주현향약의 시행과 재개가 거듭된 사실은 다른 면의 면약 자료를 통해 확인

---

46) 박경하, 앞의 논문, 1990, 175쪽.

47) 이광우, 앞의 논문, 2025, 206~207쪽.

48) 1764년 「南面坊約案」(87쪽), '面約序'.

49) 주 28) 참조.

50) 1761년 「執綱隨行案」(202~221쪽).

51) 1783년 정조는 1월 1일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正祖實錄』 卷15, 7年 1月 1日(癸巳)), 4월 1일 요역 감면과 환곡 탕감에 관한 윤음(『正祖實錄』 卷15, 7年 4月 1日(辛酉)), 9월 7일 구휼에 관한 윤음(『正祖實錄』 卷15, 7年 9月 7日(乙未))을 내렸다.

52) 1783년 「南面坊約案」(105쪽), '面約序', "猗歟 我聖上自臨御以來 以正名分振紀綱 爲大頭腦 誕降綸綍 不啻若面命而耳提 矧今城主申候下車之初 奉承大訓 丁寧曉喩 … 玆乃一從面議 仍循舊約 舊約之未盡者 補以新條 告于官家 布于民間".

할 수 있다.[53] 이와 관련해 「부산면안(夫山面案)」은 1801년(순조 1) 장흥부 부산면에서 결성된 면약 자료인데, 그 범례에 따르면 고을에는 도훈장(都訓長) 1인, 부훈장(副訓長) 1인, 직월 2인, 각면에는 훈장 1인, 직월 1인, 각리에는 훈장 1인을 둔다고 하였다.[54] 당시 장흥부사의 지시에 따라 주현향약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치면의 면약 자료인 「유치중도향약(有治中道鄕約)」에는 1822년 장흥부사가 주현향약을 시행하면서 관내 각면에 면약 조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55]

주현향약은 고을의 전통과 수령의 의지에 따라 고을별로 시행되었지만, 19세기 후반에는 관찰사의 정령 아래 1도 전역에 주현향약이 시행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56] 특히 1890년대 후반 정부 당국자와 관찰사는 전라도에서 발호한 동학(東學)을 통제하기 위해 향약을 주목하게 된다. 이에 1893년 민씨 정권은 전라도에 향약 시행을 지시하고,[57] 전라도관찰사 김문현(金文鉉)이 다시 관내 열읍에 향약 시행을 지시하였다.[58] 당시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는 전라도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증주향약금증보유부(增註鄕約今增補遺附)」를 각면에 하달함으로써 면약이 조직되었다.[59] 그런 취지를 이어받아 1899년(광무 3)에는 장흥군수 김택규(金宅圭)가 주현향약을 시행하기 위해 각면에 「향약부칙(鄕約附則)」을 배포하였으며,[60] 1902년에는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李根澔)가 동학농민전쟁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바로 잡고자 장흥군을 비롯한 관내 열읍에 주현향약인 보민향약(保民鄕約) 시행[61] 지시하였다.[62]

1893·1899·1902년의 주현향약에서 하부로 편제된 면약의 약임은 다소 차이가 있다. 1893년 면약은 도약정 1인, 부약정 1인, 직월 1인 체제이며, 1899년 면약은 1893년 약임에 훈장 1인과 사강(司講) 2인이 추가되었다. 1902년은 직월 1인, 약장 1인, 부약장 2인 체제이다.[63] 특히 1899년 장흥군수 김택규는 강학을 통해 동학으로 대표되는 이단의 횡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훈장과 사강을 약임으로 두었다.[64]

이처럼 18세기 이후 수령과 관찰사의 지방 통치, 그리고 정부의 교화 정책에 따라 장흥에서는 여러 차례 주현향약이 시행되었다. 이때 주현향약의 시행 주체인 수령은 면약의 조직을 지시하게 되는데, 남면에는 1707년부터 자발적으로 운영된 면약이 있어서 주현향약을 시행할 때마다 자연스레 그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었다.

---

53) 조선 후기 장흥부는 16~20개면으로 구성되었는데, 남면을 제외하고 용계면·부산면·장서면·유치면·안양면·고상면·부동면·웅치면·대흥면의 면약 자료가 단편적으로 전한다. 김희태, 앞의 논문, 2007, 35쪽.

54) 「夫山面案」, 卷1, '鄕約凡例'; 김희태, 앞의 논문, 2007, 57쪽.

55) 「有治中道鄕約」, '面約序'; 김경옥, 「19~20세기 장흥 유치상포계의 조직과 운영」, 『인천학연구』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8, 42~43쪽.

56) 1797년 정조는 향음주례(鄕飮酒禮)·향약 등 각종 향례(鄕禮)를 수록한 『향례합편(鄕禮合編)』을 반포하면서, 관찰사와 수령에게 향례 거행을 장려하였다(『正祖實錄』 卷46, 21年 6月 2日(辛未)). 『향례합편』 반포는 이후 지방관이 향약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57) 황현 저, 김종익 옮김, 『오하기문』, 1994, 역사비평사 67~68쪽, "얼마 후 민영준(閔泳駿)이 거론하기를 '동학이 번진 것은 풍속이 무너진 데 그 원인이 있다.' 하면서, 경상·전라 양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전라도 지방은 향약법을 시행하고, 경상도 지방은 향음주례를 시행케 하였다.".

58) 전라도관찰사 김문현의 향약 시행은 '한미라, 「1893년 전라도관찰사 김문현의 향약 시행과 운영 구조」, 『중앙사론』 5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1' 참조.

59) 백지연·박경하, 앞의 논문, 2021, 111~113쪽.

60) 백지연·박경하, 앞의 논문, 2021, 113~114쪽.

61)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보민향약 시행은 '백지연, 앞의 논문, 2022' 참조.

62) 남면에는 1902년 작성된 「南上保民約規」(334~366쪽)가 전한다.

63) 백지연·박경하, 앞의 논문, 2021, 116쪽.

64) 「鄕約附則」, 백지연·박경하, 앞의 논문, 2021, 117쪽.

이와 관련하여 1783년 작성된 약안의 추서(追敍)에서 다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오직 남면 1면만 50여 년간 형식을 보전하여 옛일을 징험할 수 있으니, 완전히 폐지된 다른 면에 비하면 현명할 뿐만이 아니다. 평소 부러워하며 오늘이 있기를 기다렸다. 본 면의 사람들은 조정의 백성을 가르치는 윤음으로 인하여 다시 합의하고 손질하였으니, 다른 면에 비하면 더욱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65]

위의 추서는 당대 장흥을 대표하는 유학자 위백규(魏伯珪)가 쓴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흥 관내의 여러 면중에서도 1783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남면만 면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1734년의 장흥현감 유주기와 1764년의 장흥부사 곽정후는 주현향약을 시행하면서 관내 각면에 면약 조직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수령의 이임과 함께 주현향약도 중단되고, 면약도 폐지된 것이다. 남면만 면약이 존치된 까닭은 애당초 남면 면약이 주현향약과 관계없이 면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경향은 약임의 체계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흥에서 주현향약이 시행될 때마다 수령은 일률적인 약임의 체계를 각면에 하달하게 되는데, 남면 면약의 약안과 약임안에는 하달된 것과 달리 고유의 약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66] 주현향약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직된 다른 면약과 비교해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주현향약이 시행될 때마다 그 하부에 편제되었지만, 남면 면약처럼 면민의 공통된 이해를 대변하는 면약·면계가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4. 운영과 성격

1. 면임 및 행정 계통과의 관계

면약·면계의 지역적 범위는 면리제 하의 '면'이다. 면내의 면민(面民)을 대상으로 해당 조직의 운영 목적에 따라 교화·교육, 상호부조, 부세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면에는 행정 계통의 면임이 있어, 면약을 시행할 때 중복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면약·면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선 면약·면계와 면임 간의 관계가 해당 면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 면리제가 정착되지만, 면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듯이 면리임의 명칭도 일정하지 않다. 면임의 경우 직책에 따라 풍헌·약정·유사·집강을 비롯해 호적유사(戶籍有司)·검독(檢督)·도장(都將)·훈장(訓長)·향약정(鄕約正)이 있는데,[67] 그 성격은 면마다 일정하지 않아 '이칭동직(異稱同職)'과 '동칭이직(同稱異職)'을 고려해야 한다. 장흥부에서 면약의 약임으로 등장하는 집강·약정·훈장·유사는 면에 따라 면임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면약은 면의 교화를 책임지는 조직이다. 자치와 교화 계통이기 때문에 면임의 행정 계통과 업무를 달

65) 1783년 「南面坊約案」(108쪽), '追敍'.

66) 대체로 1761~1831년에는 도유사 1인, 공사원 2인, 유사 2인, 직월 2인(「執綱隨行案」(202~221쪽)), 1860년 이후에는 도정(都正) 1인, 직월 1인, 직일 2인(「隨行案」(240~252쪽); 「隨行案」(253~274쪽)) 체제가 유지되었다.

67)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35~42쪽.

리한다. 그러나 주현향약을 시행하면서 면약에 행정 계통을 대신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이 부여되면, 두 계통 사이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 남면 면약의 여러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설립 초기에는 행정 계통을 통제하는 규정이 확인된다.

> 하나. 면임들이 만일 민간에 폐를 끼치는 경우, 집강과 풍헌이 죄를 다스리고 보고하여 교체한다.
> 하나. 면주인(面主人)들이 민간에 폐를 끼치면 관에 보고하여 교체한다.
> 하나, 집강과 풍헌이 만일 혹 조심스럽지 못하면 모두 모여 벌을 논한다.[68]

위의 규정은 1707년 제정한 완의에 수록된 것이다. 여기서 집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면 면약 설립 초기에 여러 약임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인된다. 풍헌은 면임의 대표이며, 면주인도 행정 계통인데, 완의에는 면약이 직접적으로 통제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풍헌은 약원의 공론을 모아 벌을 논할 수 있으며, 그 아래 면임의 비행은 면약의 약임과 풍헌이 논의하여 다스릴 수 있다. 향리와 연결된 면주인의 비행은 직접 관에 보고해서 처리하면 된다.

1707년 남면의 유력 계층은 기강의 문란이 요역의 불균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였다.[69] 이에 면내의 부세 운영을 담당하는 면임 계통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면약을 조직한 것이다. 당시 완의가 실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발휘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관부가 개입하지 않고 면약 자체에서 제정한 규정인 만큼, 남면에 세거하는 재지사족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1734년 장흥현감 유주기가 주현향약을 시행하면서, 남면 면약은 그 아래에 편제되었다. 유주기의 주현향약 시행은 앞서 면약을 향정 개혁의 수단으로 제시한 위세봉의 상소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약조보다 면임에 대한 강력한 통제 조항이 확인된다.

‘관하 12조’

하나. 면의 사무를 관장하는 아전들이 관의 일을 빙자하여 양반을 깔보고 서민을 침해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 이런 횡행하는 무리는 면에서 일제히 모여 징계하여 다스리고, 심할 경우 관에 알려서 엄히 다스려 징계할 바탕으로 삼는다.

하나. 아전들과 중인들이 말을 타고 양반 마을을 누비며 달리니, 이 또한 불경함이 심하다. 풍습이 아름답지 않으므로 역시 면에서 징치(懲治)하도록 한다.

‘면보 15조’

하나. 간사한 서원(書員)과 횡포한 면임(面任), 면주인들로서 민간에 해를 끼치는 자는 각별하게 죄를 다스린 후 관에 알려 교체한다.[70]

1734년의 면약 규정 중 ‘관하15조’는 장흥현감 유주기가 제정하여 각면에 하달한 것이고, ‘면보15조’는 남면 면약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당시 장흥현감 유주기는 위세봉의 상소대로 실제 면약이 향정 개혁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15조’를 통해 면

68) 「完議」(41쪽).
69) 주) 29 참조.
70) 1734년 「南面坊約案」, ‘官下十二條’(57쪽); ‘面補十五條’(58쪽).

임의 비행을 직접 처벌할 뿐만 아니라, 면임과 중간 계층의 행실을 통제하는 권한을 관내 각면에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남면 면약은 서원과 면주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면보15조'를 제정해 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면약이 면임으로 대표되는 면의 행정 계통을 직접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수령이 면약 규정을 직접 제정하고 관령을 바탕으로 강력한 통제 권한을 면약에게 부여할지라도, 그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운영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더구나 수령 교체 후 직전의 주현향약이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약에 부여된 권위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1764년 무렵에는 남면 면약을 제외한 모든 면약이 폐지되었고, 해당 규정은 조문으로만 남아 있었다.[71] 그런 관계로 장흥부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남면 면약 조차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행정 계통을 언급한 규정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1783년의 「남면방약안」에는 '관하12구조(官下十二舊條)'와 '면보15구조(面補十五舊條)'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1734년 장흥현감 유주기가 주현향약을 시행할 때 제정된 약조인데, 당시 남면 면약에서 실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구조(舊條)'라고 지칭되어 있듯이, 옛적 남면 면약의 높은 권위와 이를 뒷받침한 강한 통제 권한을 후대의 약원이 상기하기 위해 수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시행된 주현향약에는 고을과 면리 단위의 향약마다 부과된 직무 규정이 매우 상세한 편이다. 예컨대 1902년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지시로 관내 열읍에 보민향약이 시행되는데, 그 규정을 담은 '보민향약속목(保民鄕約續目)'에는 조목의 내용이 관약(官約)·면약·벌약(罰約)·강약(講約)·추약(追約)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14개조로 구성된 면약에는 면임을 통제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언급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장흥군에서는 이근호가 제정한 보민향약에 추가하여 별도로 '향약보유절목(鄕約補遺節目)', '약규조직(約規組織)', '약서조례(約誓條例)'를 운영하였는데, 약원에 대한 자기 규제 조항만 있을 뿐 면임을 비롯해 행정 계통에 관한 언급은 없다.[72] 다만, '보민향약속목'의 면약 마지막 조항에 사족을 능멸한 이속(吏屬)을 관에 고발하여 엄벌을 청원하라는 규정과[73] '향약보유절목'에 약원에 대한 엄격한 자기 규제 조항만[74] 수록해 놓았다.

즉, 19세기 후반 이후 장흥에서 시행된 주현향약은 면약으로 대표되는 자치 계통과 행정 계통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75] 조선 후기 수령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재지사족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는 약화되었다. 더불어 수령은 주현향약을 통해 종전에 재지사족 층이 주도하던 자치 시스템마저 장악해 나갔다. 반면에 재지사족은 행정 계통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권한을 점차 상실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면약·면계의 기능은 행정 계통과 뚜렷이 구분되기에 이른다.

2. 면약·면계와 상하합계(上下合契)

조선 후기 면에는 여러 계층이 거주한다. 재지사족 층은 향촌 지배를 위해 성리학의 자치 규범인 향약을 시행하였다. 대체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 단위에서 동약·동계를 시행하였지만, 만약 이해

71) 주 48) 참조.

72) 「南上保民約規」(334~366쪽).

73) 「南上保民約規」(337쪽), '保民鄕約續目', 面約, "吏胥奴令輩 橫行閭里 侵索平民者 報官嚴繩事".)

74) 「南上保民約規」(340쪽), '鄕約補遺節目', "一 毋論約外之人 雖各面里約任 憑藉約規 脅殘凌弱 至或討酒覓食 抑人取貸 搆成罪名 假手雪憤者 卽地報官嚴究事".

75) 비슷한 시기 경상도 밀양부의 주현향약에는 적어도 19세기 전반까지 명목상으로나마 도약정·부약정·면약정 같은 약임이 고을의 교임(校任)·원임(院任)·면리임 추천에 개입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1889년 기축장정(己丑章程)이라 알려진 주현향약에는 면약에 대한 우대 조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광우, 「조선시대 경상도 밀양도호부 지역 향약의 변천」, 『인문논총』 37,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c, 25~26쪽.

관계가 일치한다면 그보다 규모가 큰 '면' 단위에서 향약이 실천되었다. 이런 경우 향약을 주도하는 재지사족은 하층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구성원을 신분적으로 구분하고 향약이 진행하는 공동체 사업의 부담과 혜택에 차등을 두는 상하합계를 운영하였다.

남면 면약처럼 자생적으로 시작한 면약·면계이든, 주현향약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제정된 면약·면계이든 간에 시행 범위는 면이다. 이에 면약·면계를 주도하는 계층은 재지사족 뿐만 아니라, 하층민의 참여와 통제를 고려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남면 면약은 설립 당시부터 상하합계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1707년 완의에는 기강 문란의 원인인 부세 운영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한 면의 상하(上下)가 의견을 모아 약조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76]

이어 1734년 면약을 새롭게 정비할 때 서문을 작성한 이희증(李希曾)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면이 16개인데, 이러한 뜻으로 진작시키고, 조목이 12개인데, 이러한 뜻으로 교화를 시켰다. 집마다 찾아가서 설득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을 전하였으니, … 아! 우리 면의 노소와 아래의 하인과 미천한 사람들도 과연 방약의 뜻을 알겠는가? … 어찌 명분을 급선무로 삼지 않을 것인가?〈?〉[77]

남면 면약을 주도한 계층은 이를 통해 면내의 상하 질서를 엄격히 함으로써, 재지사족 중심의 지배 질서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확고히 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는 '관하12조'의 마지막 조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 하나. 의복의 제도에는 본래 등급이 있으니, 도포(道布)와 당혜(唐鞋)는 선비인 양반이 아니면 감히 입고 신지 못하거늘, 근래 명분이 문란해져서 중인·서자·상놈 중에 향교와 서원의 생도도 아니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모두 도포를 입고 당혜를 신고 있다. 심지어 군보(軍保)·사노(私奴)·포한(浦漢)·점맹(店氓) 등도 모두 늘 착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 낱낱이 면에서 회의하여 금지하는데, 만약 향약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금령을 무릅쓰고 착용하는 자가 있다면 지명해서 관에 알려 엄히 다스리는 바탕으로 한다.[78]

'관하12조'는 1734년 장흥현감 유주기가 주현향약을 제정하면서 각면에 하달한 것인데, 여기에는 위의 조목처럼 하층민의 의복을 엄격히 통제하는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비록 남면 면약에서 직접 제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향약을 신분 질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재지사족 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남면 면약은 하층민을 하계로 분류한 후 약원으로 참여시켰는데, 1734년 이후 작성된 약안에는 상하인 간의 구분을 뚜렷이 하였다.

남면 면약의 상·하계 구분을 현재 남아 있는 약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1734년 「남면방약안」은 상계 163명, 하계 330명, 1764년 「남면방약안」은 상계 193명, 하계 130명, 1796년 「남면면안」은 상계 227명, 하계 89명, 1832년 「남면방약안」은 상계 250명, 하계 110명, 1861년 「남면면안」은 상계 230명, 하계 130명으로 나타난다.[79] 각 약안의 좌목에서 하계는 상계보다 단을 낮추어 기재되어 있다.

---

76) 주 29) 참조.

77) 1734년 「南面坊約案」, '面約誓'(55쪽).

78) 1734년 「南面坊約案」, '官下十二條'(57~58쪽).

79) 권수용, 앞의 논문, 2024, 24~26쪽.

또한 약안의 좌목은 약원이 거주하는 리 별로 구분해 놓았다. 18~19세기 남면은 20~30여 개의 리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상계만 거주하는 리, 상계·하계가 모두 거주하는 리, 하계만 거주하는 리, 상계·하계가 전혀 없는 리로 나눌 수 있다.[80] 리 중에서는 상금곡(上金谷)[지금의 금곡리]에서 가장 많은 약임을 배출하였다.[81] 전통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흥을 대표하는 재지사족 성관은 수원백씨(水原白氏)·영광김씨(靈光金氏)·인천이씨(仁川李氏)·남평문씨(南平文氏)·장흥위씨(長興魏氏)인데, 그중에서도 상금곡에는 수원백씨와 영광김씨가 세거하고 있다.[82] 특히 수원백씨는 남면을 대표하는 성관이다.[83] 이를 통해 남면에서는 약원과 비약원, 같은 약원이라도 상계와 하계 간의 구분이 가능하며, 나아가 리 간의 위계와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합계 형식은 남면 면약처럼 지속성을 가진 면약·면계에서도 나타난다. 남해현 남면향약계의 계안에는 하계 좌목이 따로 없지만, 계임으로 사령(使令) 등 잡무를 담당하는 도장무(都掌務)를 1784년부터 1912년까지 두고 있으며, 좌목에서는 홀로 단을 낮추어 기재해 놓았다.[84] 도장무는 비사족 계층의 대표로 보이며, 이를 매개로 면내 하층민을 통제한 것이다. 동래부 사천면 동계의 경우 주현향약 하부로 편제된 향약 계열의 동계와 그렇지 않은 계열의 동계가 17~19세기 동안 양립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중에서도 전자를 상계, 후자를 하계로 파악하고 있다.[85] 이처럼 장흥부 남면 면약은 구성원 간의 지위를 구분하는 상하합계 형태를 유지하며, 전통적 가치와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지속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존속한 것이다.

3. 부세 행정

향약은 향촌 교화를 명분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수령의 통치 행위 보조, 재지사족 중심의 신분 질서 확립과 유지, 상호부조, 부세 행정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상호부조와 부세 행정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재원의 흐름을 통해 실질적인 향약 운영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향약 시행자들은 상호부조 및 부세 행정과 관련된 기능을 향약의 강령 중에서도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실천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가운데 '면' 단위로 시행되는 면약·면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능으로 부세 행정이 주목받은 것이다.

'완의'

하나. 면중의 통역(統役)과 소민(小民)의 연역(烟役)에 관한 일은 상의하여 균등하게 정한다.

'추완의(追完議)'

하나. 전선(戰船)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하고 목재를 운반하는 등의 일은 원래 모두가 함께 하는 역이니,

80) 김희태, 앞의 논문, 1994, 68~69쪽; 앞의 논문, 2007, 55~56쪽.

81) 김건태,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9, 16쪽.

82) 『長興邑志』, 南面坊, 姓氏; 김희태, 앞의 논문, 1994, 68쪽.

83) 이용기,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동계와 마을자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서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84) 「面鄕約稧先生案」 第壹冊; 이광우, 앞의 논문, 2015a, 233~234쪽.

85) 진상원, 앞의 논문, 2024, 267~270쪽.

점사(店舍)와 포촌(浦村)을 막론하고 면임은 그 호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역을 균등히 한다.[86]

1707년 남면 면약은 요역의 균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면임을 비롯해 부세 행정 계통을 통제하는 완의를 제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위의 완의 조목은 남면 면약의 적극적인 부세 행정 권한이다. 즉, 면약이 '면중(面中)'을 대표하여 남면 각 민가에 부과되는 부세와 잡역을 조정할 수 있었다. '추완의'에서 언급된 전선 수리와 목재 운반 관련 잡역도 면약이 할당하였다. 1734년의 '면보15조'에서는 해당 규정이 "면에서 통호(統戶)의 부역과 대소(大小) 향도(香徒)의 부역은 서로 의논하여 분담한다."[87]라는 조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부세 행정 담당은 주현향약의 하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한 면약·면계가 장기간 설립 및 유지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해현 남면면약계는 면에 부과되는 각종 부세를 공동납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면약·면계이다.[88] 동래부 사천면 동계도 적극적인 부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752년 절목에 따르면 동계가 각종 잡역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좌목에 오른 이들의 요역을 감면해 주는 특권도 행사하였다.[89] 또한 사천면 동계는 설립 초부터 근 100여 년 동안 신구 동래부사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였었다.[90]

그런데 장흥부의 남면 면약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로 부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계통의 면임을 감독 및 통제하고, 각종 연호잡역(煙戶雜役)을 관리하는 규정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자치 계통과 행정 계통의 기능이 수령권 강화와 함께 엄격히 구분되면서, 어느 시기 해당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문인지 남면 면약은 재원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1788년 「면약수행안(面約隨行案)」의 '각리본조수합기(各里本租收合記)'에는 면내 각리를 대상으로 식리한 돈과 조(租)가 기재되어 있는데,[91] 그 수익은 '강신(講信)' 때만 지출하고 있다.[92]

이는 남해현 남면향약계와 동래부 사천면 동계와 비교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남해현 남면향약계와 동래부 사천면 동계는 부세 기능을 바탕으로 장기간 존속될 수 있었다. 반면, 장흥부 남면 면약은 조직 때부터 근대 이행기까지 상하합계의 형태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즉, 남면 면약은 앞선 두 면약·면계와 비교해 면내 신분 질서를 확인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며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5. 맺음말

본 발표문에서는 조선 후기 면약·면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전라도 장흥부 남면 면약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향약은 성리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향촌 자치 규약인데, 조선에서

86) 「完議」(41~42쪽).

87) 1734년 「南面坊約案」(54쪽), "一 面中統役及大小香徒之役 相議分定事".

88) 주 31) 참조.

89) 「洞案」, '節目'; 진상원, 앞의 논문, 2019, 316~317쪽.

90) 「戀舊契新座目」, '戀舊契新座目序'; 진상원, 앞의 논문, 2019, 319~320쪽.

91) 1788년 「面約隨行案」, '各里本租收合記'(223~224쪽).

92) 1788년 「面約隨行案」, '約條'(224~225쪽), "一 講信日 有司與講信會所里 里人相議 出錢二兩 以備酒肴事"; '追約'(225쪽), "右完約 爲年年講會會所 貽弊不些 自明年爲始講會 以三兩錢都下 以此略具盃酌 此外切勿加費".

는 주현향약·면약·동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갔다. 특히 면 단위의 면약·면계는 행정 단위와 결합한 조선 향약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사례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서 기존 연구에서 규명된 면약·면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수령 주도로 시행된 주현향약의 하부조직으로 조직된 경우이며, 하나는 면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된 경우이다. 1707년 면의 요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장흥부 남면 면약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후 장흥부에서 주현향약이 시행될 때 남면 면약은 자연스럽게 그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었다.

조선 후기 이후 장흥부에서는 여러 차례 주현향약이 시행되었으며, 그때마다 수령의 지시로 관내 각 면에 면약이 결성되었다. 그런데 장흥부의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간 존속한 것은 남면 면약이 거의 유일하다. 조선 후기 여러 지역에서 주현향약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수령이 교체되면 주현향약과 함께 면약도 중단되었다. 반면 남면 면약은 면민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주현향약과 관계없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장흥부 남면 면약과 비교한 경상도 남해현의 남면향약계와 동래부 사천면의 동계도 면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장기간 존속해 온 면약·면계이다.

이러한 면약·면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 계통인 면임과의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남면 면약의 경우 면에 부과되는 요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그 때문에 남면 면약은 설립 초기 면임을 비롯한 행정 계통을 감독·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면에 부과되는 각종 잡역을 할당하는 권한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수령권이 강화되고 향촌 사회 구조가 변화하자, 행정 통제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교화 중심의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특히 남면 면약은 상하합계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면내 신분 질서를 확인하는 매개체로 작동하였다.

이처럼 남면 면약과 같은 면약·면계 조직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성과 구체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한 향약이 조선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를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므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덧붙여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된 면약·면계의 사례가 현재 해읍(海邑) 위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 특수성과 관계된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한 남면 면약과 함께 사례로 검토한 면약·면계 모두 20세기 후반까지 향약의 전통을 유지하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적 조직 체계와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도 주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光州牧誌』
『長興邑志』
『栗谷全書』
『磻溪隨錄』
『星湖僿說』

『敬窩集略』
『晉陽河氏大同文獻錄』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 1, 2006
김건태,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9
김경옥, 「19~20세기 장흥 유치상포계의 조직과 운영」, 『인천학연구』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8
김문웅 역, 『역주 여씨향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1
김용덕, 「향음례고 -성종대의 향약에 대하여-」,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_____, 「조선후기의 지방자치 -향청과 촌계-」,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1989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김희태, 「조선후기 호남의 향촌면약에 대하여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4
「조선후기 장흥부 남면 면약의 시행배경과 내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류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진단학회, 1938
백지연, 「1902년 전라남도 保民鄕約의 운영과 특징」, 『역사민속학』 63,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가
백지연·박경하, 「19세기 후반 전라남도 장흥군 주현향약의 성격」,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이광우, 「1784~1945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향약계의 성격 -면약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의 향약 시행과 그 성격 -19세기 후반 관찰사 주현향약의 한 사례-」, 2015
「조선시대 경상도 밀양도호부 지역 향약의 변천』, 『인문논총』 37,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 『동아인문학』 39, 동아인문학회, 2017
「조선 시대 향약의 유형과 특징 -주현향약·면약·동약, 시행 단위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8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25
이문현, 「1893년 전라도 순창군 팔등면 향약의 재구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문 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 3, 국립민속박물관 2007
이수건,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이용기,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동계와 마을자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서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3
장흥문화원, 『장흥 향약 모음』, 1994

진상원, 「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사상면) 동안 연구를 위한 예비적 검토」, 『향도부산』 37,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9
「17·18세기 동래부 사천면 면계의 성격변화」, 『향도부산』 4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3
「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의 주민자치 조직과 주현향약」, 『향도부산』 4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4
한국학호남진흥원, 『장흥향약』 1 남면면약, 2024
한미라, 「1893년 전라도관찰사 김문현의 향약 시행과 운영 구조」, 『중앙사론』 5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1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984
황재영, 「1893년 순창군의 향약 실시와 인보조지의 강화」, 『한국사연구』 192, 한국사연구회, 2021

2026
동아시아의
향약국제학술대회

토 론 문





「조선시대 향약 이해의 몇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문

박현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심재우선생님께서는 근래 향약·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향약·계에 대한 연구사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은 향약 연구의 쟁점에 대해 검토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당히 지난한 작업을 기꺼히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새삼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향약 연구는 그 연원이 식민지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그만큼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향약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사족지배체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사회사 연구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자들 사이의 시각 차이도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새삼 심재우선생님과 저 사이의 시각차도 읽을 수 있어서 흥미로왔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향약 이해에서 확인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런 시각 차이를 드러내면서 쟁점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먼저 "향약"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장에서 향약의 개념을 논하는 가운데 '주자증손여씨향약'(이하 '주자향약'으로 칭함)'이 변형된 형태를 협의의 향약으로, '일향(一鄕) 약속'과 같은 일반적 의미의 향약을 광의의 향약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협의의 향약, 곧 '주자향약'식 향약을 본래적/일반적 의미의 향약으로 파악하고, 글 전체의 논의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향약을 보는 두가지 입장의 차이는 주자향약과 조선향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향약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주자향약이 조선에 수용되어 조선식으로 변용된 것으로 파악하시고, 향약의 성격을 '여씨향약에서 유래하여 주자학적 향촌 운영원리를 담은 규약'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향약 조약문의 구성을 보면 아예 '주자향약'과 같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4강목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4강목 형식을 취하더라도 과실상규 항목에는 전래의 '일향약속'을 삽입한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선의 향약은 '일향약속'의 형태가 본래적인 형태이고, 16세기 후반 주자향약의 외피를 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약의 성격 역시 단순히 '지역사회의 운영 규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 향약을 상위 개념으로 두고, 그 한 형태로 '주자향약' 형식의 향약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계 내에서도 사상사 연구자들은 '주자향약'에 보다 주목하는 반면 사회사 전공자들은 향촌사회의 운영 규약으로서의 '일향약속'이라는 점에 보다 주목하고 있지만 두 향약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세밀한 검토와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선향약과 '주자향약'의 유사성이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동계는 '계조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향약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비판적이십니다. 이런 견해는 향약은 "여씨향약과 그 변형 형태로 향촌사회의 주자학적 제반 운영원리를 담은 규약", 계는 "사람들간의 특수한 목적의 조직 형태"라는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계의 경우 "특수한 목적"보다는 "동"이라는 지역에 기초하여 조직된 향약으로 볼 수도 있어서 향약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향약과 동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3. 6장에서는 식민지시기의 계와 향약 조사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향약 조직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하는 문제는 향약이 기층의 사회조직으로서 유의미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26년 "공공목적 및 부조 목적의 계"에 당시 세대 총수 348만의 12%가 가입한 것에 대해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전통사회의 계 보급이 보편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악하신 것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1936년의 조사에서 도별 "향약 단체" 수가 최대 24개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향약조직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을단위의 향약은 물론 동계도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된 경우에도 짧은 기간만 시행되거나 단속적 시행되며 "중수(重修)"를 거듭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전국세대의 12%가 계나 향약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를 적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나아가 지역민들이 지역사회의 운영을 위해 조직할 수 있는 모델로서 향약이 항존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정조, 고종, 조선총독부까지 사회 교화 내지는 통제의 수단으로 향약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도 여전히 주목할만한 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시면서도 특별히 보급율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선생님께서는 향약의 지역 단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향약을 지역단위의 사회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약을 칭하는 자료들은 군현단위, 면리단위, 동단위 등 단위가 다양합니다만 군현단위의 향약과 면리나 동단위의 향약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이 되는 지역의 단위가 다르면 당면한 과제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향약이 주자학적 향촌사회 운영원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향약의 범주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향약(鄕約)의 지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이영란(조선대)

장샤오포(張小坡)의 중국 향약(鄕約)의 지역사적 의의 - 명청 시기 휘주(徽州) 향약의 종족화(宗族化)와 기층 거버넌스 논리 – 는 휘주 향약을 중심으로 중국 향약의 지역사적 의의를 살펴본 논고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향약이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충고하고 격려하여, 공동적으로 규약을 지키고, 협조, 구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규약을 지키고자는 것을 교육 받고, 점점 스스로 지키고자 하고,그리고 최종 목표는 서로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생활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나가려고 한 것이었다.

명청시기의 향약 보급 발전과정에서 보갑, 사창, 사학 등과 결합시켜 실시하였다. 향약의 발전과정을 보면, 그것의 일관된 민간성은 보이지만 官府와의 관계도 날로 밀접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청대향약은 조정이 강제적으로 성유선강을 추진하여 민중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향약의 기능은 주로 사상도덕의 교화에 두었지만 서로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긴 향약, 심지어 모든 향약의 구체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약의 기능 변화를 통해 기층 사회의 운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명대초기의 향약은 민판향약이 위주가 되어 주로 지방 향신세력이나 지방 종족이 실시의 주체였다. 이는 명대 대표적인 민판향약인 웅산향약을 통해 알 수있다.

그러나 명대 정덕 연간 왕양명의 남감향약 이후에는 민판향약과 관판향약이 병행됨으로써 향약의 실시주체는 지방 향신 세력뿐만 아니라 지방관도 많이 참여하였다. 왕양명의 남감향약과 여곤의 향갑약을 통해 지방관을 주도 세력으로 하는 향약이 점차 많아졌다. 그리고 명대 후기에 이르러 지방 관부가 제창하거나 지지하는 종족향약화 형식이 점차 향약의 주요 시행 방식으로 발전하여 지방 종족세력과 향신세력이 향약의 실시주체가 되었다. 이는 휘주 지역의 문당진씨향약과 암진향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대의 향약은 성유선강 위주로 된 형식적인 조직이 됨으로써 조정 명령을 받는 지방관이나 향촌사신계층이 주체가 되었다.

여기에서 휘주 지역의 문당진씨향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나, 휘주 지역의 종족 향약화가 일어난 배경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휘주의 암진향약도 종족 향약화의 대표적 향약이라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당진씨 향약과과 암진향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요?

청대 향약은 재지 鄕紳이나 지방관에 의해 향촌이나 종족단위에서 실시된 일종의 민간 기층 조직이며 사회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종족화된 향약이 휘주에서 향촌 사회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층 사회의 자치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휘주 향약의 운용 과정에서 관청의 권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족이 자신들의 집거 지역에서 지니고 있던 영향력을 빌려 민중을 구속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목적

을 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층 사회가 어느 정도 통치 수단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향약의 종족화라 국가가 종족조직에게 향촌교화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은 효율적인 향촌통치를 위해 현실적인 변화에 순응하며 국가권력과 종족세력의'권력접점의 경계'를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하였다고 볼 때 기층사회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쪽 연구만 분석, 그 외 나라도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宋正洙, 中國近世鄕村社會史硏究 -明淸時代 鄕約·保甲制의 形成과 展開- , 혜안, 1997

홍성구, 明淸時代 徽州의 鄕村組織과 宗族의 關係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일본

寺田浩明, 明淸法秩序における 約 の性格 , 社會と國家 (溝口雄三·濱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4

鈴木博之,「明代徽州府の鄕約について」,『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下, 汲古書院, 1990

일본의 '향약(소오키테, 무라오키테)'과 항왜의 향약에 대한 토론문

박진한(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본 발표문은 일본 중세 소손(惣村)에서 작성한 소오키테(惣掟)와 근세 무라(村)에서 만든 무라오키테(村掟)를 소재로 삼아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촌락 공동체의 변화 과정을 개관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정착한 항왜(降倭) 김충선이 제정한 약조와 향약의 비교는 향약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이채롭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의 향약과 비교해 일본의 촌락 규약(소오키테/무라오키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향약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발표자분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세 소손과 근세 무라의 공통점 내지 소손에서 무라로의 연속성을 가산/가업/가명의 일체성을 지닌 생산의 단위이자 공동체인 '이에(家)'에서 찾고 있음. 이에 동의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이코 겐치(太閤検地, 토지조사)를 통해 유력 지자무라이(地侍)나 국인(國人) 아래 있던 소손이 무라로 재편성, 이 과정에서 이에는 방계혈족을 포함한 대가족에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호주를 중심으로 단혼 소가족으로 변질. [사료 3]은 소손의 유지가 아니라 해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지, 아울러 중세 소손에서 근세 무라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이코 겐치의 의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근세 무라오키테는 영주/막부의 법(公儀の御法度)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이루어, 중죄는 관청에 고발하되 가벼운 범죄는 무라하치부 등을 통해 촌락의 독자적인 사법권 아래 처리. 영주 권력은 공공연한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 무라 내부의 사적 처벌을 묵인. 무라 역시 "무거운 죄는 고기(公儀)에 호소하고, 가벼운 죄는 무라오키테로 대응"하는 등, 영주/막부 법을 주체적, 부분적으로 활용. 촌락 지배 내지 법 질서의 이원적 구조 -> 근세 촌락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자율 또는 자치 공동체 -> 19세기 들어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조선이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체제 전복적 성격의 대규모 혁명으로 나아간 반면, 일본의 햐쿠쇼 잇키(百姓一揆)는 무라 공동체의 틀을 유지한 채 영주와 협상하는 체제 내적인 저항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일본 근세 무라의 '무라하치부(村八分)'와 조선 향약의 '벌칙(罰則)'이 공동체의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무엇이 같고 다른지 -> '무라하치부'는 촌락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차단, 하지만 촌락 내의 거주 인정. 반면 조선의 향약에서 벌칙은 향음주례와 같은 교화와 징계를 병행하되, 중죄자는 관아로 송치하거나 향회에서 배제. ->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후 무라의 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무라하치부가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넷째, 사야가가 일본 중세의 소손 사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착 이후 사족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성리학적 이념이 짙게 배어있는 약조를 제정하며 '철저한 조선인'을 지향했다고 결론. 다만 약조 중 제9조(의병 창의)나 제10조(도적 추적 시 무장 및 연대책임), 제11조(문과 무의 기질 파악) 등의 조항은 일반적인 유교적 향약에 비해 군사·방위적 성격이 짙어 흥미로움. 이는 사야가가 사무라이 출신이라는 점과 임진왜란 직후의 시기적 특수성이 결합한결과로 볼 수 있을지 궁금.

마지막으로 일본의 촌락 규범에 관한 사료 소개와 향약과의 비교를 시도해 새로운 연구 시각을 열어주신 발표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한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후기 광주 양과동계의 동정 수호와 중수」에 대한 토론문

문광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 글은 조선후기 전라도 광주 양과동에서 조직된 동계의 공유자산 형성 및 운영 내용을 치부자료를 통해 추적한 것이다. 양과동계는 1604년(선조 37)에 설립된 후 혼상부조 등을 실현하기 위해 동답(洞田)과 동정(洞亭) 등을 공유자산으로 조성하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동정중수출역기』을 토대로 1799년부터 1806년 사이 동정 관리를 위해 조성된 재원의 식리활동과 동회 지출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식리전의 재원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공동체의 와해를 막고 마을 구성원의 안녕을 유지하려는 호혜적 의도가 작용하면서 '탈하(頉下)'를 감내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조선후기 향촌사회 내부에서 조직된 동약과 동계에 대해 최근 '호혜와 협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한편 정수환 선생님의 2024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몇몇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정의 조성 시기

양과 동정의 건립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원대(諫院臺)의 후신으로 조선전기 양과모정(良菰茅亭)의 명칭으로 존재했음이 임억령(1496~1568)과 고경명(1533~1592)의 문집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동정중수출역기〉에서도 지출 명목에 '茅亭價沙', 茅亭改板價, 茅亭會飮酒價 등의 명목이 기재되고 있어 19세기 초반까지 양과동의 동정 명칭은 '모정(茅亭)'으로 불리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양과동정과 양과모정은 같은 누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늦어도 16세기 중엽에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듯 하다. 16세기 존재하던 양과모정은 1604년(선조 37) 양과동 동계 설립된 이후 동계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1617년(광해군 9) 중수되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2. 〈동정중수출역기〉의 작성 시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 재정사 연구는 자료의 작성 시기와 통계 수치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생님께서는 ① 동정 관리를 위해 수합에 참여한 마을 기록이 1791년과의 유사성, ②당백전 통용 이후 고액 단위 수치 부재, ③전유여사의 서압 형식, ④동직에 대한 면역 요청 기록 등을 통해 1799~1806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1791년 동정 중수 직후의 식리활동의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작성시기를 60년이 지난 1859~1866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1866년 전라도 향촌사회에서 당백

전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했으나, 이글의 논지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시기비정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렸다.

3. 〈양과동정중수기〉의 구성과 작성 시기

이 글에서는 〈양과동정중수기〉가 1791년 12월 박성일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4쪽). 이 중수기에는 「동중간통」과 함께 「수합록」이 포함되어 있고, 「수합록」에는 1791년과 1800년 동정 중수와 관련한 기문과 시문, 그리고 회 등이 담겨 있다고 되어 있다(5쪽). 현전하는 〈양과동정중수기〉는 후대에 다시 작성된 것인지? 1800년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4. 양과동정 중수 참여자와 좌목 기재자의 차이

5쪽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양과동정 중수를 위해 재원(보리 1말)을 납입한 사람은 「수합록」에서 확인되듯이 54명이다. 이들이 실제 재원을 판출했던 사람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계좌목」에는 54명 중 18명만 입록되고 있다. 즉, 2/3가 좌목에 탈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도 '동계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이라고 분석하였다. 토론자도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이 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중수기문을 썼던 박성일, 최원지와 함께 실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박성회 등은 모두 좌목에서 빠졌다. 우선 좌목이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좌목을 통해 양과동의 성씨 분포를 보면 경주최씨(133명), 장흥고씨(110명), 함양박씨(73명), 나주김씨(8명) 등의 순이었다(박돈의 1999년 연구). 박성일과 박성회가 함양박씨인지 아니면 새롭게 과거급제에 성공한 음성박씨인지는 알수 없지만, 양과동 내의 향촌지배력을 두고 발생한 권력갈등 사이에서 양과동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5. 동정이 호혜와 협동의 공간(?)

이 글의 핵심은 양과동정의 회계장부인 〈출역기〉를 통해 '공동체의 와해를 막고 마을 구성원의 안녕을 유지하려는 호혜적 의도'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선 4의 의견이 성립된다면, 양과동정은 향촌사회 내부의 권력갈등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 이와 별개로 〈출역기〉의 지출내역을 보면 논 매득, 狗價, 酒價, 饌價, 朝食糧, 眞瓜, 使喚饁飢, 石魚, 菜蔬, 占心糧 등 동계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출 양상을 보인다. '호혜와 협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를 테면 기민 구제, 상장비, 휼전-이 다소 잘 보이지 않는다.

「19-20세기 전라도 영암 구림대동계의 변용과 장기지속성」에 대한 토론문

임학성(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이 연구(영암 구림동계 사례 연구)는 그동안 발표자가 전라도 지역에서 발견·확인되는 마을공동체조직 운영 및 영향의 '근현대적 모범' 사례를 찾고자 하는 연구들 중 하나라고 하겠다.

발표자가 진행한 일련의 연구 성과는 보성군의 이리(2025년 12월), 해남군의 통호리(2025년 4월), 신안군의 안좌도와 도초도(2023년 6월/2020년 2월), 장흥군의 노력도(2019년 6월/2010년 7월), 완도군의 금당도(2005년 8월), 장흥군의 유치동(2002년 12월), 진도의 송산리(2013년 5월) 등의 지역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번 구림동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그 연구 방향 및 방법이 어느 정도(?) '일정한 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발표자의 연구 방향 및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최적/최상의 연구 분석과 결론을 도출했다고 토론자는 높게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틀'이라는 표현을 본 토론의 주지로 꺼낸 까닭은 그 '틀'에서 벗어난 방향 및 방법은 찾을 수 없었던 것일까?라는 바램 때문이다. 이러한 바램(어쩌면 무례?)을 발표자에게 과제로 툭 던져 본다.

이밖에 소소한 질의들을 드린다. 질의의 농도와 상관없이 발표문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첫째, 구림촌의 초창기 '성기동' 서당 건립에 참여했던 별유사와 사장, 그리고 학도 가운데에는 朴氏들이 다수(총 15명) 발견되는데, 영암 구림촌 내 향촌 주도세력으로서의 이들에 대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주 번에서 최필흥이 찬한 「무신년 2월 21일 상량」의 '무신(년)'을 1728년으로 표기했는데, 1788년의 오기가 아닌지?

셋째, 발표자는 전근대 지방관이 반드시 행해야하는 '수령칠사(守令七事)'에 학교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해로는 무리가 없겠으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학교 건립'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번성시켜야 한다('興學校')는 것이 아닐까? 아울러 근대학교 설립의 주체가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지방관이라 서술했는데,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각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라남도 또는 영암 지역만이라도 해당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넷째, 1670년경과 1741년에 작성된 두 시기의 『서호동헌』에서 확인되는 구림대동계의 동답 운영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두 시기의 규정 차이를 해석하면서 17세기 말과 달리 100여 년이 지난 변화상을 언급하였다. 시기 표기/해석에 착각이 보인다. 1670년경은 '17세기 후반'이 적절한 표기로 생각되며, 그로부터 1741년은 '100여 년'이 아닌 '70여 년'이 적절한 듯하다. 아울러 규정에 나오는 '병작(자)'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경작인'이라는 발표자의 표기는 '소작인'으로 수정하는 게 사실 관계

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않을까?

이상, 전라남도 지역 마을공동체의 운영과 근현대 시기의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 동계의 장기지속성과 사회적 기여를 도출한 김경옥 교수의 꾸준한 연구 성과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자의 바램과 질의가 무지와 무례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이광우의 「조선 후기 면약·면계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한상우(아주대학교 사학과)

이 연구는 장흥 남면에 현전하는 면약을 분석함으로써 주현 단위에서의 향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면약·면계 문제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면약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면약의 일반적인 결성 요인으로 알려진 수령의 요구와 주현향약의 성립이 아니라 면민의 현실적 필요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남면 면약이 주현향약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장기간 존속한 면 단위의 사회조직이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면약, 면계의 특성을 남면 면약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면 단위 조직의 특징을 보여주겠다는 발표자의 의도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발표자의 분석 결과에 동의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안하는 식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우선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남면 면약의 성격을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에 대한 설명이 더 폭넓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발표자는 장흥의 다른 면과 달리 남면에서는 면약이 주현향약 이전에 자생적으로 결성되었고 주현향약이 사라진 이후에도 장기간 존속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 면약은 요역 불균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 단계에서의 폐단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신분 질서에 대한 강조 역시 표방하였다. 이에 발표자는 "남면 면약은 앞선 두 면약·면계와 비교해 면내 신분 질서를 확인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며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며 본론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이러한 자생성과 지속성이 면약의 주요 내용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생성과 지속성이 본 학술회의의 주제인 향약의 공동체적 성격과 어떤 측면에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더 제시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남면의 면약에서 보이는 신분 질서에 대한 강조는 과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장흥향교 임원의 출신지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조선시대 남면을 아우르는 용산면의 주도 세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후대에 비해 18세기 후반까지 남면에서는 재지사족층의 위상이 나름 공고했던 것으로 보인다.[1] 그러나 남면의 대표적인 반촌으로 알려진 어서리에서 19세기에 작성된 동계에 대한 한 연구는 이 동계가 유교적 이념, 신분적 질서를 강하게 표방하나 실제 운영에서는 신분제적 질서가 약화되는 현상을 함께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2] 따라서 1707년 결성되어 근대 이행기까지도 존재했던 남면 면약 속 신분 질서에 대한 서술은 시기에 따라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의도로 해석되고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발표자가 남면 면약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한 신분 질서에 대한 강조는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어떻게 장기 존속에 영향을 주었을까. 면약 속 신분 질서에 대한 서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

1) 김건태,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 —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2009
2) 이용기, 「19세기 후반 반촌 동계의 기능과 성격 변화 — 전남 장흥군 어서리 동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1, 2008

남면 면약이 18세기 이후 점차 약화되는 재지사족층의 신분 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마지막까지도 상하합계의 형태로 유지된 이 면약에 참여했던 하민들의 주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주현 단위의 향약과 수령권의 요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하민들이 면약을 유지해야 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층민의 면약 참여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남면 면약의 또 다른 목적인 요역 균등화에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향약을 종합적으로 살핀 선행 연구에서 발표자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면약은 주현향약의 하부 형태가 아니라 부세 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3] 그러나 이 연구는 면약에 표현된 요역 균등에 대한 목적의식을 보여주었을 뿐, 이 목표를 위해 면 단위에서 요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그리하여 균등의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장기간 존속한 이 면약에 참여한 하층민들이 얻는 실익이 과연 존재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앞에서 제기한 이 면약 내용 속 신분 질서에 대한 언급을 실제적인 규율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된다.

발표자는 발표문에서 남면의 보민계 등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면약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보고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남면 면약의 실질적 구속력과 장기 존속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면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보민계, 그리고 동계와 더 밀접하게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요역 등 부세 문제에 대한 남면 지역에서의 대응은 남면의 많은 마을에 지금까지도 자연촌락 단위로 지속되고 있는 동계의 존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4] 물론 발표자는 본 연구의 대상을 면 단위로 한정하였으나, 남면의 다양한 동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면 단위에서 시행된 계에서 보지 못한 지점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면약과 면계를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향약과 계의 개념에 대한 발표자의 관점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자는 발표문 곳곳에서 면약과 면계를 포괄적인 범주로 함께 언급하였다. 물론 향약과 지역 단위의 계가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남면 면약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신분 질서와 교화의 측면을 볼 것인지, 부세 대응의 측면을 볼 것인지는, 결국 약과 계의 기능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면약과 면계를 포괄적인 범주로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의 기능 차이에 대한 더 엄밀한 설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는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향약이 가진 공동체성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광우, 「조선 시대 鄕約의 유형과 특징 - 州縣鄕約·面約·洞約, 시행 단위를 중심으로」, 『南冥學硏究』 83, 2025
4) 이용기,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 128, 2017

주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